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유다연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관
강만원 예산분석관

지 원 | 박서연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결산 개요	5
1. 현 황	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
II. 주요 현안 분석	17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분석	17
1-1. 조기폐차 사업 계획 물량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	18
1-2.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3
1-3.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보조금 집행관리 개선 필요	26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불용액 반납관리 및 보조금 환수관리 철저 필요	29
3. 국가·유역물관리체계 구축사업 분석	36
3-1. 위원장 수당 및 경비 지급수준의 적정성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37
3-2. 유역별 법정 종합계획 수립 지연 문제	43
3-3. 세목조정을 통한 연례적인 임차비 집행 및 불요불급한 홍보용역비 연말 집행 주의	46

Ⅲ. 개별 사업 분석51

1.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저조한 수납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51
2.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분석 57
 - 2-1.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 수요 제고 방안 마련 및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58
 - 2-2.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건립사업 회계연도를 넘어선 공사비 지급 주의62
3.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사업 분석 68
 - 3-1.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집행 부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70
 - 3-2.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사업효과 분석 미흡 및
대규모 국비 투입 필요성 면밀한 검토 필요 76
4.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실집행 부진을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 82
5.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재조사에 따른 사업정지로 예산
전액 미집행 문제 86
6.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추진 필요 90
7.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실적 부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96
8.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확대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103
9. 수소차 보급 사업 전 차종 집행 부진 문제 개선 필요 109



CONTENTS

10.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문제점 분석	114
10-1.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 단년도 편성에 따른 실집행 부진 문제	116
10-2.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공정률을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121
10-3.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 추진방식 변경 및 사업비 절감액 미편성 필요	125
11.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의 문제점 분석	130
11-1.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미집행 인건비 예산 반납 필요	131
11-2. 자산취득비 필요소요 예측 미실시 및 과도한 규모 전용 집행 주의 ..	138
12.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면밀한 계획 없는 사업 추진으로 집행 부진 및 사업 관리 미흡	142
13.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재조사 절차에 따른 예산 전액 미집행 및 사업 장기 지연 문제	148
14.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미흡한 사업준비에 따른 집행 부진 및 유사사업 고려 필요	152
15.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지침 부재 등 사업준비 미흡 및 운영방안 보완 필요	157

[고용노동부]

I. 결산 개요	165
1. 현 황	16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3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4
II. 주요 현안 분석	176
1.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안 분석	176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면밀한 추계 필요	179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선 필요	183
1-3. 일경험 프로그램의 매칭 강화 필요	187
1-4. 제주 지역 일부 참여자 계좌압류 방지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의 수당 지급은 부적절	192
1-5.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실효성 검토 필요	197
2. 내일배움카드 사업 현안 분석	203
2-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신속한 훈련과정 공급 필요	206
2-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12
2-3.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훈련 공급 개선 등 필요	218
2-4.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환류체계 명확화 필요	225
2-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효율화 필요	231

Ⅲ. 개별 사업 분석 237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규모 추계할 필요 237
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면밀히 목표를 추계할 필요 243
3.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49
 - 3-1.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개선 필요 .. 251
 - 3-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창업지원서비스 개선 필요 259
 - 3-3.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에서의 고령자인재은행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 267
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필요 ... 271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 실적 개선 필요 276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조기지급 제도 등 점검 필요 281
 - 6-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체계적인 계획 인원 추계 필요 282
 - 6-2. 3개월 고용 유지에 대한 조기지급 제도의 타당성 검토 필요 287

[기상청]

I. 결산 개요	293
1. 현 황	293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97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98
II. 개별 사업 분석	299
1. 중기예보의 품질 향상 및 국민과의 소통강화 필요	299
2. 방재 목적의 지진신속정보 신속도 분리 관리 필요	304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을 단독 세부사업으로 구성 필요	310
4. 불합격 기상측기 관리 신규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 철저 필요 ...	315
5.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 편성방식 통일 필요 ...	320
6.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인력 채용 부진 문제	326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조 7,734억 3,900만원이며, 8조 1,369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0.7%인 7조 3,794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7,353억 9,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21억 6,5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185	3,185	16,918	73,136	62,093	11,041	-	84.9
환경개선특별회계	690,170	674,462	674,462	7,914,591	7,176,109	716,318	22,165	90.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00	500	500	3,813	3,813	-	-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749	1,749	1,749	17,743	17,223	521	-	97.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810	12,810	12,810	127,688	120,176	7,513	-	94.1
합계	6924,414	6759,706	6,773,439	8,136,971	7,379,414	735,393	22,165	90.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7조 8,335억 5,800만원이며, 이 중 95.9%인 17조 1,098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676억 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61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646,280	6,418,988	7,533,212	7,440,916	76,786	15,510	98.8
환경개선특별회계	6,906,170	6,741,462	7,007,954	6,835,886	89,358	82,709	97.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563	42,563	42,563	41,377	1,186	-	97.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7,923	617,923	617,923	617,922	-	1	1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864,971	2,630,851	2,631,906	2,173,728	271	457,907	82.6
합 계	17,077,907	16,451,787	17,833,558	17,109,830	167,601	556,127	95.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현액은 1조 2,829억 5,600만원이며, 1조 3,362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4%인 1조 2,474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885억 3,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2,400만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676,338	676,338	676,338	683,847	639,207	44,512	128	93.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3,520	253,520	253,520	262,887	241,537	21,275	75	91.9
금강수계관리기금	173,849	173,849	173,849	189,469	176,923	12,523	23	93.4
영산강섬진강수 계관리기금	142,130	142,130	142,130	161,459	152,805	8,644	10	94.6
석면피해구제기금	32,119	37,119	37,119	38,617	36,950	1,581	88	95.7
합계	1,277,956	1,282,956	1,282,956	1,336,279	1,247,422	88,535	324	93.4

자료: 환경부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2,901억 1,100만원이며, 이 중 96.7%인 1조 2,474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7,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676,338	676,338	678,615	639,207	5,713	4,471	94.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3,520	253,520	256,471	241,537	2,743	6,655	94.2
금강수계관리기금	173,849	173,849	175,173	176,923	1,451	665	101.0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42,130	142,130	142,638	152,805	306	583	107.1
석면피해구제기금	32,119	37,119	37,213	36,949	63	81	99.3
합계	1,277,956	1,282,956	1,290,111	1,247,422	10,276	12,455	96.7

자료: 환경부

다. 총수입 · 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083억 9,400만원 (14.1%)이 증가한 2조 5,01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926억 9,200만원(13.6%)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903,049	1,168,696	1,168,696	1,519,348	350,652	△383,701
기금	991,601	1,024,868	1,024,868	982,610	△42,258	△8,991
합계	2,894,650	2,193,564	2,193,564	2,501,958	308,394	△392,69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2022회계연도 환경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114억 400만원(5.2%)이 증가한 12조 638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2,960억 8,600만원(12.0%)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9,767,519	10,838,864	10,427,452	11,054,426	626,974	1,286,907
기금	1,000,247	1,014,051	1,024,996	1,009,426	△15,570	9,179
합계	10,767,766	11,852,915	11,452,448	12,063,852	611,404	1,296,08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환경부의 자산은 134조 7,613억 9,400만원, 부채는 858억 9,900만원으로 순자산은 134조 6,754억 9,5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1,948억 1,000만원, 투자자산 1조 3,074억 200만원, 일반유형자산 57조 5,063억 2,000만원, 사회기반시설 74조 6,103억 5,500만원, 무형자산 1,295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4조 14억 7,100만원(549.1%) 증가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관련 조직개편과 토지, 건물 등 신규 취득 및 도로, 철도 등 자산 분류 변경 등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52조 1,018억 8,600만원 증가와 사회기반시설 61조 6,965억 4,100만원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15억 6,600만원, 장기차입부채 10억 8,800백만원, 장기충당부채 4억 2,0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8억 2,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89억 7,600만원(50.9%) 증가하였다. 이는 미지급금 26억 6,300백만원, 선수금 70억 7,100만원, 미지급비용 194억 7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291억 1,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34,761,394	20,759,923	114,001,471	549.1 %
Ⅰ. 유동자산	1,194,810	1,198,355	△3,545	△0.3 %
Ⅱ. 투자자산	1,307,402	1,147,814	159,588	13.9 %
Ⅲ. 일반유형자산	57,506,320	5,404,434	52,101,886	964.1 %
Ⅳ. 사회기반시설	74,610,355	12,913,814	61,696,541	477.8 %
Ⅴ. 무형자산	129,514	85,044	44,470	52.3 %
Ⅵ. 기타비유동자산	12,993	10,461	2,532	24.2 %
부 채	85,899	56,923	28,976	50.9 %
Ⅰ. 유동부채	81,566	52,454	29,112	55.5 %
Ⅱ. 장기차입부채	1,088	1,427	△339	△23.8 %
Ⅲ. 장기충당부채	420	214	206	96.3 %
Ⅳ. 기타비유동부채	2,826	2,828	△2	△0.1 %
순 자 산	134,675,495	20,703,000	113,972,495	550.5 %
Ⅰ. 기본순자산	6,240,534	3,897,729	2,342,805	60.1%
Ⅱ. 적립금및잉여금	87,564,734	8,126,507	79,438,227	977.5%
Ⅲ. 순자산조정	40,870,227	8,678,764	32,191,463	370.9%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2조 3,910억 7,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3조 4,071억 8,000만원, 관리운영비 4,598억 1,800만원, 비배분비용 3,170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199억 3,900만원, 비배분수익 1,320억 3,5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409억 8,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조 9,103억 7,200만원(58.3%) 증가한 13조 3,320억 5,400만원이며, 프로그램총원가 3조 1,315억 6,7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총 2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2조 6,306억 3,500만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프로그램(2조 2,945억 8,000만원), 맑은 물 공급이용(광역) 프로그램(2조 517억 3,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922억 3,700만원과 경비 2,675억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 수익 등은 부담금수익 9,400억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 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687,241	9,417,031	3,270,210	34.7
가. 프로그램 총원가	13,407,180	10,275,613	3,131,567	30.5
나. 프로그램 수익	△719,939	△858,582	138,643	△16.1
II. 관리운영비	459,818	442,828	16,990	3.8
III. 비배분비용	317,030	1,105,565	△788,535	△71.3
IV. 비배분수익	132,035	2,543,743	△2,411,708	△94.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3,332,054	8,421,682	4,910,372	58.3
VI. 비교환수익 등	940,984	936,646	4,338	0.5
VII. 재정운영결과(V-VI)	12,391,070	7,485,035	4,906,035	65.5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0조 7,030억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34조 6,754억 9,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13조 9,724억 9,500만원(550.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4조 9,060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가산 항목 중 조정항목은 전년 대비 109조 4,515억 9,5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1조 1,007억 9,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8조 5,139억 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7조 9,975억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 평가손익 △4조 2,611억 7,100만원,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순자산 증감 120조 1,096억 2,100만원, 기타순

자산의 증감 △12억 6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0,703,000	12,376,865	8,326,135	67.3
Ⅱ. 재정운영결과	12,391,070	7,485,035	4,906,035	65.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0,516,392	9,415,594	1,100,798	11.7
Ⅳ. 조정항목	115,847,172	6,395,577	109,451,595	1,711.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34,675,495	20,703,000	113,972,495	550.5

자료: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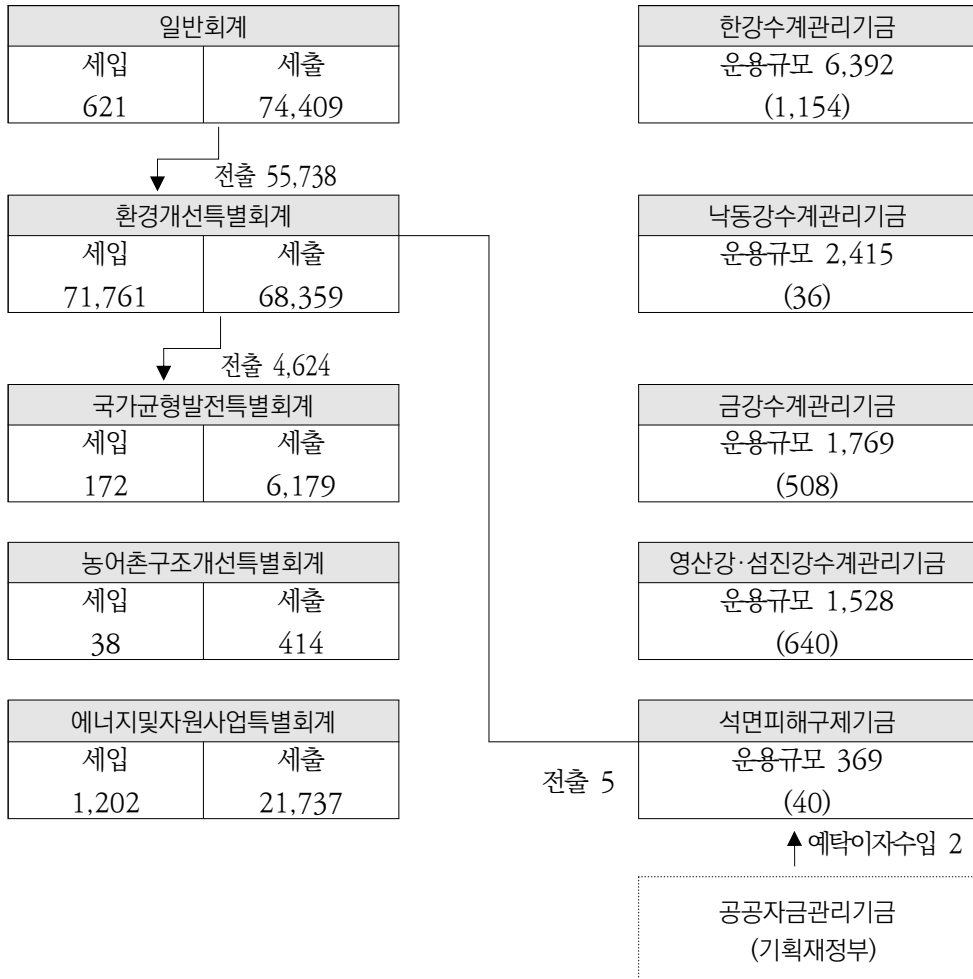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환경부의 결산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5조 5,738억원 전출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4,62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5억원이 전출되었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1. 총계 결산 기준

2. 기금운용규모는 여유자금 운용 금액(괄호 안 표기)을 포함한 값임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²⁾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②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③스마트 그린도시 등이 있다.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2021년 사업 추진실적 부진으로 다수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53억원이 감액(836억원 → 383억원)되었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이 축소되어 272억원이 감액(5,367억원 → 5,095억원)되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지자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점이 반영되어 118억원이 감액(1,177억원→1,059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하수처리장 설치, ②하수관로정비사업, ③새만금사업 환경대책, ④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등이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457억원이 증액(4,507억원 → 4,964억원)되었고, 도심침수 대응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413억원이 증액(8,214억원 → 8,627억원)되었다. 새만금사업환경대책 사업은 현업측사 매입 및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118억원이 증액(346억원→464억원)되었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해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사업이 98억원(0 → 98억원) 신규 반영되었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총 3건의 부

2) 환경노동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대의견³⁾이 채택되었다.

①“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경유차 재구매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차 구매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 ②“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법인의 경우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보조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③“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고도정수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활성탄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 시 정수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3)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환경부는 ①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공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녹색산업 집중육성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 ②노후 상수도 및 취·양수장 등의 체계적 정비, 강우레이더 확충, 빅데이터 기반 홍수예보 고도화 등 **안전한 물공급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③다회용기 재사용 체계 구축,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등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로 순환경제로의 전환** ④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가속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2022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노후경유차 완전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 물량을 확대 편성하고,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 물량을 축소 편성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이·전용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필요한 사업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 물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경우 최근 불량부품 사용 의혹 제기가 있었는바, 위법행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저감장치 부착 지원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연도별 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납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적된 불용액 및 이자액의 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조금 수령자의 의무운행기간이 상향(2년→5년)되었으므로, 지자체가 개정규정에 따라 강화된 보조금 환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국가물관리위원장에게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급과 동일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간업무회의 등 비법정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 참석 시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수당 지급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및 경비 지급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 사업은 3가지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①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 변경, 설계 범위 확장 및 추가 설계 소요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편성예산의 74.6%가 이월(실집행률 25.4%)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②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의 경우 공사 준공 일정이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 시범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는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사업의 추진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 실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를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한편,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을 불용 및 미편성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분석

가. 현 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⁵⁾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건설 기계 엔진교체 등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을 비롯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342억 3,400만원 중 4,22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6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00만 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509,464	464,577	1,838	△32,181	434,234	422,322	97.3	11,610	302	380,79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1-1. 조기폐차 사업 계획 물량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

가. 현 황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해당 내역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본예산 기준 70.3%)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국비 60% 보조)하는 것으로, 2022년 35만대 지원을 목표로 3,360억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이·전용 등으로 집행한 719억 8,6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640억 1,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기폐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509,464	464,577	1,838	△32,181	434,234	422,322	97.3	11,610	302	380,79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478,198	433,448	-	△31,531	401,917	401,917	100.0	-	-	346,655
조기폐차	336,000	336,000	-	△71,986	264,014	264,014	100.0	-	-	274,82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2022년 예산 편성 시 ‘노후경유차 완전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 물량을 확대 편성하였는데, 이용 및 타 사업 물량 조정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으며 향후 사업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수요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 편성 시 노후경유차 5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2023년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현황 및 보험가입차량 현황, 각 사업별 수요 현황 등을 고려해 2022년도 조기폐차 지원 물량 35만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달성 및 대기개선 효과 가속화를 목적으로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한 노후경유차 운행 유지보다 조기폐차를 통해 노후경유차를 완전 퇴출하는 것이 정책 간 상관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기타 사업의 물량을 축소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34.3만대⁶⁾ 및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121만대 중 실제 운행가능한 보험가입 차량 85만대를 감안하여, 2022년 조기 폐차 지원물량 35만대를 계획하고, 지원예산 3,36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기폐차 계획물량 및 5등급 저공해미조치 차량 현황]

(단위: 대)

구분	2022 계획물량	2021. 4월말			2022. 1월말		
		저공해 미조치	보험 가입	보험 미가입	저공해 미조치	보험 가입	보험 미가입
전국	350,000	1,214,695	854,625	360,070	937,979	603,838	334,141
수도권	52,366	262,191	92,797	169,394	213,405	59,372	154,033
서울	9,755	73,642	12,965	60,677	65,354	9,820	55,534
인천	5,552	29,411	9,202	20,209	24,995	6,855	18,140
경기	37,059	159,138	70,630	88,508	123,056	42,697	80,359
비수도권	297,634	952,504	761,828	190,676	724,574	544,466	180,108

자료: 환경부

2022년 조기폐차 사업의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편성 예산 3,360억원의 21.4%에 해당하는 719억원 8,600만원을 이용 및 타 내역사업 간 물량조정을 통해 감액 조정⁷⁾하고, 예산현액 2,640억 1,4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는 2022년도 교부금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3,046억 7,200만원 중 53.1%에 해당하는 1,617억 3,100 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실행액(2,459억 6,000만원) 및 실행률(71.0%) 보다 악화된 실적이다.

6) 조기폐차 24.2만대, 저감장치 부착 10.1만대 등 34.3만대 수요조사 결과 참고('21.4.)

7) 수해 및 힌남노 재해복구를 위한 이용 274억 600만원 및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내 타 내내역사업 물량 조정 445억 8,000만원

[2021년 및 2022년도 조기폐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지자체 실행액		
	본예산	이·전용등	교부액	교부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1	326,400	6,667	327,335	346,575	245,952	71.0
2022	336,000	△71,986	264,014	304,672	161,731	53.1

자료: 환경부

한편, 당초 목표한 물량 대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목표 물량 35만대 대비 지자체 실행대수는 12.3만대에 불과하여 총 35% 실적에 그쳤는데, 예산 집행률과 동일하게 전년도 보급실적 21.1만대(58.6%) 대비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2021년 및 2022년 조기폐차 사업 목표 물량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대, %)

구분	목표(A)	교부	실집행(B)	실집행률(B/A)
2021	34만	34.1만	21.1만	58.6
2022	35만	27.5만	12.3만	35.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1년도 국회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물량을 설정하여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내 내역사업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제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적을 받았는데, 2022년에 계획 물량 대비 실행이 더욱 악화된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금리 상승으로 차량 구매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조기폐차 신청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5등급차가 운행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⁸⁾이 시행되지 않아 조기폐차 유인이 부족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에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수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자동차 운행제한>·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 위반시, 동법 제31조에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집행률 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월)의 단속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에 부산·대구까지만 확대되고, 대전·울산·광주·세종에서는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시범 실시가 시행되어 예상 대비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동 설명에 따른 이유와 별개로 당초 환경부가 2022년 조기폐차 계획 물량 편성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량을 높게 설정하여 집행 부진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환경부는 2021년 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계획물량을 전년도 34만 대 대비 1만대 높게 편성하였으며, 물량 편성 시 참고한 지자체의 조기폐차 수요는 24만대에 불과⁹⁾하였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35만대를 편성하였다¹⁰⁾.

한편,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분석해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속 지역 및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평균 실집행률은 66%에 해당하나, 이 외 지역에서의 실집행률은 46.3%에 그쳤다. 또한, 단속지역 및 시범실시지역에 해당되는 총 9개 지자체에 교부된 교부금액은 861억원이었는데, 이 외 지역 8곳에 교부된 금액이 1,779억원으로 약 2배 이상 금액이 높았는바, 이들 지역에서의 집행률 부진이 전반적인 집행률 부진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9) <2022년 조기폐차 지원 관련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단위: 대)

구분	수요조사	구분	수요조사
서울	3,000	충북	13,540
인천	5,000	충남	24,165
경기	29,335	전북	14,300
부산	10,000	전남	18,040
울산	5,000	경북	35,855
대구	15,000	경남	22,920
대전	10,000	강원	20,352
광주	10,000	제주	4,000
세종	2,000	계	242,507

자료: 환경부

10)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당초 5등급차 조기폐차 지원을 2023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목표를 상향하여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기폐차 사업 지자체별 실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비고
서울	5,561	4,479	10,040	6,339	63.1	수도권 (기 단속지역)
인천	5,920	856	6,776	6,463	95.4	
경기	24,843	5,932	30,775	19,794	64.3	
부산	13,117	1,514	14,631	11,573	79.1	제4차 단속지역
대구	11,498	2,526	14,024	8,350	59.5	제4차 단속지역
광주	6,871	84	6,955	6,455	92.8	시범 실시 (과태료미부과)
대전	11,789	2,673	14,462	4,443	30.7	
울산	5,204	934	6,138	5,109	83.2	
세종	1,344	117	1,461	921	63.0	
소계	86,147	19,115	105,262	69,447	66.0	
강원	23,570	706	24,276	9,487	39.1	비단속지역
충북	19,178	3,804	22,982	8,353	36.3	
충남	28,151	2,559	30,710	11,379	37.1	
전북	17,559	2,058	19,617	8,936	45.6	
전남	17,009	3,432	20,440	14,396	70.4	
경북	39,966	3,997	43,963	17,519	39.8	
경남	27,540	4,811	32,352	19,368	59.9	
제주	4,893	176	5,069	2,846	56.1	
소계	177,866	21,543	199,409	92,284	46.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당초 2023년도까지 5등급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계획과 달리 노후경유차 잔여차량 규모를 감안해 2026년까지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획물량 대비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지속 추진 시에는 수요 현황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물량을 편성하는 한편,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조기폐차 수요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5등급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673억 3,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장치 금액(3년간 클리닝¹¹⁾ 비용 포함)의 87.5~90%를 국비 및 지방비(50:50)로 지원하고, 10~12.5%는 자부담하는 구조이며, 환경부는 1대당 165만원(330만원*0.5)의 저감장치 부착 금액을 지원한다.

[2022회계연도 저감장치 부착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A)	(B)	(B/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509,464	464,577	1,838	△32,181	434,234	422,322	97.3	11,610	302	380,79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478,198	433,448	-	△31,531	401,917	401,917	100.0	-	-	346,655
저감장치 부착	57,750	33,000	-	34,336	67,336	67,336	100.0	-	-	24,75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집행하였는데, 최근 저감장치 불량부품 사용 의혹 제기로 동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바, 위법행위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조금 환수,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저감장치 부착 지원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노후경유차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전년 대비 확대하는 한편, 저감장치 부착 지원 물량은 축소 편성(2021년 9만대 → 2022년 3.5만대)하였다. 또한, 제2회 추경시에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11) 연 1회 DPF 필터에 축적된 입자상물질(매연)을 청소하는 비용

의 지원 물량을 3.5만대에서 2만대로 추가 축소하고 예산을 247억 5,000만원 감액 조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집행 결과 내역 간 물량조정을 통해 343억 3,600만원이 증액된 총 673억원 3,600만원을 교부하였다.

[2022회계연도 저감장치 부착사업 결산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경	교부	실집행
저감장치 부착	물량	3.5만	2만	4만	4만
	예산	57,750	33,000	67,336	70,49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최근 노후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에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¹²⁾이 제기되어, 환경부는 2023년도 사업을 중단(3~6월)하고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조사하였다(∼'23.6.2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검사¹³⁾를 받은 자동차소유주는 3년(성능보증기간)간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런데, 최근 의혹과 같이 클리닝에 불량부품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초기 성능검사에 통과한 이후 클리닝 등 유지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연 저감 성능이 저하되어 사업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혜택만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9.)에서도 저감장치 부착 후

12) 저감장치 부착 지원 금액에는 장치 저감장치 부착비용 및 3년간의 유지관리비용(클리닝)이 포함되어 있는데,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다.(2023.3.7. 노컷뉴스<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 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이 27.9%에 달하며, 미수검 차량의 20%가 성능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성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 자동차 중 29.2%는 성능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 마련 및 성능보증기간 동안 성능 유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3년 언론사에 의한 불량부품 사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동 지원 사업의 전면실태 조사에 착수하였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제도개선 추진 계획]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대기법, 권역법) 개정 추진 계획〉

△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증기간 내 성능유지 확인을 위해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축소(3년 → 1·2년),

△ 성능검사 적합 차량에 한하여 운행제한 제외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자료: 환경부

향후 환경부는 동 사업 관련 위법행위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 조치를 엄격하게 취하는 한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년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집행한다는 계획¹⁴⁾이므로, 수요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집행가능한 지원물량을 설정하고,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4) 환경부 보도자료,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2023.3.22.

1-3.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보조금 집행관리 개선 필요

가. 현황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도심 건설현장의 경유굴착기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전기굴착기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국고보조율 50%, 대당 1,000만원 지원)으로,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 20억원 중 타 세부사업으로 이용¹⁵⁾하여 집행한 6억 5,0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3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509,464	464,577	1,838	△32,181	434,234	422,322	97.3	11,610	302	380,794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00	2,000	-	△650	1,350	1,350	100.0	-	-	2,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수요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지자체의 실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연 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 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100대의 전기굴착기 보급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보급 물량을 400대로 확대하여 4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수요 부족으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였고 (2020년 10%, 2021년 10.6%), 환경부는 이를 감안하여 2022년 계획물량 편성 시

15) 환경부는 동 사업 예산 중 6억 5,000만원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립공원 재해복구 비(코드:환특회계 1898-302)'로 이용하였다.

전년 대비 50% 감축한 200대로 조정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도에 이용액 6억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는데, 그 중 22%에 해당하는 3억 7,900만원만 실집행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2020~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	600	300	10.0
2021	4,000	2,200	2,200	100.0	2,200	600	2,800	298	368	2,134	10.6
2022	2,000	1,350	1,350	100.0	1,350	368	1,718	379	10	1,329	22.1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의 상용화 및 보급이 초기단계에 있어 구매의사를 밝혔던 실 사용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1년에도 동일한 사유를 들어 실집행 부진 사유를 설명하였는데, 계속해서 사업 추진 여건이 수요를 제고하기에 안정화되지 않음에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¹⁶⁾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계속하여 실집행이 부진함에도 일부 지자체에는 교부차수를 나누지 않고 1차례에 전액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차례 이상으로

16) 다만, 환경부는 '22년 수요조사('21.6월, 건설기계협동조합 등) 결과를 통해 698대 구매 수요를 확인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 초기임을 고려해 200대 수준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자의 구매 보류 등으로 예상보다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에서 전기굴착기를 출시할 예정이며, 2023년 조기폐차 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누어 교부한 경우에도 실제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한 문제가 있다.

[2022년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교부금액							실집행금액
	1차 (3.16.)	2차 (6.10.)	3차 (10.17.)	4차 (10.31.)	5차 (11.14.)	합계	비고	
울산	40	-	-	-	-	40	1차례 교부	39
경기	100	-	50	-	30	180		107
강원	40	-	-	-	20	60		9
충북	50	-	-	50	-	100		0
충남	100	-	100	-	-	200		33
전북	-	200	-	-	-	200	1차례 교부	27
전남	-	-	-	140	-	140	1차례 교부	28
경북	100	-	-	80	-	180		10
경남	120	70	60	-	-	250		9

자료: 환경부

향후,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수요, 지자체 실집행 금액, 전기굴착기 신규 출시일정 등 사업 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집행 지침에 부합하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¹⁷⁾.

17)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의 보조금 규모가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작아 사업수행 지자체별 수요 편성이 어려워*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회계 내의 사업목적이 유사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과 한시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23년 기준 200대 계획 물량 편성, 161개 지자체(기초·광역) 수행시 평균 1.24대 수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불용액 반납관리 및 보조금 환수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¹⁹⁾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등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1조 7,190억원의 84.1%에 해당하는 1조 4,46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727억 9백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935,236	1,935,236	5	1,935,241	1,662,397	85.9	30	272,814	2,234,32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1,719,000	1,719,000	-	1,719,000	1,446,291	84.1	-	272,709	1,918,0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2. 동 사업은 2023년도부터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1633-306)'과 통합되어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및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 사업으로 분리 편성됨

자료: 환경부

2022년도에는 전기승용차 16만 4,500대, 버스 2,000대, 화물차 4만 1,000대, 이륜차 2만대 보급을 위해 1조 7,19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차종별 실효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9)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9

[전기자동차 지원차종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a)	교부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전기승용차	987,000	731,898	697,394	70.7
버스	140,000	147,840	126,868	90.6
화물차	574,000	547,428	548,501	95.5
이륜차	18,000	19,125	15,950	88.6
소계	1,719,000	1,446,291	1,388,713	80.7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자체 교부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4개년의 반납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미반납금액이 누적될수록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환경부는 누적된 불용액 및 이자액의 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도 편성 예산 1조 7,190억원의 84.1%에 해당하는 1조 4,462억 9,1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며, 2,727억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는 교부현액 1조 5,573억원 중 1조 3,887억원을 집행하고, 97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12억원을 불용하였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지자체			
	본예산	교부액	불용액	교부액	교부현액	집행액	불용액
전기승용차	987,000	731,898	243,018	731,898	761,139	697,394	41,998
버스	140,000	147,840	2,870	147,840	207,612	126,868	13,789
화물차	574,000	547,428	26,614	547,428	568,571	548,501	12,511
이륜차	18,000	19,125	207	19,125	19,969	15,950	2,929
소계	1,719,000	1,446,291	272,709	1,446,291	1,557,291	1,388,713	71,227

자료: 환경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²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²¹⁾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2022년도 불용액은 2023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고,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이다.

이에 최근 5년간 지자체 불용액의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76억 9,300만원 발생하였는데, 2023년 5월말 기준 반납률이 70.5%에 불과한 상황이다(환경부는 정산이 완료된 20억 3,400만원이 2023년 중에 반납될 예정으로, 동 금액 반영시 반납률이 97%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불용액이 600억~800억대에 이르는데, 2019년의 반납률은 96.1%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도 반납률은 53.7%, 2021년도 반납률은 12.4%로 반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 종료 이후 다음 회계연도까지 불용액이 반납되어야 하는데, 2018년의 경우 3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반납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여 더욱 철저한 반납이 요구됐지만, 미반납금액이 각각 366억원 및 700억원 등 약 1,000억원 상당 존재하고 있어, 환경부의 보조금 반납관리 업무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²²⁾.

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 자치단체보조사업

(9)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늦어도 사업집행 완료 다음해 중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환경부는 불용액 반납이 지연된 이유로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자체 교부예산을 집행한 169개의 기초지자체의 정산을 일일이 확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5년간 지자체 불용액 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 불용액(a)	국고반납액 (b)	미반납액	반납율(b/a)	반납기한 지연 (23. 5월말기준)
2018	7,693	5,423	2,270	70.5 ¹⁾	3년 5개월
2019	62,315	59,893	2,422	96.1	2년 5개월
2020	79,035	42,405	36,630	53.7	1년 5개월
2021	80,009	9,960	70,049	12.4	5개월
2022	71,227	정산중	정산중	정산중	-

주: 1) 환경부는 정산이 완료된 20억 3,400만원이 2023년 중에 반납될 예정으로, 동 금액 반영시 반납률이 97%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도에도 712억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간 누적된 미반납 금액(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용액 미반납금액 총액 1,113억 7,100만원) 고려시 약 1,826억원의 불용액 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반납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반납관리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즉시 지자체에 불용액 반납을 촉구하여 환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용액 반납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정산자료 확인 후 정산확정을 통보하면서 지자체에 이자 산정을 요청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반납고지서를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해당 반납고지서에 따라 지자체가 불용액 및 정산이자액을 반납하는 구조다.

[예산 정산 및 불용액 반납절차]

① 정산자료 제출	② 정산확정 통보 및 이자 산정 요청	③ 지연이자 산정 및 반납고지서 요청	④ 반납고지서 발부	⑤ 불용액 반납
지자체→환경부	환경부→지자체	지자체→환경부	환경부→지자체	지자체→환경부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불용액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액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가 확정되어야 발생이자액 규모가 확정된다. 현재 몇 개년에 걸친 누적된 불용액 미반납금액이 존재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 제출 자료의 오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발생액 규모를 면밀히 정산하여 이자액 반납관리 또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3년 4월말 기준 국고반납액 및 이자발생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국고반납액 및 이자발생액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 불용액	국고반납액	미반납액	이자정산액
2018	7,693	5,423	2,270	923
2019	62,315	59,893	2,422	2,311
2020	79,035	42,405	36,630	1,064
2021	80,009	9,663	70,346	297

주. 이자정산액은 정산이 확정된 지자체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국고반납액' 기준 발생한 금액이다.

자료: 환경부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조금 수령자의 의무운행기간이 상향(2년→5년)되었으므로, 환경부는 지자체가 개정규정에 따라 강화된 보조금 환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23)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자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당초 의무운행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6개월 단위로 보조금 회수요율을 정하고 있었는데, 환경부는 2022년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사유를 수출 및 그 밖의 사유로 구분하여 수출의 경우 5년까지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그 밖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2년까지만 보조금 회수).²⁴⁾

환경부는 당초 2년으로 설정한 의무운행기간을 넘긴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보조금이 타국의 대기환경 개선에 쓰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수출목적 등록 말소에 대한 보조금 환수 강화를 위해 의무운행기간을 연장(2년→5년)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2022년 한 해동안 지자체의 보조금 환수대상 현황 및 환수실적²⁵⁾을 살펴보면, 보조금 환수대상은 총 60건(수출 14건) 및 환수대상금액은 2억 7,900만원이 있는데, 미환수 비중이 53%(‘23.4월말 기준)로 환수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각 지자체에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감독 및 보조금 회수 등의 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환경부는 보고를 받는 구조이다.

2022년 보조금 환수 조치 사항이 강화되었으므로, 환경부는 동 업무를 수행하는

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6. 30.>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5년**

[별표 21의2]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폐차 등으로 말소)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25) 동 사업 지원 이후 2022년도 말까지의 누적 환수실적은 환경부에서 조사중(‘23.6.초 기준)이다.

169개 지자체가 강화된 개정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보조금 환수대상 적발 및 환수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지자체별 보조금 환수대상 및 환수여부 현황]

(단위: 백만원, %)

등록지	보조금 환수대상	보조금 환수대상액	보조금 환수여부 (건)		
			환수	미환수(B)	비중(B/A)
부산광역시	5	18.8	-	5	100.0
대구광역시	13	53.7	13	-	-
경기도	20	97.8	-	20	100.0
강원도	1	3	-	1	100.0
충청북도	9	50	9	-	-
충청남도	4	16	4	-	-
경상남도	8	40	2	6	75.0
소 계	60	279.3	28	32	53.3

주: 1. 2022년 보조금 환수대상 60건: 수출(14건), 교통사고(41건), 차량반납(3건), 차량침수(2건)
 2. 보조금 미환수는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이 반납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
 자료: 환경부

가. 현 황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²⁷⁾은 「물관리기본법」²⁸⁾에 따라 설치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4개 유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²⁹⁾의 물 관리 관련 중요사항 심의·의결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58억 8,400만원 중 4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4,914	4,814	1,070	5,884	4,491	76.3	231	1,162	4,706
국가·유역 물관리 위원회 운영	4,914	4,814	164	4,977	3,708	74.5	231	1,038	4,706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	907	907	783	86.3	-	124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물분쟁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27)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3-323

28) 「물관리기본법」은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 중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6월 12일 제정된 법률로써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상 제정이유).

29) 「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자체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3-1. 위원장 수당 및 경비 지급수준의 적정성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자)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³⁰⁾,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또한 공동위원장 2인(환경부장관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자)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³¹⁾.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별 위원회 민간위원장 총 5인에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250-02목)를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고 2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하였다.

30) 「물관리기본법」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1) 「물관리기본법」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022년도 민간위원장 직책수행경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편성내역	실집행내역	비고
국가위원장	49,800 1명*415만원*12개월 (국무총리급)	29,050	1기위원장(~'22.7.30.)
		17,402	2기위원장('22.8.26~)
유역별위원장	64,800 4명*135만원*12개월 (장관급 보조기관*1.5)	42,156 1인당 10,539	1기위원장(~'22.8.25.) * 2기위원장 미선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직책수행경비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표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직책수행경비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별 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함)가 출범한 2019년 및 2020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1년도부터 편성되었고, 편성 단가는 국가위원장의 경우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직책경비 수당 415만원을, 유역위원장은 장관급 보조기관 135만원(90만원*1.5배 가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³²⁾.

나. 분석의견

국가물관리위원장(비상근)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급과 동일한 직책수행 경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주간업무회의 등 비법정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 참석 시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받아 수당 지급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및 경비 지급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물 관련 현안에 지역·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이 상존함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조정 노력이 필요하여 위원장(비상근직)의 직책수행 경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2)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국장급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위원장의 경우 국무총리와 동일한 단가로 월 41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유역위원장은 장관급 보조기관*1.5배에 해당하는 월 13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외에 회의참석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먼저, 2022년도는 1기 위원회가 종료되고 2기 위원회가 출범³³⁾하는 해였으며, 임기 종료일(국가위원장 7월 30일, 유역위원장 8월 25일)을 기준으로, 1기 국가위원장에게 805만원, 1기 유역별위원장에게 435만원(영산강섬진강유역위)~1,035만원(낙동강유역위)을 지급하였다.

이에 2022년에는 1기 위원장(~7.30.)에게 총 3,710만원(직책수행경비 2,905만원+회의수당 805만원)을, 2기 위원장(8.26~12.31.)에게 총 1,830만원(직책수행경비 1,740만원+회의수당 90만원)을 지급하여 2022년도 기준 총 5,540만원이 국가위원장에 지급되었다.

[2022년도 민간위원장 회의수당 지급내역]

(단위: 천원, 회)

구분		회의참석수당(A)	회의참석횟수(B)	회의당 참석수당(A/B)
국가 위원장	1기(~7월)	8,050	49*	164.3
	2기(8월~)	900	5	180
한강유역위원장		5,350	31	172.6
낙동강유역위원장		10,350	60	172.5
금강유역위원장		8,750	50	175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장		4,350	25	174

주. 49회 중 24회는 주간업무회의 개최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의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회의참석수당으로 국가위원장에게 1,615만원을, 유역별위원장에게 1,100만원~1,7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국가위원장은 2021년에 연 4,980만원의 직책수행경비 및 1,600만원의 회의참석수당 등 총 6,580만원을 지급받았다.

33)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8월 26일에 2기 위원장이 임명되었으나, 유역별 위원회는 2023년 6월 2일에 2기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2021년도 민간위원장 회의수당 지급내역]

(단위: 천원, 회)

구분	회의참석수당(A)	회의참석횟수(B)	회의당 참석수당(A/B)
국가위원장	16,150	100*	161.5
한강유역위원장	11,430	66	173.6
낙동강유역위원장	17,500	98	178.6
금강유역위원장	16,450	91	180.8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장	11,000	66	166.7

주. 100회 중 50회는 주간업무회의 개최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국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의 50%는 매주 1회씩 약 1시간 가량 개최하는 주간업무회의에 해당하였고, 이 외에도 간사회의, 운영회의 등물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가 다수였으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하는 회의는 일부에 그쳤다³⁴⁾.

특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장은 타 위원회 사례와 달리 국무총리급과 동일한 월 41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주간업무회의, 간사회의, 운영회의 등 안전의 심의·의결을 요하지 않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별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였고, 회의참석수당 규모가 2021년도 기준 1600만원, 2022년도 기준 895만원에 이르러 수당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인다.

비교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면서 국무총리와 공동 위원장인 유사 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조정실에서 지원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이 비상근직임을 고려하여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³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

34) 물관리기본법령(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법정회의는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비법정회의로 전체회의, 민간위원 회의, 운영회의, 간사단 회의 등이 있다.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실적은 1회에 불과하였으며, 유역위원회의 경우에도 본회의 개최횟수가 0회(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및 1회(낙동강)에 불과하였다.

3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을 1일당 15만원(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5만원 지급 가능), 안전검토수당은 탄소중립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 40만원/1회, 정책자문 20만

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민간위원장에 국무위원급인 월 16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유사위원회 직책수행경비 및 수당 지급내역 비교]

구분	국가물관리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근거법률명	물관리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위원회 소속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30명-50명	50명-100명	20명-25명	40명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			
직책수행경비	-국가위원장 415만원 (국무총리급) -유역위원장 135만원 (장관급 보조기관*1.5배)	미지급	미지급	165만원 (국무위원급)
회의참석수당	지급, 1일당 15만원(2시간 이상 추가 5만원)			미지급
안전검토수당	미지급	전체회의 40만원 정책자문 20만원	본위원회 본심사 50만원, 예비심사 13만원	미지급
지원 부처	환경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연도	2019년	2022년	1997년	2011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전체회의, 분과위 등 법정회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었고, 민간위원 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³⁶⁾.

원/회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본위원회 본심사 50만원/1회, 예비심사 13만원/회로 지급(위원장 기준)하고 있다.

- 36) 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회의 참석수당 및 안전 검토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최되는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지급하고 있고, ②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균형위 참석수당 등 지급기준’에서는 기재부 집행지침상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본위원회/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특별위원회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동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물관리위원회는 비상근 민간위원장에게 직책수행경비를 국무총리급 및 장관급 보조기관에 준해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정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해당하는 모든 회의에 대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 등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향후 환경부는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책수행경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유역별 법정 종합계획 수립 지연 문제

가. 현 황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28조에 따라, 유역물관리 위원장은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물관리기본법」은 2018년 6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1년 후인 2019년 6월 13일부터였는데, 제정 당시 부칙에서 국가계획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유역계획은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국가계획은 동 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6월 13일부터 2년 이내인 2021년 6월 11일에 수립되었으나, 유역계획은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시한인 2022년 6월을 넘 겨 2023년 5월말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시 부칙내용〕

부칙 <법률 제15653호, 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 및 유역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은 제1항의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나. 분석의견

법정계획인 유역계획의 수립 기한이 2022년 6월인데, 2023년 5월말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동 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회 지원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역계획은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

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등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정계획³⁷⁾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위해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역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³⁸⁾, 유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

즉, 유역계획이 수립되어야 법률의 목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물관리, 유역 간 물관리의 조화 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유역계획이 법정 기한인 2022년 6월(국가계획 수립일 이후 1년 이내)을 넘어 2023년 5월말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당초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임기가 2022년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동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유역계획이 수립되어야 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유역물관리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계획(안)에 대한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심의를 2022년 7월 14일-15일경에 요청하였고, 1기 국가위 임기 종료(22.7.30)가 임박한 시점임에 따라 약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합성 심의 추진이 곤란하여 유역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2022년 8월 25일 1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2023년 6월 2일 2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인데, 환경부는 법정계획인 유역계획 수립이

37)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8) 「물관리기본법」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지원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수립(안) 용역	1차 : 200 2차 : 560	1차 : '20.12.29.~'21.4.28. 2차 : '21.4.29.~'22.2.18.
낙동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2021~2030) 수립 (안) 용역	1차 : 240 2차 : 541	1차 : '20.12.24~ '21.04.23 2차 : '21.06.01~ '22.12.09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안) 마련 연구용역	1차 : 300 2차 : 500	1차 : '20.12.29~'21.4.28 2차 : '21.4.29~'21.12.28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 리종합계획(2021~2030) 수립 연 구	1차 : 246 2차 : 602	1차 : '20.12.28.~'21.4.27. 2차 : '21.4.28.~'22.12.29.

자료: 환경부

3-3. 세목조정을 통한 연례적인 임차비 집행 및 불요불급한 홍보용역비 연말 집행 주의

가. 현 황

2022회계연도 국가유역물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의 비목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210-01목) 11억 3,700만원, 임차료(210-07목) 6억 4,400만원, 일반용역비(210-14목) 4억 3,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각각 7억 8,700만원, 6억 300만원, 3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 비목별 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비목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210-01)	1,432	1,333	-	△196	1,137	787	69.2	-	350	1,294
임차료 (210-07)	480	480	9	156	644	603	93.6	-	41	480
일반용역비 (210-14)	350	350	49	40	439	337	76.7	66	36	45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매년 소요 대비 과다편성되는 일반수용비 예산은 감액 편성하는 한편,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는 임차료는 적정 소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 일반수용비 예산 1억 9,600만원을 임차료 및 용역비 등으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

그런데, 연초인 1월에 세목조정 금액의 74%에 해당하는 1억 4,500만원을 임차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기획운영팀(심의지원팀 공동사용)에 사무기기·가구, 관용

차, 회의실 임차료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금강유역팀에 회의실 임차료 등으로 1,500만원을 배정하였다.

[2022년 1월 세목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날짜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세목 조정 사유
	세목코드		세목코드	
'22.1.18.	210-01	130	210-07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사무용품, 회의실 임차료 등 예산 필요
'22.1.25.	210-01	15	210-07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 회의실 임차료 등 예산 필요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당초 임차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3억 2,000만원을 4대강 유역지원팀에 배정(4개소×8,000만원)한 후 기획운영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족분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도 임차비 배정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편성예산 배정내역	세목조정 추가배정내역	세목조정 시기
총계	480	155.7	-
기획운영팀·심의소통팀	160	130	1월
한강유역지원팀	80	9.5	2월, 10월, 11월
낙동강유역지원팀	80	1.2	11월
금강유역지원팀	80	15	1월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	80	-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당초 환경부에서 기획운영팀(심의소통팀)에 배정한 임차비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동 금액의 81.3%에 해당하는 1억 3,000만원을 1월부터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필요한 예산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라 보인다.

[2022년도 기획운영팀(심의소통팀) 임차료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예산			세부집행내역						
본예산	조정	예산현액	총계	사무실	사무기기·가구	음향장비	영상회의 장비	관용차	회의장 임차등
160	130	290	281	156	59	21	14	13	18

주. 2022년 1억 6,000만원은 기획운영팀 및 심의지원소통팀에 재배정한 임차비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1년 1월에도 일반수용비 1억 5,500만원을 임차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는데³⁹⁾, 연례적으로 필요한 임차비 소요를 반영하지 않고 세목조정을 통해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세목조정은 동일한 목 내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소요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조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필요한 예산 소요 산출 노력을 하지 않고 임의 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도 일반수용비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13억 3,300만원(제2회 추경기준) 중 1억 9,600만원은 타 비목으로 조정, 3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총 7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59%에 해당하였다. 2021년도에도 2억 3,500만원이 타 비목으로 조정되었으며, 예산 대비 실행률이 74.5%에 불과하였다.

[2021년 및 2022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A)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1	1,332	△235	1,097	992	105	74.5
2022	1,333	△196	1,137	787	350	59.0

자료: 환경부

39) 환경부는 2021년 1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4,500만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6,000만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5,000만원)의 사무실, 사무기기 등 임차계약을 위해 총 1억 5,500만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8월에 추가적으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사무기기 등 임차계약을 위해 3,400만원을 조정하였다.

이는 환경부에서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시 실제 집행소요 대비 과다 편성하고, 타 비목 부족시 자체조정 등을 과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환경부는 각 팀별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관용차, 회의장비 등의 적정 소요를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임차비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소요 대비 과다편성되는 일반수용비 예산은 절감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 2022년도 각 팀별 소요 임차료 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무실 위치	사무실 전용면적	팀 인원	2022년 임차료
기획운영팀· 심의회소통팀	세종특별자치시	523㎡	24명	156,640 (월 13,035)
한강유역지원팀	경기도 하남시	136㎡	8명	35,640 (월 2,970)
낙동강유역지원팀	경남 창원시	125㎡	8명	36,000 (월 3,000)
금강유역지원팀	대전시 유성구	148㎡	7명	34,980 (월 2,915)
영진강섬진강 유역지원팀	광주 서구	145㎡	7명	15,470 (월 1,289)

자료: 환경부

둘째, 세목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홍보용역비의 연말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위원회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일반용역비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물관리위원회의 1년간 홍보사업 용역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2기 위원회 출범(11월)을 계기로 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영상 기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1월말 일반수용비에서 5,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추가 홍보용역을 체결('22.12-'23.3.)하였다.

[2022년도 홍보용역 발주내역]

(단위:백만원)

용역명	과업 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 홍보사업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활동과 물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활성화	191	224~234	-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상기획제작사업 ¹⁾	지속가능한 물환경 실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 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영상 기획	55	22.12~23.3	세목조정 11.25.

주. 1)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2년 4월에 체결한 홍보용역은 온라인 홍보(이미지배너 제작, 공모전 운영 등) 위주인 반면, 12월에 체결한 홍보용역은 제2기 국가위 홍보 영상 제작 용역으로 내용적으로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4월에 기 체결한 홍보사업을 통해서도 2023년 4월까지 주요 계기 및 시기에 따른 집중홍보가 가능하고, 제2기 국가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므로, 연말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별도의 홍보용역 발주는 불필요했다고 보인다(필요시 2023년도 홍보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향후 환경부는 이와 같은 연말 불요불급한 홍보용역비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저조한 수납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법정부담금⁴¹⁾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수질배출부과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을 비롯하여 총량초과 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기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2022년 법정부담금 세입예산액 6,864억 4,200만원의 202.7%인 1조 3,910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248억 6,400만원을 수납하고 6,440억 8,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21억 4,5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법정부담금 합계	686,442	686,442	686,442	1,391,095	724,864	644,086	22,145	52.1
환경개선부담금	243,100	243,100	243,100	750,314	216,371	511,821	22,122	28.8
대기배출부담금	28,078	28,078	28,078	36,264	29,372	6,892	1	81.0
수질배출부과금	9,893	9,893	9,893	55,419	6,364	49,032	23	11.5
재활용부과금	21,167	21,167	21,167	35,558	26,144	9,414	-	73.5
폐기물부담금	175,564	175,564	175,564	215,118	209,889	5,229	-	97.6
수질개선부담금	14,759	14,759	14,759	20,152	15,654	4,498	-	77.7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4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59-593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생태계보전부담금	56,309	56,309	56,309	87,658	61,572	26,086	-	70.2
폐기물처분부담금	136,356	136,356	136,356	163,912	157,673	6,239	-	96.2
기타부담금	1,215	1,215	1,215	26,699	1,825	24,874	-	6.8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징수활동 실적 관리 및 고액채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2.1%로, 전년도 수납률 53.3%에 비해 1.2%p 하락하였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8	792,441	792,441	792,441	1,525,751	724,827	91.5	47.5	753,452	47,472
2019	917,058	917,058	917,058	1,699,393	901,722	98.3	53.1	777,875	19,796
2020	892,660	892,660	892,660	1,613,647	841,465	94.3	52.1	712,223	59,959
2021	929,207	929,207	929,207	1,500,876	800,375	86.1	53.3	670,818	29,683
2022	686,442	686,442	686,442	1,391,095	724,864	105.6	52.1	644,086	22,145

자료: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세부유형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9개의 부담금 중 6개 부담금에서 수납률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28.8%), 수질배출부과금(11.5%), 기타부담금(6.8%)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수납실적이 저조하였고, 이 외에 대기배출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은 수납률이 70%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대비 수납

률이 하락하였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법정부담금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전년대비 수납률 증감(c-C)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환경개선부담금	840,976	271,311	32.3	750,314	216,371	28.8	△3.5
대기배출부담금	20,432	17,813	87.2	36,264	29,372	81.0	△6.2
수질배출부과금	64,277	14,088	21.9	55,419	6,364	11.5	△10.4
재활용부과금	37,831	28,562	75.5	35,558	26,144	73.5	△2
폐기물부담금	209,048	204,425	97.8	215,118	209,889	97.6	△0.2
수질개선부담금	20,054	14,819	73.9	20,152	15,654	77.7	3.8
생태계보전부담금	94,206	56,648	60.1	87,658	61,572	70.2	10.1
폐기물처분부담금	202,743	191,859	94.6	163,912	157,673	96.2	1.6
기타부담금	11,309	850	7.5	26,699	1,825	6.8	△0.7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납률이 2018년 38.6%에서 2022년 28.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수질배출부과금은 2018년 12.1%에서 2019년 10.0%로 하락한 이후 2021년 21.9%로 수납률이 제고되었는데, 2022년도에 다시 11.5%로 하락하였다.

[2018~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	1,097,302	1,020,740	936,520	840,976	750,314
	수납액	423,633	387,761	331,737	271,311	216,371
	수납률	38.6	38.0	35.4	32.3	28.8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결정액	72,505	108,079	106,431	64,277	55,419
	수납액	8,804	10,791	11,260	14,088	6,364
	수납률	12.1	10.0	10.6	21.9	11.5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저조 문제 및 징수실적 제고 필요성은 2017회계연도부터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2022회계연도에 수납률이 더욱 저하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도 일부 감소하였으나(81.1% → 79.9%), 과거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 감소(10.3% → 8.3%)가 수납률 감소의 주 원인이며,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올랐으나('21년 76.2% → '22년 79.1%), 과거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 감소('21년 15.4% → 4.3%)로 수납률이 하락하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후 신규 부과대상 자동차가 없어 징수결정액 중 과년도 체납액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⁴²⁾, 차량 노후화(11년 이상), 조기폐차 지원으로 부과대상이 급격히 감소된 것이 수납률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며⁴³⁾,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2021년도에 활발한 체납징수 활동(172개 업체 89억원 징수)으로 2022년 이후 납부가능한 업체가 감소하여 95개 업체에 대해 21억원을 징수한 것이 전년 대비 수납률 하락의 큰 이유이며, 고액체납자 중 2022년 분할납부금 5억원 미납 등도 수납률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42) '19년 62.4% → '20년 65.7% → '21년 69.0% → '22년 71.3%

43) '19년 396.3만대 → '20년 343.5만대 → '21년 275.7만대 → '22년 220.6만대
수납률 = ((현년도 + 과년도) 수납액 / (현년도 + 과년도) 징수결정액) × 100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 당해연도 및 체납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율(변동폭)
환경개선 부담금	2021	당해연도	260,565	211,439	47,498	1,629	81.1
		과거체납분	580,411	59,872	492,848	27,691	10.3
		총계	840,976	271,311	540,345	29,320	32.3
	2022	당해연도	215,431	172,059	43,335	37	79.9(Δ1.2)
		과거체납분	534,883	44,313	468,486	22,084	8.3(Δ2.0)
		총계	750,314	216,371	511,821	22,122	28.8(Δ3.5)
수질배출 부과금	2021	당해연도	6,845	5,219	1,627	-	76.2
		과거체납분	57,432	8,869	48,549	13	15.4
		총계	64,277	14,088	50,176	13	21.9
	2022	당해연도	5,290	4,185	1,106	-	79.1(2.9)
		과거체납분	50,129	2,180	47,927	23	4.3(Δ11.1)
		총계	55,419	6,364	49,032	23	11.5(Δ10.4)

자료: 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수납률 제고를 위해 1)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연도별로 부과·징수 실적, 압류 현황 등 지자체별 징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62호) 개정('22.3.28.)을 통해 추가 징수비용 지급률을 확대(20%→30%)⁴⁴⁾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독려하고 있고, 2)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을 매반기마다 보고받고 있고, 상반기(3월)·하반기(11월)에 배출부과금 징수율 60% 미만인 지자체와 고액 체납사업장(1억 원 이상)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수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여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는 지자체별 징수실적을 연도별 및 반기별로만 보고받고 있는데, 보고

44) 기존에는 징수금액의 10%를 지자체에 교부한 후,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교부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30%를 추가 교부할 수 있도록 지급률이 상향 조정되었다.

주기를 분기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징수실적 점검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의 월별 징수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월 또는 분기별 각 지자체의 징수 활동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두 부담금의 징수결정액 중 과거체납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미납액이 큰 지자체 및 고액 장기체납자⁴⁵⁾를 특별 관리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율 또한 하락하였으므로 당해연도 발생액에 대한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5)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 미납금액 상위 지자체 및 고액 장기체납자 현황(1-3순위)]

(단위: 백만원)

순위	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지자체명	금액	체납자명	금액
1	강남구청	12,535	(주)남OOO	37,147
2	서초구청	9,908	(주)영OOO	3,067
3	김해시청	9,622	부OOO	1,311

주: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을 개인별로 하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서 일괄로 처리함에 따라 지자체 별로 구분

자료: 환경부

가. 현 황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⁴⁷⁾은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등 1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1,565억 3,500만원의 97.9%인 1,532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148,519	148,378	8,051	156,535	153,216	97.9	643	2,572	126,04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2-1.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 수요 제고 방안 마련 및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질유를 사용하는 시설을 LPG, LNG 등 청정연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스템 교체를 지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하는 것으로, 2022년 신규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총 86개 사업장(소규모 66개소, 대규모 20개소)의 배출시스템 교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 26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148519	148378	8,051	156535	153,216	97.9	643	2572	126042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	2,650	2,650	-	2,650	2,650	100.0	-	-	2,65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기업 수요가 저조하여 실적집행률이 20.8%로 부진하였으나, 환경부는 동 사업의 대기오염물질 개선효과가 큼에 따라 계속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사업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에 부합하게 보조금을 집행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⁴⁸⁾ 중

48)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규격별 설치비의 90%를 지원(LPG 최대 108백만원, LNG 최대 72백만원)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의 실행결과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사업수행주체인 8개 지자체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률이 100%에 해당되었으나, 지자체는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실행률이 20.8%에 불과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소규모 배출시설 66개소의 설비 교체 지원으로 16억 5,000만원, 대규모 배출시설 20개소의 설비 교체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소규모 배출시설 지원으로 16억 8,400만원을, 대규모 배출시설 지원을 위해 9억 6,6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지자체 실행률은 소규모, 대규모 배출시설 모두 20%대로 나타나 전체 집행률이 20.8%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A)	실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B/A)
소규모	1,684	337	391	1,115	20.0
대규모	966	213	117	477	22.0
총계	2,650	550	508	1,592	20.8

자료: 환경부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구(실행률 96%)를 제외한 7개 지자체에서 실행률이 50% 미만이었으며, 이 중 2개 지역은 집행률이 0%에 해당하였다.

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되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의미함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2022회계연도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액(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인천	100	-	-	100	0.0
전북	250	-	170	80	0.0
경기	450	36	-	414	8.0
강원	225	24	127	74	10.7
경남	819	137	64	618	16.7
충북	306	135	-	171	44.1
전남	475	194	147	134	40.8
대구	25	24	-	1	96.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청정연료가격(LNG, LPG)이 상승⁴⁹⁾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기업의 신청 수요가 저조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동 사업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저감 효과가 높아⁵⁰⁾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2022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2023년 4월말 기준 선정기업 수가 2개에 불과하는 등 계속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49) 환경부에 따르면, 청정연료인 LPG, LNG 판매가격이 '21년 대비 각각 52%, 96% 상승하였다.

* LPG ('21) 1,029.8원/kg → ('22) 1,567.2원/kg, LNG ('21) 446.4원/Nm³ → ('22) 873.3원/Nm³

50) 환경부에 따르면, 연료전환 교체 전후의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효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 분	교체전	교체후	
	병커C유(황 0.3%)	LNG	LPG
먼지 배출계수(B-C유 대비 저감율)	0.72	0.03(△95.8%)	0.07(△90.3%)
황산화물 배출계수(B-C유 대비 저감율)	4.29	0.01(△99.8%)	0.01(△99.8%)
질소산화물 배출계수(B-C유 대비 저감율)	6.64	6.04(△9.0%)	2.28(△65.7%)

자료: 환경부

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기업의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가능성이 낮은 지자체에도 편성 예산을 전부 교부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및 전북의 경우 편성예산액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금액이 0이었다. 경기·강원·경남의 경우에는 1차례 예산 교부 이후 집행실적이 교부금액에 미달하였는데 잔여 보조금을 모두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각 지자체 불용액(15억 9,200만원)이 교부금액(26억 5,000만원)의 60% 규모로 발생하였다.

향후 환경부는 기업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중소 대기배출 연료전환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교부회차별 교부금액				분기별 실집행금액			
	1차	2차	3차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구	25 (6월21일)	-	-	25	0	0	0	24
인천	100 (5월25일)	-	-	100	0	0	0	0
경기	145 (5월25일)	305 (10월12일)	-	450	0	0	0	36
강원	112.5 (6월28일)	112.5 (11월23일)	-	225	0	0	0	24
충북	100 (7월22일)	100 (8월24일)	106 (10월14일)	306	0	0	0	135
전북	150 (3월18일)	100 (11월16일)	-	250	0	0	0	0
전남	475 (10월24일)	-	-	475	0	0	0	194
경남	462.5 (5월2일)	356.5 (11월8일)	-	819	0	0	26	111
총계	-	-	-	2650			26	524

자료: 환경부

2-2.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건립사업 회계연도를 넘어선 공사비 지급 주의

가. 현 황

첨단감시장비 운영사업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동측정차량, 분광학 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원 탐색 및 감시 역량을 고도화 하는 것이며, 2022년 본예산으로 5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건립사업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2021년도에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집행이 부진하여 이월예산 67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 72.3%인 49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1,859	1,838	8,051	156,535	153,216	97.9	643	2,572	126,042
첨단감시장비 운영	5,409	5,357	7,640	13,103	10,525	80.3	295	2,294	5,058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건립	-	-	6,795	6,795	4,914	72.3	-	1,881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공사 개요]

□ 공사 개요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제1연구동 서측 연소실험동 부지
- 대지면적 : 490,500.00㎡ 중 906.13㎡
- 건축면적 : 금회 증축분 906.13㎡(기존 57,556.99㎡, 총 58,463.12㎡)
- 연면적 : 금회 증축분 2,465.31㎡(기존 142,834.01㎡, 총 145,299.32㎡)
- 건물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교육연구시설)
- 건물규모 : 지상 4층

〈층별 면적 및 주요내용〉

구분	면적(㎡)	주요기능
1층	659.11	첨단감시장비 보관/교정실, 이동측정차량 대기실
2층	604.79	첨단감시 관제상황실, 분광학 장비 교정실
3층	350.67	대기공학연구과 사무실, 대기오염물질 실험/분석실
4층	832.40	미세먼지예보센터 사무실

〈국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준공 후 모습 및 주요 기능〉



□ 주요기능

- 첨단감시장비 측정 data 구축 및 대기오염 관제상황실 운영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시험·분석
- 첨단감시장비 검·교정 및 보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집행관리 미흡으로 연내에 지급하여야 할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공사비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바뀐 후 연관성이 없는 타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해 지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였는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비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1년도 단년도 구축을 목표로 하여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예산 80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9월에 체결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등으로 2억 4,500만원만 집행되었고, 공사비 및 감리비로 편성된 67억 9,500만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다.

[2021회계연도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실시설계비 (420-02)	265	231	4	30	87.1
공사비 (420-03)	7,338	14	6,414	910	0.1
감리비 (420-04)	377	0	377	-	0.0
시설부대비 (420-05)	20	0	-	20	0.0
총계	8,000	245	6,795	960	3.0

주: 시설부대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전액 불용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공사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한 공종별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고(12월말), 공사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불안정, 지장 물 이관 추가 공사,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설비(BIPV) 설치 및 가스히트펌프(GHP) 배출저감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연장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2022년 12월 12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22.9.).

결과적으로 공사가 2022년 12월 12일 준공됨에 따라, 준공 확인 절차 이후 공사비 준공금이 집행되어야 했는데, 환경부의 2022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예산의 72.3%에 해당하는 49억 1,400만원만 집행되었고, 18억 8,100만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회계연도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구축 사업 이월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이월예산(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비고
실시설계비 (420-02)	5	5	0	100.0	-
공사비 (420-03)	6,413	4,721	1,692	73.6	준공금 미정산
감리비 (420-04)	377	188	189	49.9	
총계	6,795	4,914	1,881	72.3	-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12일 공사가 준공되었고, 12월 26일에 업종별 준공금 내역 확인 및 준공금 확정기 이루어져, 12월 30일 디브레인을 통하여 잔여 준공금액(18억 4,600만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변경계약서상의 금액이 최종 정산된 준공금액보다 커서 지급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⁵¹⁾.

구체적으로, 2022년 9월 변경체결한 계약금액이 74억 8,000만원에 해당하였으나, 준공금액이 75억 8,400만원으로 계약변경금액 대비 커졌고, 이와 같이 준공금액이 계약변경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달청 의뢰를 통한 계약변경을 실시해야 했는데, 해당

51)

〈공사 계약금액 및 미정산 금액 현황〉

구분	최초 계약	계약변경	준공	정산(기지급)	미정산
합계	7,606,129,340	7,480,452,340	7,584,346,587	5,737,451,077	1,846,895,510
건축공사	5,400,908,830	5,275,231,830	5,344,549,220	3,609,935,100	1,734,614,120
관급자재	1,972,070,510	1,972,070,510	2,006,647,367	1,894,365,977	112,281,390
설계비등	233,150,000	233,150,000	233,150,000	233,150,000	-

자료: 환경부

절차가 누락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설명이다⁵²⁾.

한편, 동 예산은 2021년도에 편성되어 2022년도로 이월된 예산이었고,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재이월이 불가⁵³⁾하여 불용처리되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준공금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831-301)의 무공해차 인증시험동 사업 예산에서 18억 4,600만 원을 전용하여 2023년 1월 10일 준공금을 집행하였다.

무공해차 인증시험동 사업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한 시험동 건립 및 시험·검사장비를 확충하려는 사업⁵⁴⁾으로, 2022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인데, 환경부는 동일항(프로그램) 내 비목 간 자체 전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무공해차 인증시험동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자체전용하여 동 사업의 공사비 준공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무공해차 인증시험동 자산취득비 예산 현황 및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2022년 예산 (전액 이월)	2023년	
		예산액	전용금액
자산취득비	660	12,340	△1,846

자료: 환경부

그런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 간의 유사성, 시급한 필요성,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동 사업의 준공금 지급의 경우 공사를 적정하게 이행한 계약상대방에게 공사비를

52) 환경부는 준공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작은 경우에는 내부 지출금액정정 절차(사업부서-지출부서 간 문서처리)만으로 지급이 가능하였는바, 준공금액이 더 커진 경우에도 내부 지출금액정정 만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다.

53)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54) 수시배정 사업으로 분류되어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 협의 완료 후인 2022년 11월에 예산(106억 6,000만원)을 배정받았고, 2023년도에 잔여 예산 123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다.

지급할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무공해차 인증시험동 건립사업’과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사업’은 편성 세부사업 및 사업 목적이 각기 상이하는 등 사업 간 유사성이 적으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한편, 무공해차 인증시험동 건립사업 예산은 예기치 못한 전용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감액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환경부는 감액된 예산현액 범위 내에서 적정 규격 검토를 통해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산취득이 가능한 것이라면, 당초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⁵⁾

이와 같이 환경부의 집행 관리가 미흡하여 2022년도 지급되어야 할 공사 준공금이 회계연도를 지나서 지급되었고,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타 사업 예산의 일부를 전용한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부는 향후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건축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별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주의⁵⁶⁾할 필요가 있다.

55)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불가피하게 감액된 무공해차 인증동 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시 구매장비 종류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면서, 사후관리 비용 및 개수 등을 조정하여 연차별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56) 2021년도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인해 이월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대금 지급 실패가 발생하였고,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타 사업예산의 전용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가. 현 황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지원 사업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⁵⁸⁾의 내역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조기 달성 및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계획현액 442억 9,500만원 중 39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61,260	61,260	56,288	91.9	4,493	479	63,9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	44,295	44,295	44,295	39,323	88.8	4,493	479	44,818

자료: 환경부

동 내역사업은 1)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2)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 3)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내내역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은 아래와 같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58)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2-600

59)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주요내용]

구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내용	공공부문의 대표 유형 6개(광역정수장, 업무시설군, 문화·체육시설군, 하폐수·분뇨처리시설군, 연구시설군, 소각·매립시설군)별로 선도 모델 개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중 지자체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사업규모	(2021) 18억원 - 기본계획 수립 등 (2022-2023) 480억원 -6개소, (1개소*80억)	(2022) 115억원 -23개소, (1개소*5억원)	(2022) 87억 9,500만원 - 소속기관 4개소
사업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5개소) -수자원공사 출자(1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직접수행
재원조달	국비 100%	국비 50% (BIPV는 70%)	국비 100%
사업기간	2021-2023년	2022년 ~	2022년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집행 부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건물 및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6개 유형(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별 모델을 발굴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는 것이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498억(기본계획 수립 등 18억원, 6개소별 설계비+공사비 480억원)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2년도에는 6개소의 설계비 및 공사비 총 480억원에 연부율 50%를 적용하여 240억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계획현액 240억원 중 60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61,260	61,260	56,288	91.9	4,493	479	63,9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	44,295	44,295	44,295	39,323	88.8	4,493	479	44,818
공공부문 탄소 중립 모델 개발	24,000	24,000	24,000	6,085	25.4	17,915	-	24,000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태양광·소수력·지열 등 에너지자립률 제고와 단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수단을 적용하며, 6개 유형별로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방식은 수자원공사 출자(1개소) 및 지자체자본보조(5개소)로 이루어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 등 6개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개소당 40억원(총지원금액 80억원의 50%)을 편성하였다.

[탄소중립 모델 지원 대상지]

구분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사업대상지	김해시 장유도서관	완주군 농업기술연구센터	전주시 자연생태관
적용설비	태양광, 지열, 에너지효율제고	태양광, 지열, 에너지효율제고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발전, 에너지효율제고
구분	하폐수·분뇨처리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
사업대상지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화성정수장
적용설비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발전, 에너지효율제고	태양광, LFG(Land-Fill Gas), 에너지효율제고	소수력, 태양광, 에너지효율제고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 변경, 설계 범위 확장 및 추가 설계 소요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편성예산의 74.6%가 이월(실집행률 25.4%)되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델개발 및 중장기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추진함과 동시에,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 유형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의 6개 유형은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로 구분되는데, 광역정수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관리 주체로, 2021년 8월 가장 빠르게 대상지를 고양정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 5개 유형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하였고, 총 2차례의 공모를 거쳐 2021년 12월에 5개 대상지를 모두 확정하였다.

당초 환경부는 사업 1차년도인 2021년에 6개 시설당 3억원씩 총 18억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지가 12월에 선정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차년도 상반기까지로 지연되었다(‘21.12

~'22.5).

다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수행자인 광역정수시설의 경우 2021년 5월에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8월 고양정수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고양정수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가 진행하여 2022년 2월 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2022년 7월 광역정수시설의 사업대상지가 고양정수장에서 화성정수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주요 추진경과]

일자	주요 추진경과
21.5 - 22.2	-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델개발 및 중장기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환경부)
21.5 - 22. 2.	-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선도모델 발굴」용역 추진(수자원공사) * 시범사업 정수장(고양정수장) 선정('21.8.) 및 시범사업 정수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효과 분석 수행(~'22.2.)
21.8 - 21.12.	- 지자체 사업대상 공모(1차: 8.2-9.10. 2차: 10.21.-11.17) * 3개 유형 대상지 선정(10월), 2개 유형 대상지 선정(12월)
21.12 - 22.5.	- 탄소중립 모델발굴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광역정수장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 대상
22. 7.	- 광역정수장 대상지 변경 (고양정수장 → 화성정수장)
22. 하반기 ~	- 5개소 실시설계 착수 및 1개소(단양) 공사 착공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법」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국가수도기본계획⁶⁰⁾(2022-2031)이 2022년 10월 새로 수립됨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다는 설명이다.

60)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초 고양정수장 선정('21.8.) 시에는 2015년에 변경수립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2022년 10월 새로 수립된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정수장에 당초 예정하였던 소수력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새로 변경된 화성정수장은 기본계획 등 타당성조사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⁶¹⁾,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교부액 40억원 중 6억 3,7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하였다.

한편,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단양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제외한 4개소에서 실집행률이 6.9%, 9.8%, 26.7%로 부진하였다.

[2022년 6개 유형 대상지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김해 장유도서관	4,000	4,000	4,000	4,000	392	3,608	0	9.8
완주 농업기술센터	4,000	4,000	4,000	4,000	275	3,725	0	6.9
전주 자연생태관	4,000	4,000	4,000	4,000	276	3,724	0	6.9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4,000	4,000	4,000	4,000	1,067	2,933	0	26.7
단양 폐기물종합처리장	4,000	4,000	4,000	4,000	3,438	562	0	85.9
K-water 화성정수장	4,000	4,000	4,000	4,000	637	3,363	0	15.9
합계	24,000	24,000	24,000	24,000	6,085	17,915	0	25.4

자료: 환경부

61) 다만, 환경부는 변경대상지(화성정수장)에 대한 별도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용역은 없었으나, '21년「광역정수장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용역 당시 추진한 정수장별 기초현황(온실가스 배출량, 시설현황 등) 자료를 활용하여 소수력 발전이 가능한 대체사업지를 선정하였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대상지별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김해시의 경우 설계 발주 전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이행에 장시간 소요, 설계 제안공모 유찰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고, 완주군의 경우 설계영역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22.8.) 및 추가적인 건축계획용역 이행(22.10.)으로 착공 일정이 순연되었다. 전주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체험물 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전시실 콘텐츠 설계·제작 용역 진행 등으로 착공 일정이 순연되었으며, 시흥시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도입방안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설계 및 공사착공 일정이 순연되었다.

[2022년 5개 유형 대상지별 집행부진사유]

구분	집행부진사유
김해 장유도서관	- 설계 발주 전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공공건축 심의) 이행기간 추가 소요 및 설계 제안공모 유찰, 실시설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22.11-'23.2)
완주 농업기술센터	- 설계영역 확장 등 사업계획이 변경('22.8)됨에 따라 추가적인 건축 계획용역 이행(22.10~)으로 설계 및 착공일정 순연
전주 자연생태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건물 내부 전시체험물 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전시실 콘텐츠 설계·제작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 및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가 발생하여 착공 일정 순연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 수소연료전지 도입방안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2.7) 기간 소요에 따라 행정절차(실시설계 및 공사 등) 순연
K-water 화성정수장	-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수도권 용수수요 증가 예측이 변경되어 당초 추진중이었던 고양정수장 소수력 개발 불가능 ⇒ 대상사업장(고양→ 화성정수장)이 변경('22.7)됨에 따라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시행하여 착공일정 순연

자료: 환경부

이에 각 사업대상지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일정이 모두 지연되었다. 당초 6개 사업지에서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였는데, 김해 및 단양을 제외한 4개소에서 설계 추진이 2023년 상·하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 착공은 대부분 2023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설계 및 공사일정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일정]

구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공사 착공	
	당초계획	실제 추진	당초계획	실제 추진
김해 장유도서관	'22.8 - 9.	'22.8 - 12.	'22. 9.	'23.3 ~
완주 농업기술센터	'22.6 - 10.	'22.10 - '23.7.	'22. 12.	'23.8 ~
전주 자연생태관	'22.7 - 11.	'22.8 - '23.7.	'22. 12.	'23.8 ~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22.7 - 23.3.	'23.6 - 7.	'23. 4.	'23.9 ~
단양 폐기물종합처리장	'22.6 - 11.	'22.5 - 12.	'22. 9.	'22.8 ~
K-water 화성정수장	'22.7.	'22.9. - '23.4.	'22. 12.	'23.7 ~

주: 상기 일정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태양광, 지열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소수력) 중 예산규모가 큰 기술요소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당초 2023년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여 2023년도 예산에 잔여 공사비(연부율 50%, 240억원)가 모두 반영되었는데, 2022년 공사에 착공된 대상지는 1개소에 불과하고, 2022년 실집행 부진(실집행률 25.4%)으로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이 예상되는바, 환경부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2.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사업효과 분석 미흡 및 대규모 국비 투입 필요성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혁신기술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⁶²⁾을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물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은 소속기관 4개소의 설계비 및 공사비로 87억 9,500만원(개소당 약 22억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계획현액 87억 9,500만원 중 38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 중립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61,260	61,260	56,288	91.9	4,493	479	63,9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	44,295	44,295	44,295	39,323	88.8	4,493	479	44,818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탄소 중립 지원	8,795	8,795	8,795	3,823	43.5	4,493	479	14,818

자료: 환경부

62)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는 건물의 지붕 및 입면에 외벽마감재 대신 PV 모듈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시 사진]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단년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설계비·공사비·감리비를 모두 편성하였으나, 계획과 다르게 공사 착공이 연말 및 차년도에 이루어져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4개소(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를 선정하였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 8개 건물, 그 외 기관은 각 1개 건물에 해당하여 총 11개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최대발전성능을 낼 수 있는 일반적인 태양광패널(PV)과 달리 설치 조건에 따라 발전성능의 차이가 있어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설치 전 건물 설계 검토 및 손실요인에 대한 예측 분석이 필요하다⁶³⁾.

이에 2022년 예산이 편성된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 기관별 “건물태양광 최적 설치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한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건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건물태양광 최적 설치방안” 용역이⁶⁴⁾ 2022년 사업대상 건물 8개를 포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총 27개 건물을 대상으로 일괄 추진됨에 따라, 8개 건물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 기획설계 용역을 별도로 추진(‘22.4~7.)한 후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다.

63) 환경부 수행용역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태양광컨설팅」(21.12-22.5)

64) 2022년 5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8개월간 용역이 수행되었다(연구용역비 1억 9,500만원).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착공일정]

기관명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국립환경과학원 (8개 건물)	22. 5월 - 12월* (8개 건물을 포함한 27개 건물 전수 대상)	(기획설계) 22. 4월 - 7월 (실시설계) 22. 10월 - 12월	23. 2월 - 23. 11월
한강유역환경청	21.12월 - 22.5월 (각 1개 건물)	22. 6월 - 8월	22. 12월 - 23. 5월
원주지방환경청		22. 3월 - 4월	22. 5월 - 22. 6월
국립생물자원관		22. 8월 - 10월	22. 12월 - 23. 6월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환경부는 2022년도 단년도 공사 완료를 목표로 4개 기관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모두 편성하였는데, 공사규모가 축소된 원주지방환경청⁶⁵⁾을 제외한 3곳에서 실시설계가 2022년 하반기에 착수되었고, 공사 착공은 2022년 12월 이후에 이루어져 3개 기관의 실집행률이 17.9%, 41.7%, 46.8%로 매우 부진하였다. 이에 편성 예산의 51.7%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⁶⁶⁾.

환경부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기존 건물 설계, 공공건축물 심의,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공사영역이 확장되어 공공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재이행하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이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 중립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2년 예산(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국립환경과학원	4,328	2,027	2,232	69	46.8
한강유역환경청	1,000	179	574	247	17.9
원주지방환경청	197	197	0	0	100.0
국립생물자원관	3,170	1,320	1,688	162	41.6
합 계	8,695	3,723	4,493	479	42.8

자료: 환경부

65) 환경부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의 구조안전진단 검토 결과, 벽면 BIPV 설치 위치를 변경했으며, 전력설비 구조상 상계처리가 불가하여 태양광 설치용량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66) 2022년도에 집행된 공사비는 건물일체태양광 관급자재 구매대금 및 공사용역비 선금으로 지출된 비용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라는 혁신기술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이며,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설치 전 건물 설계 검토 및 손실요인에 대한 예측 분석이 필수적이었는바, 기본계획 및 건물태양광 최적 설치방안 수립에 다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데, 환경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비·공사비 예산을 단년도에 무리하게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향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으로 이월된 예산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시범사업의 공사 준공 일정이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 시범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는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⁶⁷⁾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시범사업 4개 기관에 이어 2023년도에 소속기관 3개 및 산하기관 4개 기관의 15개 건물을 대상으로 BIPV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총 14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1차년도, 연부율 30%반영)

또한, 환경부는 소속기관(20개 기관), 산하기관(12개 기관) 등 총 32개 기관 중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5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연도별 사업추진 로드맵⁶⁸⁾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22년도에 추진된 동 사업의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2023년 4월말 현재

67)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2021년은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 대비 32%를 감축하는 것을 권장목표로 하였는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는 33.367%를 감축하여 권장목표를 달성하였다.

68)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현황조사 및 로드맵 마련('23.4~'23.11) >

주요 과업내용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수요조사 ▶ 기추진한 환경부 소속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성과분석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건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자료: 환경부

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은 파악되지 못한 상태인데 환경부는 2023년에 예산을 대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향후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권고기준을 충족⁶⁹⁾하고 있는데,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제6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6항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중 이행실적 목표에 미달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추진 근거 조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④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무부처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수요조사 및 공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69)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기관의 경우 환경부 실적으로 일괄 보고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배출량 대비 32%를 감축하는 것이 권장목표였는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는 33.367%를 감축하여 권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있어 목표관리제 미달 대상 공공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은 2021년 기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권고감축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데, 이미 권고기준 이상인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동 사업을 2022년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이후, 2023년-2024년 2개년 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 2023년 반영예산(연부율 30%) 및 향후 반영될 연부율 70%에 해당하는 예산(343억 4,000만원) 고려시 총사업비가 579억 5,300만원이 된다. 여기에 향후 로드맵 마련을 통해 27개 기관을 대상(건물 수 미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총사업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⁷⁰⁾, 환경부는 동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를 면밀히 산출하여 사업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등 대규모 국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투입 예산 규모]

구분	2022년 예산 (단년도 편성)	2023년 예산 (연부율 30%)	향후 반영예정 (연부율 70%)	총계
예산액	8,795	14,818	34,340	57,953
대상	4개 소속기관 (11개 건물)	3개 소속기관, 4개 산하기관 (15개 건물)		-

주. 환경부는 2023년 예산에 반영된 대상 건물 외에 향후 27개 기관의 소속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총사업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0)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202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2023-2027년 기준 719억 2,300만원에 해당된다.

[2023년~2027년 중기재정계획 소요예산]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소속기관	3,481	8,117	1,515	3,536	1,515	18,164
산하기관	11,237	26,220	3,762	8,778	3,762	53,759
소계	14,718	34,337	5,277	12,314	5,277	71,923

자료: 환경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실집행 부진을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은 비점오염저감 사업⁷²⁾의 내역사업으로, 오염배출부하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비점오염 저감, 물순환 개선 및 숲 조성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노후산단 5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4개년 동안 총사업비 355억원 규모(국고보조율 50%)로 추진된다.

2022년도 예산은 설계비로 15억원(설계비 3억원 × 5개소)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1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비점오염저감	51,375	51,375	1,079	52,454	51,711	98.6	-	743	39,283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1,500	1,500	-	1,500	1,500	100.0	-	-	4,28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7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2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개념도]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실행률은 0%이며, 각 지자체별 용역 착수계획 및 준공일정을 고려할 경우 공사 착공은 2024년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는 각 지자체별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각 5개소 실시설계비 3억원을 반영한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5개소의 실행액은 0원에 해당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월부터 6월까지 대상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고, 6월-7월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대상지 5곳을 선정하였다. 이후 10월경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22년 12월 이후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즉, 2022년도에 사업지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안 마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설계

비로 편성된 15억원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했다.

[2022년도 사업 추진경과]

대상 공모	평가위원 구성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대상 선정	전문가 컨설팅	사업추진 계획(안) 마련
'22.3~ 6	'22.6	'22.6~7	'22.8	'22.10	'22.12

자료: 환경부

한편, 2023년 5월 기준, 각 지자체별 사업진행경과를 살펴보면, 동해시만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중('23.5.-10.)이다. 이 외에 4개소는 실시설계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중인데, 4개소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5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 실시설계 준공기한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로 예정하고 있다.

공사 착공 예상일정을 살펴보면, 4개소는 모두 2024년 상반기 이후를 예정하고 있고, 동해시의 경우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공사 착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산단 5개소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예정 일정]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실시설계 용역 착수계획	실시설계 용역 준공	공사 착공 예정	공사 준공 예정	총사업비
부산	23. 7월	24. 6월	24. 8월	25. 12월	6,000
울산	23. 5월	24. 2월	24. 4월	25. 12월	7,400
진주	23. 5월	23. 12월	24. 3월	26. 12월	7,400
동해 ¹⁾	23. 5월	23. 10월	23. 하반기	25. 12월	7,000
청주	23. 9월	23. 12월	24. 초	24. 말	7,400

주: 1) 동해시의 경우 사업계획안상 계획은 23년 2월부터 5월까지였으나, 실제 용역계약을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체결하여 진행 중

자료: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공사 착공 일정은 2024년도로 예상되는데, 환경부는 2023년도에 전체 공사비의 18%에 해당하는 4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2022년도 실집행 0%에 이어 2023년 편성예산 또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는 향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 일정 및 실제 사업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재조사에 따른 사업정지로 예산 전액 미집행 문제

가. 현 황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⁷⁴⁾은 국가에서 개발한 우수 생물소재 대량증식 관련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생물소재의 품질관리 및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등 생물소재의 대량증식 및 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으로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등 11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복구비로 100억원을 이용하였고, 예산현액 13억 9,100만원은 모두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11,391	11,391	△10,000	1,391	0	0.0	-	1,391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고,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환경 산업연구단지 내에 생물소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74)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5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대량증식 기술이 확보된 생물 소재의 품질관리(QC) 및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 등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
총사업비	- 300억원 (국비 100%, 자산취득비 99.8억원 별도)
사업기간	- 2020 ~ 2023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13,800㎡)
사업시행주체	(시행) 환경부, (운영) 환경부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주요시설	- (증식시설) 벤로형 유리온실, 미생물 발효실, 천연물추출실 - (연구실험동) 기초분석연구실, 분리정제실, 질량구조분석실 등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절차 이행에 따라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가 발생하였고, 환경부는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0년 10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는데, 2021년 8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중간설계 검토 결과 총사업비 증액(300억→574억)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 결과 타당성재조사 시행이 결정(21.10월)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였다.

타당성재조사 결과,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부족(B/C 0.8475), AHP76(0.445)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①본 사업이 재정 투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으로 사업입지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②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조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75)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ratio)은 1과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76) AHP는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0.5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있었다.

환경부는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당초 원안(총사업비 300억원 규모)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⁷⁷⁾, 비수도권 지역에 생물소재증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절차별 추진현황]

기간	사업 추진경과
20. 10.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20. 12.	- 생물소재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 기본·실시설계 용역 체결
21. 2.	- 설계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21. 3.	- 기본계획, 계획설계 완료
21. 7.	- 중간설계 도서작성 완료 및 적정성 검토
21. 8.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중간설계 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유 발생으로 설계용역 일시 정지 * 중간설계 결과,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 대두(300억원→574억원)
21. 9.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완료
21. 10.	- 총사업비 조정 심의(10.15.) * 심의결과 총사업비(300억원→574억원) 조정 요구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정(10.28.)
21. 12.	- KDI 타당성재조사 시행('21.12.~'22.11.)
22. 11.	- KDI 타당성재조사 완료 * 총사업비 재산정 결과(B/C 0.84, AHP 0.445) 증액 필요성 부족 통보
23. 上	- 사업 추진방향 검토 및 협의

자료: 환경부

77) 기존 사업계획에서는 미생물, 식물, 동물 증식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하였으나, 기업수요가 높고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미생물 증식 시설 설치로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환경부가 당초 사업계획을 미흡하게 수립하여 설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변경되고, 타당성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1년에 이어 2022년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

2021년에는 예산현액 59억 6,600만원 중 3.37%에 해당하는 2억 1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22년에는 예산현액 13억 9,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1~2022년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기본조사설계비	-	-	195	195	127	68	65.1
	실시설계비	-	-	-	282	0	282	0.0
	공사비	5,600	5,600	△195	5,405	0	5,405	0.0
	감리비	73	73	-	73	73	-	100.0
	시설부대비	11	11	-	11	1	10	9.1
	소계	5,684	5,684	±195	5,966	201	5,765	3.37
2022	공사비	11,200	11,200	△10,000	1,200	0	1,200	0.0
	감리비	146	146	-	146	0	146	0.0
	시설부대비	45	45	-	45	0	45	0.0
	소계	11,391	11,391	△10,000	1,391	0	1,391	0.0

자료: 환경부

가. 현 황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⁷⁹⁾은 기후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 기후·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는 2022년 예산현액 1,126억 7,500만원 중 1,00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55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9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 그린도시	105,926	105,912	6,763	112,675	100,219	88.9	5,512	6,944	-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비	288	274	27	301	96	31.9	7	198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비	105,638	105,638	6,736	112,374	100,123	89.1	5,505	6,746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으며⁸⁰⁾,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25개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및 2022년 총 2개년동안 사업비를 지원(국고보조율 60%)한다.

기후탄력, 물순환, 물안전, 미래차 등 10개 사업유형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합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79)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5-306

80) 2020년도 추경을 통해 편성된 10억원은 스마트 그린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수행에 집행하였다.

하여 제시하는 모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2개 이상의 사업유형을 결합하는 문제해결형 모델에는 최대 60억원을, 3개 이상의 사업유형을 결합한 종합선도형 모델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문제해결형 모델로는 총 20개소의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종합선도형 모델로는 총 5개소의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유형]

분야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중심	
기본 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회복력 구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배출 지원인프라 구축			자연환경 보전·복원 등 도시 생태계 복원			환경교육, 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환경 개선	
예시 사업	온실가스 감축시설, 스마트 물관리인프라, 그린인프라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폐기물 재이용, 순환시설 등			도시 소생태계 조성, 스마트 탐방 체험센터 조성 등			스마트 환경교육, 소음·빛공해 관리 시설 등	
사업 유형	① 기후 탄력	② 물순환	③ 물안전 ·안심	④ 미래차	⑤ 자원 순환	⑥ 생태 복원	⑦ 생태 휴식	⑧ 청정 대기	⑨ 환경 교육	⑩ 생활 환경	
문제 해결형	도시 커뮤니티 단위의 기후·환경문제 개선·해결을 위해 2개 이상 사업유형이 결합된 모델, 최대 60억/2년 (국비지원액 기준, 매칭비율 6:4), 20개소										
종합 선도형	3개 이상 사업유형이 결합된 모델, 최대 100억/2년 (국비지원액 기준, 매칭비율 6:4), 5개소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2022년도까지 사업완료율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2년도 말 기준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는 0개소였으며, 실행행률이 2년 연속 60% 전후에 불과하였는 바,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0년 말 공모를 거쳐 2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2021년 3월부터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비 52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2차년도 잔여 사업비 1,05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다. 두 회계연도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및 2022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52,275	44,016	6,736	-	44,016	44,016	24,150	19,863	3	54.8
2022	105,638	100,123	5,505	19,863	100,123	119,986	77,399	36,612	5,975	64.5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사업 1차년도인 2021년도에 522억 7,500만원의 84.2%에 해당하는 440억 1,6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는데, 지자체 실집행액은 241억 5,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54.8%에 불과하였다.

2022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인 잔여사업비를 모두 반영하여 1,05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환경부는 전년도 이월액 67억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23억 7,400만원의 89%인 1,001억 2,3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고, 55억 500만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다.

지자체 실집행액은 예산현액 1,199억 8,600만원의 64.5%에 해당되는 773억 9,900만원으로 부진하였고, 25개소 중 14개소에서 70% 미만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25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개소(순천, 부천)는 사업이 취소되었고, 2022년 말 기준 준공 지자체는 0개소였으나, 2023년 3월까지 3개소가 준공되어 2023년 4월말 기준 20개소가 공사 중에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천시는 사업대상지와 연계된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2026년 이후에야 준공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했으며, 순천시는 재정 악화 등 지자체 내부사정으로 인해 환경부로 사업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취소를 결정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20개소 지자체에서는 실시설계 장기간 소요 및 관련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 공공디자인심의, 정보화심의, 문화재조사, 지방예산 추가편성 등) 지연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이다.

[2022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지자체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부산 사하구	3,331	1,832	5,163	2,343	2,820	-	45.4
인천 서구	-	1,244	1,244	481	395	368	38.7
광주 동구	4,313	1,080	5,393	3,047	2,346	-	56.5
경기 화성시	2,641	1,671	4,312	2,792	1,520	-	64.7
경기 부천시 〈사업취소〉	1,098	554	1,652	1,652	-	-	100.0*
경기 성남시	1,607	1,065	2,672	1,269	1,288	115	47.5
경기 안성시	4,155	-	4,155	3,255	900	-	78.3
경기 안양시	1,637	624	2,261	406	1,855	-	18.0
경기 양주시	3,834	551	4,385	4,385	-	-	100.0
경기 평택시	4,308	883	5,191	2,247	2,944	-	43.3
강원 철원등	4,339	1,162	5,501	2,891	2,435	175	52.6
강원 강릉시	3,959	568	4,527	3,018	1,437	72	66.7
충북 진천군	4,155	-	4,155	4,155	-	-	100.0
충남 공주시	3,754	1,418	5,172	4,665	500	7	90.2
전북 전주시	7,594	1,581	9,175	3,983	5,192	-	43.4
전북 장수군	4,200	-	4,200	3,404	796	-	81.0
전남 순천시 〈사업취소〉	4,308	915	5,223	0	-	5,223	0.0
전남 장흥군	4,155	-	4,155	2,681	1,468	6	64.5
전남 강진군	6,507	2	6,509	6,444	65	-	99.0
전남 해남군	4,318	731	5,049	3,464	1,585	-	68.6
경북 포항시	4,293	1,079	5,372	4,272	1,097	3	79.5
경북 상주시	6,999	-	6,999	6,999	-	-	100.0
경남 김해시	6,392	1,407	7,799	3,025	4,774	-	38.8
경남 밀양시	4,427	836	5,263	3,704	1,559	-	70.4
제주도	3,799	660	4,459	2,817	1,636	6	63.2

주. 부천시는 사업이 취소되었으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100%로 집계, 향후 부천시는 미집행 보조금을 정산하여 국고로 반납 예정

자료: 환경부

[각 지자체별 준공 예정일('23년 4월말 기준)]

연번	지자체	준공예정일 ('23년)	연번	지자체	준공예정일 ('23년)
1	인천 서구	완료(3월)	14	부산 사하구	9월
2	경기 양주시	완료(3월)	15	경기 화성시	9월
3	충북 진천군	완료(3월)	16	경기 평택시	9월
4	전북 장수군	5월	17	경북 상주시	9월
5	경북 포항시	5월	18	광주 동구	10월
6	강원 철원 등	6월	19	경기 성남시	10월
7	강원 강릉시	6월	20	경기 안성시	11월
8	충남 공주시	6월	21	전남 해남군	11월
9	경남 김해시	6월	22	경기 안양시	12월
10	경남 밀양시	6월	23	전북 전주시	12월
11	제주도	6월	24	경기 부천시	사업취소
12	전남 장흥군	7월	25	전남 순천시	사업취소
13	전남 강진군	7월			

자료: 환경부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23년 하반기를 준공예정일로 전제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개소에서 2023년도 말까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동 사업 준공 이후 총 1,579억원의 국고 투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대상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으로 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동 사업을 사실상 25개의 독립된 하위 내역사업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⁸¹⁾

81) 환경부는 대상지별 사업비가 최대 167억원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동일사유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어촌뉴딜사업 존재)

이에 동 사업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었으며,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등에도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의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만 사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조성비)는 총 2,632억원이고, 이 중 국고투입분이 1,579억원 규모에 해당되므로, 환경부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동 사업의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 용역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는바, 2023년도 사업 준공 이후 지자체에 평가지침을 배포하고,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성과검증을 진행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동 사업의 연장선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탄소중립 도시’ 세부사업⁸²⁾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증하여 유사 목적 사업 추진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82)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탄소중립 그린도시(6331-302)
목적	도시의 대표적 탄소중립형 친환경 공간모델 구축 및 신기술 실증을 통해 실질적 탄소중립 달성하고, 표준화를 통해 확산체계 마련
사업내용	지역 중장기 탄소중립 계획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핵심사업*을 여건에 맞게 구성 *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탄력 등
대상지	수원, 충주 2개소 선정
기간	2022년-2026년
예산	개소당 5년간 240억원 지원(총사업비 400억원 기준 국비 60% 보조)

자료: 환경부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실적 부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 현 황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⁸⁴⁾⁸⁵⁾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 신설·증설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시한 대출이나 보증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2년 계획 현액 20억원 중 5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당초 동 사업은 연 5조원 규모의 대출상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1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후대응기금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기금사업비 조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122억 5,000만원(편성예산의 86%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조정하였다.

[2022회계연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14,250	14,250	△12,250	2,000	589	29.5	-	1,400	24,25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과제 이행을 위해 대규모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을 2022년부터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산업은행이 2021년 4월 5조원 규모로 출시한 ‘탄소스프레드’ 상품⁸⁶⁾을 기준으로 10년간 총 50조원의 민간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2022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84)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601

85)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86) 산업은행의 ‘탄소스프레드’ 상품은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최고 금리우대 1%, 최장 10년 만기로 운

년도 예산에 1년차 사업비(5조원)에 대한 평균 이자 차이 추정치를 고려하여 이차보전 비용 1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 14,250백만원(순증)
 - 5조원(1년차 사업비) × 0.57%(평균이자차이추정치) × 50%(보전비율) = 14,250백만원
 -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 확대(6.5% → 13%) 및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추진(10년간 총 50조 자금 지원)
 - (예시) 탄소스프레드(산업은행 출시)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편성 예산 대비 4%에 불과하는 등 당초 예상과 달리 수요가 매우 저조하므로, 기업 수요 확대 등 실질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당초 동 사업 편성 시 산업은행의 탄소스프레드 상품 출시 현황 및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의 상품 출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총 5조원 대출 규모의 평균 이자 차이 추정치를 고려한 이차보전비용 1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수행금융기관 모집공고 결과 산업은행 및 신한은행 2곳의 금융기관만 선정되었고, 각 금융기관에 대여를 신청한 기업 현황 또한 산업은행 17개 기업, 신한은행 1개 기업 등 총 18개 기업으로, 동 상품에 대한 기업의 신청 수요가 저조하였다.

영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상품과 신유망 산업분야의 저탄소 품목 관련 생산시설 설치사업 또는 R&D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저탄소 생태계’ 상품 등 2가지 상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승인 및 대여 내역]

(단위: 개소수, 백만원)

취급은행	승인		대여(집행액)		이차보전지원금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합계	18	835,900	11	289,327	11	589
산업은행	17	832,900	10	286,727	10	579
신한은행	1	3,000	1	2,600	1	10

자료: 환경부

한편, 2022년도에 총 18개 업체가 8,359억원을 신청하여 모두 승인받았는데, 이 중 2022년도에 실제 대여가 이루어진 내역은 11개 업체 2,893억 2,7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초 5조원으로 전제한 대출 규모의 5.8%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이차보전지원금 또한 편성 예산의 4%에 해당하는 5억 8,900만원만 집행되었다⁸⁷⁾.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억원, 백만원, %)

예산편성시 전제한 대출규모(a)	실제 대출금액 (b)	비중 (b/a)	이차보전예산 (c)	집행액 (d)	비중 (d/c)
50,000	2,893	5.8	14,250	589	4.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업규모별 실제 대출이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개 기업 중 중소기업 2개에 102억원, 중견기업 5개에 651억원, 대기업 4개에 2,140억원을 지원하였다.

87) 기후대응기금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기금사업비 감액조정(2022년 12월 8일 실시) 예산현액은 4,950 억원으로 예산현액 기준 대출금액 비중은 58.4%, 이차보전 예산현액 20억원 기준 이차보전액 집행 비중은 29.5%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기후대응기금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말에 감액조정된 예산현액으로, 당초 환경부가 예산 편성시 전제한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기업규모별 대출 집행 현황 및 이차보전 금리]

구분	대출기업수	대출금액	이차보전금리
중소기업	2개소	102억원	2.6%
중견기업	5개소	651억원	2.3~2.5%
대기업	4개소	2,140억원	1.2~1.4%
총계	11개소	2,893억원	-

주. 이차보전금리는 환경부와 취급은행이 50:50으로 지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동 사업이 신규사업임에 따라 홍보가 미흡하였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글로벌 금리상승으로 인한 참여은행의 실제 대출 이율 상승, 설치 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라 당초 기업 수요 조사와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는 우대금리 지원폭을 확대하여 242억 5,000만원을 편성(신규 대출규모 3.52조원 전제)하였는데, 2023년 4월말 기준 총 3개 기업이 선정(2,325억원, 6.6%)되는 등 여전히 기업 수요가 저조한 바, 환경부는 적극적인 기업 홍보, 수행기관 추가 발굴 등 동 사업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의 지원범위가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지원범위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 시행을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기준에 따르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보인다.

[이차보전 지원대상 규정]

제6조(이차보전 지원대상) ① 금융기관은 제5조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 상품의 지원대상을 아래 각 호로 한다.

1.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자료: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참고로,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1531-310), 친환경설비투자(6232-602) 등 용자사업의 지원대상 및 조건 등은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지원 범위를 각종 설비종류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순환경제 내 경제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사업 또한 지원범위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⁸⁸⁾”상의 경제활동 내용을 고려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지원 기업의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사업의 목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지표를 “지원 기업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88) 환경부는 2021년 12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 및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며,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목표 내 총 67개 경제활동으로, ‘전환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내에 총 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2	'23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 기업의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7	87.1	신규지표로 과 거 타용자사업 만족도 조사 점 수를 감안하여 87.1점을 목표 치로 설정	녹색정책금융활 성화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설 문 조 사 결 과 보 고 문 서 (한 국 환경산업기술원)
	실적	90.3	-			
	달성도	103.8	-			

자료: 환경부

그런데, 동 사업의 목적이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이므로, 사업 목적에 따른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환경부는 당초 성과지표 설정시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기업지원에 따른 온실가스 감
축 효과를 예측하거나, 감축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지원기업 만족도를 시
작년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는 설명이나, 동 사업은 외부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⁸⁹⁾, 온실가스 예상 감축 효과 등 동 사업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22년 9월에 최초로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이
행지표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따른 평균 온실가스 잠재감축량 24% 이상 감축'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를 온실가스 감축량 24%이상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9)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17조(지원대상 업체 결정) ① **지원대상 업체가 이차보전 대상 상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온
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출 상품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별 신용상태 등을 금융기관 여신규정
에 따라 확인하고, 검증기관에 확인한 후 예산 가용액범위에서 지원대상 업체, 대출금, 지원금리,
대출금리 등을 결정한다.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상 성과목표]

(단위:%)

내역사업명	감축사업 유형	이행지표	2022년		2023년
			성과목표	실적	성과목표
녹색정책금 융활성화	인식제고/ 정책지원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따른 평 균 온실가스 잠재감축량* 24% 이상 * 지원사업장의 해당 프로젝트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24% 이상 감축	-	온실가스 감 축량 24% 이상 감축

자료: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또한, 동 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친환경설비투자(6232-602)⁹⁰⁾ 사업에서도 성과지표를 동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기업의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또한 성과지표를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설비투자(6232-602)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2	'23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 기업의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7	87.1	신규지표로 과거 타용자사업 만족도 조사 점수를 감안하여 87.1점을 목표치로 설정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결과 보고문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적	87.5	-			
	달성도	100.6	-			

자료: 환경부

90) 동 사업의 사업목적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신설 및 증설을 위한 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하여 경기상황 등으로 규모·재정·기술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정융자금 재정지원'으로, 용자사업에 해당한다.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확대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가. 현 황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⁹²⁾⁹³⁾의 내역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및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또는 사업장)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조사업(국고보조율 중소 70%, 중견 50%)으로 구분되는데, 환경부는 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사업 계획현액 904억 200만원 중 774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30억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122,050	121,700	584	122,284	108,726	88.9	317	13,241	161,655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116,081	115,931	494	116,425	103,094	88.5	225	13,106	148,23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	90,402	90,402	-	90,402	77,402	85.6	-	13,000	131,342

자료: 환경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92)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00

93)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총 26억 2,000만톤을 할당하였고, 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②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까지는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만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 예산은 전년(147억원) 대비 557억원 증액하여 704억원을 편성하였고, ①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②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를 유연탄에서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연료전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예산(1개소,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2회계연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내역]

구분		2022년도 예산편성내역	비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 70,402백만원(A) - 중소기업(29,577백만원)= 31개소 × 1,363백만원 × 70% - 중견기업(40,825백만원)=42개소 × 1,944백만원 × 50%	계속사업 ('15~)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00백만원(A) - 10개소 × 2,000백만원 × 50%	22년 신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10,000백만원(A) - 1개소 × 20,000백만원 × 50%	22년 신규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사업 개요]

- (개요)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 (절차) ①A할당업체가 B업체(중소·중견업체)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 감축설비 설치 → ③B업체의 감축량을 A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추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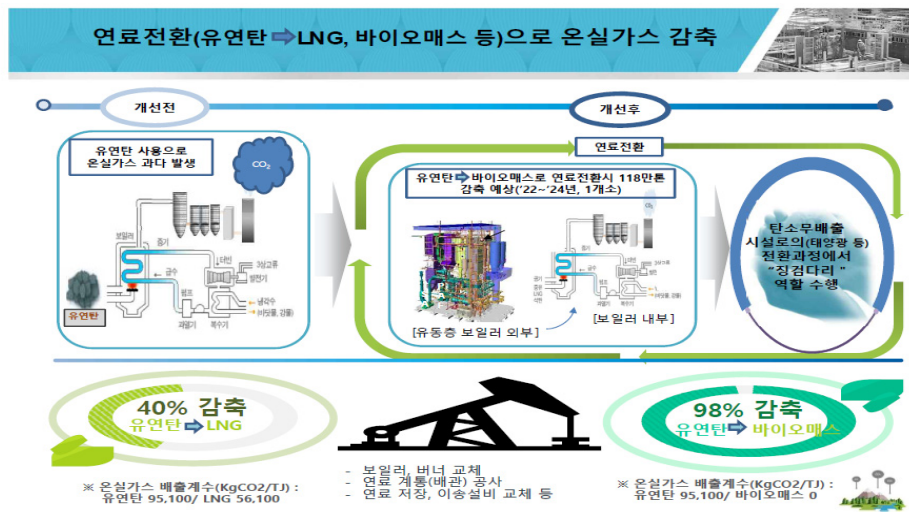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개요]

- (사업개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국고 50%)
- (지원대상)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
- (사업내용) 유연탄 → 바이오매스 전환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개념도>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전년 대비 신규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물량 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내역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향후 각 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을 2021년 대비 515% 확대하여 편성하였다(2021년 147억원 → 2022년 904억원).

2021년까지는 배출권거래 할당대상업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2022년에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억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범위를 확장하였다.

[2021년 및 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증액분	증가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14,700	70,402	55,702	378.9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00	10,000	신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10,000	10,000	신규
총계		14,700	90,402	75,702	515.0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2년 집행 결과,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이 총 2개 업체 11개 설비, 16억원 규모에 불과하였고, 이 중 2022년도에 9개 설비만 준공되어 11억 4,600만원은 2022년도에 집행되었으나, 2개 설비 설치 비용인 4억 6,3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어 실효행률은 11.5%에 해당하였다.

[2022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집행액(b)	이월액	집행률 (b/a)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00	1,146	463	11.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연료전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1개소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내역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대상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실집행률 0%).

[2022년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b/a)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00	0	10,000	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신청 수요가 저조했으며,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의 경우 선정된 업체가 시공업체 입찰공고 시 약 583억원의 공사비를 추정하여 공고했으나, 응찰업체에서 제시한 공사비가 920억원(러시아 전쟁 등 원자재비 상승 반영)으로 예산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동 예산이 동일한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바, 집행이 저조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사업 예산의 일부를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2023년에도 수요 저조시 이와 같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및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선정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70,402	75,766	58,095	17,372	299	82.5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00	1,609	1,146	463	3,027	11.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환경부는 2023년에도 각 내내역사업별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데(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346.9억원 증액, 저탄소 청정연료 지원 62.5억원 증액) 예산 편성 시에 해당 사업별 증액 필요성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사업별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환경공단은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할당대상업체 663개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22.7.21-8.31)하였는데, 수요조사 결과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신청기업은 0개소에 해당하였고,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 협약을 맺은 대상업체가 계속하여 지원을 희망하여 1개소로 조사되었다.⁹⁴⁾ 환경부는 향후 각 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취지에 맞추어 집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및 2023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액분	증가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70,402	105,092	34,690	49.3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00	10,000	0	0.0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00	16,250	6,250	62.5
총계		90,402	131,342	40,940	45.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4) 2022년도에 등 대상업체의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 현 황

수소차 보급 사업⁹⁶⁾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수소청소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정액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 단가는 수소승용차 2,250만원, 수소버스 저상 1억 5,000만원, 고상 2억원, 화물차 2억 5,000만원, 청소차 7억 2,000만원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6,677억 6,900만원의 72.4%인 4,834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42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수소차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892,769	667,769	667,769	483,486	72.4	9	184,274	822,950
수소차 보급	679,505	454,505	454,505	288,813	63.5	-	165,693	633,4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2. 동 사업은 2023년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1633-301)'과 통합되어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및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 사업으로 분리 편성됨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수소승용차, 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전 지원 차종의 보급 실적이 부진하므로, 환경부는 차량 출시일정, 소비자 구매수요,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물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96)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6

환경부는 2022년도에 수소승용차 2만 7,650대, 버스 340대, 화물차 6대, 청소차 4대 보급을 위해 본예산 6,79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 구매수요 저조 및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인한 생산 지연 등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10,000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예산을 4,545억 5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각 지원 차종별 실적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회계연도 수소차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추경(a)	교부	실집행(b)	실집행률(b/a)
수소승용차	622,125	397,125	244,823	226,489	57.0
수소버스	53,000	53,000	37,700	17,008	32.1
수소화물차	1,500	1,500	1,250	250	16.7
수소청소차	2,880	2,880	5,040	0	0.0
소계	679,505	454,505	288,813	243,748	53.5

주1. 실적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중 지자체가 실적행한 금액이다.

주2. 실적행률을 추경금액 대비 산출한 것은, 환경부가 제2회 추경에서 2022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자료: 환경부

먼저, 수소승용차의 경우 본예산으로 6,22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3,971억원(△2,250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지자체에는 추경예산의 61.6%에 해당하는 2,448억 2,300만원만 교부하였다. 지자체 실적행금액은 2,264억 8,900만원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추경예산 대비 57.0%에 불과한 실적이다.

수소버스의 경우 본예산 530억원 중 71.1%에 해당하는 377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고, 지자체 실적행금액은 170억원(실집행률 32.1%)에 해당하였다.

수소화물차의 경우 본예산 15억원 중 12억 5,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2억 5,000만원(실집행률 16.7%)만 실적행되었다.

수소청소차의 경우 본예산은 2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급물량을 상향하여 지자체에 50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지자체 실적행액은 0에 해당하였다.

한편, 보급물량을 기준으로 실적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소승용차의 경우 당초 본예산 보급계획 목표는 2만 7,650대였으나, 추경 및 전년 이월물량 등을 고려해 총 보급계획 물량이 1만 7,941대로 조정되었고, 그 중

56.3%에 해당하는 10,104대가 보급되었다.

수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300대 및 광역버스 40대 등 2022년 보급 계획 물량에 전년 이월물량을 포함하여 총보급계획 물량이 429대에 해당되었는데, 실제 보급지원 물량은 35.4%에 해당하는 152대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수소화물차 6대 및 수소청소차 4대 등으로 10대 보급을 계획하였으나, 동 차종 관련하여서는 보급실적이 전무하다.

[2022회계연도 수소차 보급 사업 물량 보급 내역]

(단위: 대, %)

차종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A)	실제 보급물량(B)	보급률 (B/A)	다음연도 이월물량
수소승용차	27,650	291	△10,000	17,941	10,104	56.3	247
수소버스	340	89	-	429	152	35.4	82
수소화물차	6	-	-	8	0 ¹⁾	0.0	3
수소청소차	4	-	-	7	0	0.0	7

주. 실제 보급물량은 신규차량 등록기준

주: 1) 수소화물차의 경우 2022년에 1대가 집행(250백만원)되었으나, 2023년도에 신규차량으로 등록될 예정으로 보급물량은 0으로 나타났다.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승용·승합·화물 등 각 차종별 단일차종⁹⁷⁾으로 인해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보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수소차 차량 출시 계획 및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출시여부 (23. 5월말 기준)
버스(고상버스)	22. 7월	23. 4월	O
화물차	22. 4월	22. 11월	O
청소차	22. 12.월	23. 상반기	X

자료: 환경부

97) [수소차 출시 현황]

그런데, 동 사업은 2021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소버스의 집행실적이 부진(45.8%)하므로, 실제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결산 결과 동일한 실집행 부진 문제(수소버스는 집행 실적이 36.3%⁹⁸⁾로 2021년도 대비 하락)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은 매년 편성된 예산 대비 지자체에 교부하지 못하고 불용하는 금액 및 지자체 단위의 불용금액이 상당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추경 예산 기준 44.6%에 해당하는 2,027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구분	승용	시내버스	광역버스	화물	청소차
사진					압축진개형  암롤트럭 
차종명	넥쏘	일렉시티 FCEV	유니버스 FCEV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미정
연료용량	6.3kg	33.99kg	33.99kg	41kg	27kg
주행거리	609km	474km	-	-	-
출시	'18년 3월	'19년(시범), '20년(양산)~	'23년 4월~	'21.11월(시범), '22.11월~(양산)	'23.上~(예정)

자료: 환경부

98) 전년도 시정요구에서 제시한 실집행률 수치는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이었는데,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36.3%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불용액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A)	부처불용액 (B)	지자체 불용액 (C)	전체불용액 (D=B+C)	불용비중 (D/A)
2018	3,585	14,835	-	2	2	0.01
2019	97,000	130,408	4,500	1,988	6,488	5.0
2020	254,250	239,250	21,555	80,085	101,640	42.5
2021	365,500	365,500	111,977	59,364	171,341	46.9
2022	679,505	454,505	165,693	37,064	202,757	44.6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러한 집행 부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수소버스, 화물차 및 청소차의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하였는데, 연례적인 대규모 불용액 금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하므로, 향후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 충전인프라 구축현황⁹⁹⁾, 소비자 구매수요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불용금액이 대규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수소차 보급 계획물량]

(단위: 대)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규모
수소승용차	17,650	16,000	△1,650
승합차	340	700	360
화물차	6	100	94
청소차	4	120	116

자료: 환경부

99) 환경부에서 제출한 2022년 12월말 기준 수소충전소 전국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 229기(승용충전소는 122기, 상용충전소 38기, 연구용 등 19기)가 있다.

가. 현 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¹⁰¹⁾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의 스마트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243억 6,100만원의 75%인 18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8,361	24,361	±963	24,361	18,277	75.0	6,085	-	53,823
스마트 하수처리장	14,755	14,755	-	14,755	11,121	75.4	3,634	-	-
스마트 하수관로	20,000	6,000	-	6,000	3,550	59.2	2,450	-	41,670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3,606	3,606	±963	3,606	3,606	100.0	-	-	8,10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①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의 주요요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제어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내역사업, ② 하수관로에 실시간 수량·악취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ICT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도시침수와 악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하수관로 내역사업, ③ 하수도 시설(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등)의 내용연수 연장,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설물의 이력 관리, 자산상태를 데이터화하는 등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0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9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각 내역사업 내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스마트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지능화	- 에너지 절감, 수질개선 등을 위해 ICT 기반 계측·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21) 중형(1만m³/일 이하) 6개소 (‘22) 대형(1만m³/일 초과) 7개소 - 국고보조율 50%	
스마트 하수관로	도시침수 대응	- 강우 시 하수 월류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ICT 측정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모니터링, 강우유출 시 물레이션, 하수도 시설 연계 운영 등 도시침수 대응체계 시범 구축 - 사업 대상: 총 5개소 (‘21~’22) 설계, (‘23~’24) 공사 - 국고보조율 70%	
	하수악취 관리	- 하수 악취저감을 위해 ICT 측정장비를 활용한 하수관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저감장치 자동 운영 등 하수 악취 관리체계 시범 구축 - 사업 대상: 총 5개소 (‘21~’22) 설계, (‘23~’24) 공사 - 국고보조율 70%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 하수도시설(처리장, 관로 등)의 내용연수 연장,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설물 이력 관리, 자산상태 빅데이터화, 데이터마이닝 등 자산관리체계 시범 구축 (‘22~’23) 5개소 (‘23~’24) 5개소 - 국고보조율 70%	

자료: 환경부

10-1.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 단년도 편성에 따른 실집행 부진 문제

가. 현 황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은 에너지 절감, 수질개선, 관리사고 최소화 등을 위해 하수처리장에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2021년 및 2022년 총 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다.

2021년에는 중·소규모 하수처리장(1만³/일 이하)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대규모 하수처리장(1만³/일 이상) 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147억 5,500만원의 75.4%인 11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8,361	24,361	±963	24,361	18,277	75.0	6,085	-	53,823
스마트 하수처리장	14,755	14,755	-	14,755	11,121	75.4	3,634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설계비 및 공사비를 단년도로 편성하였으나, 1차년도 대상지 6개소의 실집행률은 6.7%, 2차년도 대상지 7개소의 실집행률은 24.7%에 불과하여 실집행이 매우 부진하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20.7.28.)받았으나,¹⁰²⁾ 「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¹⁰³⁾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0.8.-‘21.6.)를 받게 됨에 따라 사업 첫 해(2021년도)부터 사업이 지연되었다.

환경부는 총사업비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최종적인 수정과정을 거쳐 2021년 9월말이 되어서야 1차년도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구축 대상지 6개소에 국비를 교부하였는데, 국비 교부 후 지자체 단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연말이 되어서야 설계 발주 및 착수가 이루어졌다.

이에 2021년도 예산현액 94억 2,200만원 중 6억 3,500만원(6.74%)만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87억 8,700만원은 이월되었다. 이월된 예산은 2022년도에 대부분 집행(실집행률 97.7%)되었으나,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사업으로, 중소규모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의 공사는 2024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	이전용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2021	12,000	△2,728	9,422	9,422	635	8,787	6.7

자료: 환경부

10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0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이월된 2021년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지자체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자체	보조사업자					비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스마트 하수처리장 (2021년 대상지)	소계	8,787	8,787	8,588	199	97.7	
	강릉시	1,348	1,348	1,345	3	99.8	본공사('22.12~'24.12)
	거창군	1,398	1,398	1,398	0	100.0	본공사('22.8~'24.7)
	광주시	1,606	1,606	1,410	196	87.8	본공사('22.12~'24.12)
	구례군	1,416	1,416	1,416	0	100.0	본공사('22.4~'24.4)
	무주군	1,396	1,396	1,396	0	100.0	본공사('22.6~'24.6)
	의성군	1,623	1,623	1,623	0	100.0	본공사('22.8~'24.5)

자료: 환경부

2022년에는 대규모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이 신규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는데, 환경부는 사업대상지가 다르므로 2021년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계비 및 공사비 147억 5,500만원을 2022년도 단년도 예산으로 모두 편성하였다.

그런데, 대상 지자체 7개 중 대구에서는 실시설계가 7월까지 완료되어 본공사가 10월부터 추진되었으나, 창원시 및 정읍시는 연말인 12월 19일 및 29일에 본공사에 착공하였고,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실시설계가 2022년 12월 및 2023년 상반기까지 추진되어 2022년도에 본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2년도 예산의 실적행률은 24.7%에 불과했으며, 7개 중 5개의 지자체에서는 10% 미만의 저조한 실적행률을 보였다(0% 실적행률 지자체 2곳 존재).

[2022년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환경부			보조사업자				비고
	예산 (A)	집행액 (B)	이월액	교부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소계	14,755	11,121	3,634	11,121	2,745	8,376	24.7	-
구리시	2,029	1,611	418	1,611	212	1,399	10.4	본공사예정('23.9)
남원시	2,037	1,252	785	1,252	0	1,252	0.0	본공사예정('23.7)
대구시	2,229	1,231	998	1,231	1,231	0	100.0	본공사('22.10~'24.1)
부산시	2,059	1,104	955	1,104	85	1,019	4.1	본공사 예정('23.7)
정읍시	2,193	2,193	0	2,193	149	2,043	6.8	본공사('22.12~'24.12)
창원시	2,076	2,031	45	2,031	1,068	963	51.4	본공사('22.12~'24.12)
평택시	2,132	1,700	432	1,700	0	1,700	0.0	본공사예정('23.7)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2년 신규 사업대상지에서 2021년도 사업의 진행결과를 참고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려 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인데,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지가 각기 다름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2022년도 신규대상지에서도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동 사업의 공사기간은 약 2년이 소요되어 2022년도 말에 착공한 대상지는 2024년 말까지,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한 대상지는 2025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는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설계 및 공사까지 약 2-3년이 소요됨에도 단년도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21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따라 동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소요기간 및 공사기간 등 사업의 추진여건 및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2022년 예산을 단년도로 무리하게 편성하여 실집행 부진 및 이월 문제를 연례적으로 유발하였다¹⁰⁴⁾.

2021년 및 2022년 각 대상지의 사업이 대부분 2024년 및 2025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환경부는 사업대상지 13개소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4) 2022년도 총 이월금액은 부처 이월액 36억 3,400만원 및 보조사업자 이월액 83억 7,600만원 등 총 120억 1,000만원이며, 이는 국고사업비 147억 5,500만원 중 8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0-2.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공정률을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관로에 실시간 수량·악취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ICT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도시침수와 악취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국고보조율 70%)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¹⁰⁵⁾. 동 사업은 도시침수대응 5개소 및 하수악취관리 5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2년도에는 공사비 200억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현액 60억원 중 59.2%에 해당하는 3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8,361	24,361	±963	24,361	18,277	75.0	6,085	-	53,823
스마트 하수관로	20,000	6,000	-	6,000	3,550	59.2	2,450	-	41,67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105) 당초 환경부는 2023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월액 및 재이월액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대상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1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10개소 설계비 84억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이·전용금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81억 7,800만원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10개소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모두 0%였다.

사업 2차년도인 2022년도에는 본예산 기준 10개소의 공사비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¹⁰⁶⁾, 환경부는 2차 추경 시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초 편성예산의 70%인 140억을 감액하여 60억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축소된 규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동 금액의 59.1%에 해당하는 35.5억원만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이에 2022년도 당초 편성된 200억원 본예산 기준 환경부 집행률은 17.8%에 불과하였고, 보조금을 축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집행률은 61.2%에 해당하였다.

[2021년 및 2022년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지자체)			
	본예산 (A)	추경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현액	실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2021	8,178	8,178	8,178	100.0	8,178	0	8,178	0.0
2022	20,000	6,000	3,550	17.8	11,728	7,178	4,550	61.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2021년도에 실시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용역 발주 이전 행정절차

106) 당초 정부안에는 652억 6,1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425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200억원만 편성되었다.

이행, 사업부지 선정 지연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지자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2년도에는 35억 5,000만원만 교부하고 25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다는 설명이다.

2022년도 지자체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7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81%에 해당하는 66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 교부액 기준으로는 15.2%에 해당하는 5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집행 결과 이월액은 총 45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34%(15억 4,300만원)는 재이월금액에 해당되며,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 24억 5,000만원까지 고려 시 총 이월액 규모는 70억원에 해당한다.

[2022년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재이월액
2021년도 이월분	8,178	6,635	81.1	(재이월)1,543
2022년도 교부액	3,550	543	15.2	3,007
총계	11,728	7,178	61.2	4,550

주. 재이월액은 광주광역시(204백만원), 군포시(21백만원), 인천광역시(718백만원) 포항시(600백만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리해보면, 환경부는 당초 예산안 편성시부터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국회 심사과정 및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음에도 이월액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집행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도에 공사비 4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자체별 설계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 기간이 대부분 2023년 10월-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2023년도 공사비 예산으로 편성한 416억 7,000만원의 상당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⁷⁾.

107) 2023년도 지자체 실집행금액은 4월말 기준 10개소 모두 0원에 해당한다.

[지자체별 사업 진행경과]

구분	지자체	진행경과	구분	지자체	진행경과
도시침수	광주광역시	설계중 ('22.2~'23.12)	악취관리	대구광역시	설계중 ('22.5~'23.10)
	인천광역시	설계중 ('22.5~'23.12)		광주광역시 동구	설계중 ('22.1~'23.08)
	대구광역시	설계중 ('22.6~'23.12)		광주광역시 남구	설계중 ('22.2~'23.10)
	광양시	설계중 ('22.3~'23.08)		군포시	설계중 ('22.3~'23.10)
	포항시	설계중 ('22.4~'23.10)		포항시	설계중 ('22.4~'23.1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당초 동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2021년부터 2023년도로 예정하였으나, 2021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반영하여 2024년도까지 1년간 연장하였는데, 다수의 사업지에서 실시설계 완료가 2023년도 하반기(8월~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공사 착공은 2024년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계	'21년	'22년	'23년	'24년
도시침수 대응 (국고)	1,532 (1,072)	67 (47)	50 (35)	346 (242)	1,069 (748)
	5개소	5개소	(계속)	(계속)	(완료)
하수악취 관리 (국고)	1,105 (774)	51 (35)	36 (25)	250 (175)	768 (539)
	5개소	5개소	(계속)	(계속)	(완료)

자료: 환경부

10-3.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및 사업비 절감액 미편성 필요

가. 현 황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최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이력 관리, 자산상태 데이터화 등 자산 목록 DB화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국고보조율 70%)으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현액 36억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8,361	24,361	±963	24,361	18,277	75.0	6,085	-	53,823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3,606	3,606	±963	3,606	3,606	100.0	-	-	8,10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1차 5개소(2022-2023년), 2차 5개소(2023-2024년)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도 사업 첫 해에는 1차 5개소 지자체의 DB 조사 및 개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소요예산 50%)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중소 지자체에서 개별시스템 운영관리 곤란을 이유로 국가시스템 구축을 요구함에 따라 연중에 사업방식을 변경(개별시스템→국가시스템 구축)하였으며, 지자체 보조예산 9억 6,300만원을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1차 사업대상지 5개소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의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지자체보조	2,643	2,643	100.0	2,643	1,323	1,319	50.1
경산시	666	666	100.0	666	0	666	0.0
광양시	500	500	100.0	500	0	500	0.0
대구광역시	492	492	100.0	492	492	0	100.0
양평군	528	528	100.0	528	466	62	88.3
영동군	456	456	100.0	456	365	91	88.0
민간위탁 (한국환경공단)	963	963	100.0	963	630	162	65.4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시범사업을 실시(2020-2021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연중에 사업방식이 변경되고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환경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을 불용 및 미편성하고,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당초 10개 지자체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하여 자산목록 DB화 및 이를 관리하는 개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전액 지자체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국가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에 9억 6,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¹⁰⁸⁾.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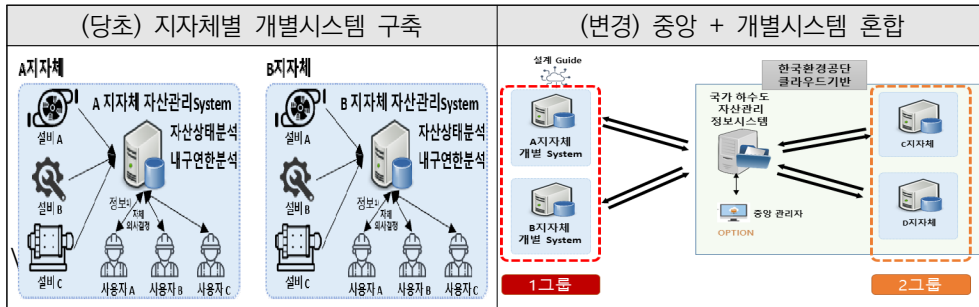
당초예산	변경예산
- 지자체자본보조, 36억 600만원	- 지자체자본보조 26억 4,300만원 - 민간위탁(한국환경공단) 9억 6,300만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8) 대구광역시만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향후 시스템 유지관리 곤란을 이유로 국가시스템 구축을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국가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스템에 활용되는 데이터 표준화, 자산관리체계 확대시 비용 절감 가능, 모니터링에 따라 최적의 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개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방식 변경내역]



자료: 환경부

그런데, 동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였는바, 2022년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미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변경된 계획과 같이 국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적의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면, 당초 지자체 개별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비효과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2022년 동 내역사업 신규 추진 이전에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체계 구축’ 세부사업(1132-308)¹⁰⁹⁾을 통해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연구용역(‘20.9-’21.12)을 실시하였는데, 시범사업 추진 목적이 자산관리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및 지자체 확대 적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이 추진되자마자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는바, 16억원이 소요된 시범사업이 본사업 추진에 앞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109) 환경부는 당초 2020년 예산의 ‘하수처리장 확충’ 세부사업을 통해 지자체 2개소(공주, 김제)를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지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체계구축’ 세부사업(16억원)을 통해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21년 예산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통합하여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세부사업에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은 환경부가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초래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향후 환경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예산 이전용, 국가시스템 구축 변경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절차를 새로 거쳐 연도 말인 2022년 12월에야 국가시스템 구축 용역이 체결되었는데, 환경부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스템 구축 추진용역]

(단위: 백만원, %)

계약명	주요내용	용역기간	계약금액
하수도 자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하수도 자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표준(안) 수립	'22.12.22 ~ '23.10.18.	680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자산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	'22.12.12 ~ '23.6.10.	92

자료: 환경부

또한,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연차별 계획에 근거하여 편성한 지자체 보조예산 중 개별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데, 2023년도 예산에 기존 계획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2023년 개별시스템 예산 중 개별시스템을 구축 중인 대구광역시 예산을 제외한 13억 2,600만원(2023년 개별시스템 구축예산으로 반영된 16억 6,300만원 중 대구광역시 해당분 제외)은 불용처리하는 한편, 2024년도 개별시스템 구축예산 소요로 산출한 16억 8,400만원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당초 계획상 지자체별 개별시스템 구축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시도	시군	2023년				2024년		
		합계	국가 시스템	DB조사	개별 시스템	합계	DB조사	개별 시스템
소계		8,103	937	5,503	1,663	2,620	936	1,684
경북	경산	924	-	643	281	-	-	-
충북	영동	631	-	272	359	-	-	-
대구광역시		750	-	413	337	-	-	-
경기	양평	662	-	319	343	-	-	-
전남	광양	692	-	349	343	-	-	-
충남	청양	753	159	594	-	443	78	365
경남	양산	1,327	279	1,048	-	782	537	245
경기	남양주	842	177	665	-	498	151	347
경북	의성	771	163	608	-	455	93	362
경남	합천	751	159	592	-	442	77	365

자료: 환경부

가. 현 황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¹¹¹⁾은 홍수 등 자연 재난시 신속한 예보를 위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 및 예보시스템 등 확충을 위한 것으로, 수문조사시설 설치,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수자원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 등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692억 5,300만원 중 614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69,807	69,807	2,446	△3,000	69,253	61,423	88.7	6,397	1,434	72,326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47,307	47,307	2,446	-	49,753	43,619	87.7	4,841	1,294	42,243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구축	18,300	18,300	-	△3,000	15,300	13,604	88.9	1,556	140	16,946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	4,200	4,200	-	-	4,200	4,200	100.0	-	-	13,13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11-1.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미집행 인건비 예산 반납 필요

가. 현 황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사업은 수자원위성 발사¹¹³⁾를 대비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한 홍수·가뭄 등 수재해 감시에 필요한 지상운영 인프라 및 활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부터 2028년까지 총 6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479억원이다.

2022년도에는 수자원위성 활용최적화 검·보정 기술개발 17억원, 수자원위성 활용 기술 개발 15억원, 수자원위성 지상국 구축사업 7억원, 사업관리비 3억원 등 총 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행비로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69,807	69,807	2,446	△3,000	69,253	61,423	88.7	6,397	1,434	72,326
수자원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	4,200	4,200	-	-	4,200	4,200	100.0	-	-	13,13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13) 위성개발 사업은 ①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사업(세부사업 2038-339), ②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세부사업 2038-338)을 통해서 수행된다.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사업은 2025년 위성 발사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은 2027년 위성 발사를 목표로 2021년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구분	수자원영상위성(극궤도)	수자원통신위성(정지궤도)
사업기간	2022-2025(5년)	2021-2027(7년)
소요예산	1,427.4억원	4,118.2억원
참여부처	과기부, 환경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경
사업목표	수자원/수재해 감시를 위한 한국형 수재해 위성기술 개발	재난 안전통신, 댐 하천 수자원 정보 수집, 정밀항법보정

자료: 환경부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 사업
- (기 간) 2022. ~ 2028. (6년) / (소요예산) 479억원 ('23년 131억원, 전액국고)
- (수행기관) 환경부(주관), K-water(대행)
- (사업내용) 수자원/수재해위성(영상, 통신)을 활용하여 홍수·가뭄 등 수재해 감시에 필요한 지상운영 인프라 및 활용체계 구축
 - 수자원위성 데이터 최적활용 검·보정 기술개발 및 시설 구축
 - 수자원위성 활용 산출물 분석 기술 개발
 - 수자원위성(영상, 통신)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험
 -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센터 구축

□ 연차별 소요예산

사업 내역	'22	'23	'24	'25	'26	'27	소계
·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체계 구축사업	4,200	13,137	10,887	11,147	5,927	2,652	47,900
- 수자원위성 활용 최적화 검·보정 시설구축	1,700	1,800	1,600	1,300	1,200	-	7,600
- 수자원위성 활용 기술개발	1,500	1,423	1,300	1,200	1,027	-	6,450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77	-	-	-	-	177
- 수자원위성(영상, 통신)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및 시험 운영	-	-	2,500	3,500	3,300	2,352	11,652
-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센터 구축	700	9,337	5,037	4,747	-	-	19,821
- 사업관리	300	400	400	400	400	300	2,20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의 부처 집행률은 100%이나,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집행률은 3.5%에 불과하므로, 2025년 위성발사에 대비하여 지상운영체계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을 통해 수행된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현액 42억원 전액을 수자원공사에 교부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대행사업비 42억원 중 사업관리비 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다. 이에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3.5%에 불과하였다.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체계 구축사업 공사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수자원위성 활용 최적화 검·보정 시설구축	1,700	0	1,700	-	0.0
수자원위성 활용 기술개발	1,500	0	1,500	-	0.0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센터 구축	700	0	700	-	0.0
사업관리비	300	146	154	-	48.6
총계	4,200	146	4,054	-	3.5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대행계약 체결이 6월 29일에 이루어졌고, 수자원공사의 기술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전 내부 검토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용역 발주 공고가 2022년 12월말에 이루어졌다. 이후 용역 계약 검토 과정을 거쳐 2023년 3월에 ‘수자원위성 활용 최적화 검보정 시설구축 및 수자원 위성 활용 기술개발 설계용역’이 체결되었고, 2023년 4월에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체결됨에 따라 2022년 실집행금액이 0원에 해당되었다.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체계 구축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계획	2022년 예산	2022년 집행액	용역 체결시점
수자원위성 활용 최적화 감보정 시설 설계	22. 6 - 10.	1,700	0	23. 3. ~
- 수자원위성 활용산출물 품질향상 기술 설계	22. 8 - 12	600	0	
- 수자원위성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기기도입	22. 8 - 12	1,100	0	
수자원위성 활용 산출물 분석 기술 설계 및 시범개발	22. 6 - 12	1,500	0	23. 3 ~
- 수자원위성 활용 산출물 구조 및 AI 알고리즘 설계	22. 6 - 10.	600	0	
- 수자원위성 활용 기초산출물 산정 알고리즘 시범 구축	22. 6 - 12	900	0	
수자원위성 지상국 기본 및 실시설계	22. 7. - 12	700	0	23. 4. ~

주. 당초 계획은 수자원공사의 착수보고서 공정계획표 일정에 따른 것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동 사업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환경부에서 대행계약을 지연 체결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환경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자원위성 활용 관련 토론회 및 부지 확보 관련 부처 간 협의(2월), 사업범위 검토 및 대행계약 사전 검토(3월), 관계 부처 및 기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및 TF 구성(5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느라 대행계약 체결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체계 구축사업 추진경과]

- ☐ '22. 2월 : 수자원위성 활용 관련 토론회, 지상운영센터 부지 확보 관련 부처 협의
- ☐ '22. 3월 : 사업범위 및 대행계약 사전 검토
- ☐ '22. 5월 : 지상운영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TF 구성
- ☐ '22. 6월 : 위성 자료 품질확보, 활용산출물 구축, 운영시스템 개발 및 지상국 구축 등에 대한 세부 검토
- ☐ '22. 6월 말: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체계 구축사업' 대행계약 체결·착수
- ☐ '22. 7월~12월: 각 세부과제별 용역계약 발주 이전 내부 검토
- ☐ '23. 3월 및 4월: 각 세부과제별 설계용역 착수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동 사업은 다년간(1차완료 4년, 2차완료 6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첫 해의 실집행 부진은 다음연도 사업비 집행에 영향을 미쳐 연례적인 실집행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2023년도에 2차년도 사업비 131억 3,700만원을 모두 편성하였는데, 2022년 사업 지연에 따라 2023년 예산 집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동 지상 운영체계 구축사업이 2025년 하반기 수자원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일정임을 고려하여, 첫 해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점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2022년도 대행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인건비 1억 1,600만원을 2023년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국가업무대행사업 관리지침」 별표2 ‘대행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용역비 기준으로 사업관리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자원위성 지상 운영체계 구축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2	'23	'24	'25	'26	'27	소계
·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체계 구축	4,200	13,137	10,837	11,147	5,927	2,652	47,900
- 사업비(외주용역비)(a)	3,900	12,737	10,434	10,747	5,527	2,352	45,697
- 사업관리비(b)	300	400	400	400	400	300	2,200
- 효율(b/a)	7.69	3.14	3.83	3.72	7.24	12.76	4.81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도에는 외주용역비 39억원 기준으로 7.69%에 해당하는 3억원이 사업관리비로 편성되었는데, 3억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행 지원 특수직 3명의 12개월 근무를 전제한 인건비 1억 7,000만원, 전문가 자문 및 기술협력 등(재료비, 여비, 회의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 사업관리비 편성 및 집행내역]

구분	2022년 예산	집행내역	이월금액
인건비	1억 7,000만원 = 3명*12개월	5,400만원 =3명*4개월	1억 1,600만원
전문가 자문 및 기술협력 등	1억 3,000만원	9,200만원 -재료비 6,700만원 -회의비 600만원 -여비 900만원 -기타 1,000만원	3,800만원
총계	3억원	1억 4,600만원	1억 5,400만원

자료: 수자원공사 착수보고서 및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2년 대행계약 용역이 6월 말에 체결되었고, 특수직 3명의 채용절차가 8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특수진 3인에 대한 인건비는 총 4개월(9월-12월)에 해당하는 5,400만원만 집행되었고 1억 1,6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되었다.

한편, 2023년도 사업관리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억 5,000만원, 전문가 자문 및 기술협력 1억 5,000만원 등으로 총 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회계연도 수자원공사 사업관리비 편성내역]

구분	2023년 예산
인건비	2억 5,000만원 = 5명*12개월
전문가 자문 및 기술협력 등	1억 5,000만원
총계	4억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자원공사는 2023년도에 특수직 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2022년도 채용인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2023년도 사업관리비에 별도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2022년도에 채용된 인원은 2023년도 사업관리비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2022년도 사업관리비 중 집행되지 못한 인건비 잔액의

이월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환경부는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에¹¹⁴⁾¹¹⁵⁾ 따라 2022년도 채용 지연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잔여 금액을 2023년도 대행계약 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처리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는 2023년 2명의 신규채용을 전제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6월 기준 2명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도에도 인건비 미집행 금액이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고려하여 사업관리비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

114)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0조 (대행사업관리비의 사용)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관리비를 해당 대행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15)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은 국토교통부고시이나, 환경부는 별도의 대행사업 관리 지침이 없어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대행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11-2. 자산취득비 필요소요 예측 미 실시 및 과도한 규모 전용 집행 주의

가. 현 황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의 2022년도 편성 자산취득비(430-01목)는 1억 1,500만원에 해당되었으나, 환경부는 2022년 1월 24일 편성금액의 4배에 해당되는 금액인 5억 2,0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도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6억 3,500만원 중 6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산취득비 (430-01)	115	115	520	635	632	99.5	-	3	2,13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자산취득비는 정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님에 따라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예측된 소요가 있음에도 예산을 미편성하고 연도 초부터 과도한 규모를 자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환경부는 향후 자산취득비 소요 예측을 면밀히 수행하고, 전용을 통한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당초 노후차량교체 2대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2022년 1월 24일 편성금액의 4.5배인 5억 2,000만원을 공사비(420-03)에서 자체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전용된 금액 5억 2,000만원은 ① 정부조직법 개편('20.12.)에 따라 편입된 유역환경청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내 망보안 강화를 위해 1억 8,200만원,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에 따른 차량 구매(2대, 1억 2,400만원), 냉장고·텔레비전·컴퓨터 등 사무

기기 구입(1억 3,400만원) 등으로 총 2억 5,800만원, ③ 감악산강우레이더 신설에 따른 산간고지 안전차량 1대 구매 6,000만원, ④ 홍수대책상황실 근무환경 개선 1,700만원으로 집행되었다.

[자산취득비 자체전용금액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사유	집행품목	집행액	집행일자
하천국 조직 이관에 따른 홍수대응영상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장치 보완	랜접속카드	2	12. 26.
	네트워크스위치	44	12. 27.
	트랜잭션보안 및 망연계솔루션	99	12. 27.
	영상회의코덱 라이선스	9.9	7. 19.
	홍수대책 상황실 관제용 PC	9	12. 23.
	레이저프린터	0.55	8. 23.
	트랜잭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17.9	3. 22
	소계	182	
섬진강홍수통제 출장소 개소에 따른 상황실 구축	상황실 등 구축을 위한 비품	133.8	3~4월
	공용차량 구매(2대)	124.1	12. 1.
	소계	258	
한강홍수통제소 기존차량 대체구매	공용차량 구매(1대) ¹⁾	60	11. 22.
상황실 근무환경 개선	청소기	1.4	10. 4.
	텔레비전	2.2	3. 18.
	패널시스템용칸막이	6.2	3. 29.
	칸막이	7.5	8. 29.
	소계	17.3	
총계		517.3	

주: 1) 환경부는 감악산강우레이더 신설('22.10.)에 따라 산간고지 안전차량 구매가 필요하여 기존차량을 대체(쏘렌토→GV60)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환경부

동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환경부는 예측 가능한 업무 이관 및 조직 개편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수자원 보전 및 이용 개발 업무를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2020년 12월 31에 개정¹¹⁶⁾되었고,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바,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편성 시(2021년도 수행) 업무 이관 및 조직 편입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측하고 추가 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예측된 소요임에도 추가 자산취득비 필요금액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연도 초부터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부는 전용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다 전용하여 제시한 조직 개편 사유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소요로 집행한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1월 전용 추진시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홍수대응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유로 5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다. 그런데, 해당 소요로 집행된 예산은 1억 8,200만원에 불과하였고, 3억 3,800만원은 전용시 제시하지 않았던 다른 소요로 집행하였다.

이 중 2억 5,800만원은 2022년 직제 개정으로 신설된 홍수통제출장소 개소(‘22.3.)에 따른 상황실 구축을 위한 비품, 차량 구매 등으로 집행하였는데, 환경부는 홍수통제출장소 개소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는바 전용금액 중 일부를 통해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¹¹⁷⁾

그런데, 이러한 직제 개정 사유가 아닌 다른 소요로도 자산취득비를 추가 집행하였는데, 환경부는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한강홍수통제소 차량 대체 6,000만원, 영산강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상황실 환경 개선 1,730만원 등으로 총 7,730만원을 집행하였다.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님에 따라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환경부는 당초 1월 전용규모 산정시 면밀한 검토 없이 전용액을 과다 산정하였고, 이에 전용 필요성으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잔여예산을 집행한 문

116)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117) 환경부는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와 관련하여서는 2022년 예산 편성시(부처안 확정: '21. 5.) 직제 개정이 확정(2021년 9월 정월 반영, 2022년 2월 직제 개정)되지 않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다.

제가 있다.

[당초 전용사유 외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사유	집행품목	집행액	집행일자
한강홍수통제소 기존차량 대체구매	공용차량 구매(1대)	60	11. 22.
상황실 근무환경 개선	청소기	1.4	10. 4.
	텔레비전	2.2	3. 18.
	패널시스템용칸막이	6.2	3. 29.
	칸막이	7.5	8. 29.
	소계	17.3	-
소계		77.3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전용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천국 조직 이관(‘22.1~)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1,800만원 및 영상회의코덱 라이선스 비용 990만원 등은 7월 및 8월 중에 지출하였으나, 기타 망연계슬루션 및 네트워크스위치 등에 소요되는 1억 5,400만원(전체 집행금액 182백만원의 85%해당)은 12월 26일~27일에 지출하였고,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상황실 구축(‘22.3. 개소)을 위한 사무기기 등 비품은 3월-4월에 집행하였으나, 2대의 공용차량 구매는 12월 초에 집행¹¹⁸⁾하는 등 전용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12월에 집행하였다.

이 또한 전용 시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향후 환경부는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고, 대규모 전용을 통한 자산취득비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18) 환경부는 차량구매를 5~6월에 추진하였으나, 납품이 지연되어 12월에 차량 구입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면밀한 계획 없는 사업 추진으로 집행 부진 및 사업 관리 미흡

가. 현 황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¹²⁰⁾은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통한 수질 개선, 수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흐름 회복 등을 위하여 용도 상실 후 방치된 횡단구조를 개선·철거하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40억원을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하천 수생태계 진단체계 구축	7,500	7,500	553	8,053	7,186	89.2	303	564	6,000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4,000	4,000	-	4,000	4,000	100.0	-	-	2,5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초 2021년-2024년 총 4년간 각 80억을 투입하여 총 320억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집행 부진 등을 고려하여 2021년 80억원, 2022년 40억원, 2023년 25억원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20)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3-326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법정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데, 2개년도 연속 업무대행기간이 차년도 하반기까지 연장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실적행률이 2021년도 28%, 2022년도 45%로 매년 부진한 문제가 있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부는 2020년부터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공모하고 현지실사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 29개소를 선정(20.12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대상 지자체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지연되었고, 2021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첫 해부터 사업이 지연되었다.

2021년도 예산은 80억원으로, 29개소의 설계비 및 공사비가 단년도로 모두 편성되었는데, 설계용역 선금 및 5개소 공사 착공비용으로 22억 5,9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28.3%에 불과하였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9개소 공통으로 추진(용역기간: '21년 7월~'22년 12월)되었는데, 2021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된 대상지 9곳¹²¹⁾은 2021년 12월에 공사에 우선적으로 착공하였다.

[2021년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21 예산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8,000	2,259 (설계비 1,299, 공사비 932, 운영비 28)	4,714	1,027	28.3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설계 착수가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상반기(22.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려 하였으나, 생태친화적 설계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추가 실시, 이해관계자간 쟁점사항 발생으로 합의 도출이 장기화되면서 설계가 2022년 하반기에 완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당초 2021년 사업을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할 예

121) 한강 탄천 백궁보(22년 5월 준공), 백현보(22년 12월 준공), 낙동강 상안천 달천4보·달천보(22년 9월 준공), 금강 미호천 삼성3보·삼성5보·삼성6보(22년 10월 준공), 영산강 증심사천 성춘보·동산보(22년 6월 준공)

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및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1년 10개월간 2021년도 사업을 수행하였다.

2022년도로 이월된 금액 47억 1,400만원은 5개소(상안천 2개소, 미호천 3개소) 준공금 및 4개소(탄천 2개소, 증심사천 2개소) 착공금 등으로 최종 38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2021년 이월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1년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기간
2022	4,714	3,811 (설계비 준공금 310, 공사비 3,501)	903	(당초) 21.2 - 21.12. (변경) ~ 22.12

자료: 환경부

2022년도에는 사업 부진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 감액된 40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환경부는 감액된 예산 규모 및 2021년도 대상사업지의 공사소요비 등을 감안하여 신규대상지를 7개소 선정(22.3월)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22.8월)하였다.

2022년 예산은 40억원 중 18억 400만원이 실집행되었는데, 2022년도 신규대상지 7개소 설계비 선금 6억원, 2021년도 4개소 준공금 및 1개소(갑천 대덕보) 추가 착공금으로 1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억 3,4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되었다. 2022년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7개소 공통으로 추진(설계용역기간: 22.8-23.8)중이다.

[2022년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2 예산	실집행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4,000	1,804 (22년 대상지 설계비 607, 21년 대상지 공사비 1,160, 운영비 37)	2,034	162	45.0

자료: 환경부

한편, 2022년도 한국환경공단 업무대행기간은 당초 2022년 3월부터 12월 까

지였으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설계 지연 등에 따라 2023년 9월 말까지 9개월 연장되었다.

[2022년도 사업기간 변경 현황]

연도	당초 사업기간	변경 사업기간	비고
2022	22. 3 - 12.	22. 3 - 23. 9.	9개월 연장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이 시범사업임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집행이 지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시범사업 첫 해부터 두 해 연속 사업기간이 두 회계연도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는데도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동 사업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공사 규모 등이 불확실함에도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1차년도 사업대상지를 과다하게 선정하였고, 당초 예측 대비 공사비가 과다소요되어 단년도 편성내역과 다르게 연부를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책정된 예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예산 편성 시 횡단구조물 1개소당 3.2억원의 설계비 및 공사비를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1년도에는 25개소를 예정하여 8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12개소를 예정하여 40억원을 편성하였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부서 예산 편성내역	비고
2021	8,000	횡단구조물 25개소 * 3.2억원	29개소 선정
2022	4,000	횡단구조물 12개소 * 3.2억원	7개소 선정
2023	2,500	횡단구조물 8개소 * 3.125억원	3개소 선정

자료: 환경부

그런데, 환경부는 2021년 신규대상지를 29개소 선정하여 예산 편성 물량보다 대상지를 많이 선정하였고, 개소당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을 통해서 2021년도 대상지의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다.

[2021년 대상 사업지 29개소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대상	예산 집행내역	집행금액
2021년 도 29개소	(2021예산) - 당해연도 집행: 29개소 설계비 선금 및 5개소 공사비 선금	2,259
	- 이월금액 집행: 설계비 준공금, 5개소 공사비 준공금, 4개소 공사비 선금 및 준공금	3,811
	(2022예산) - 당해연도 집행: 1개소 공사 선금	1,160
	- 이월금액 : 1개소 공사 준공금	(미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2021년도 예산 80억원 중 60억 7천만원을 29개소의 설계비 및 9개소의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 11억 6천만원을 2021년 대상지 1개소의 공사비로 집행하였다. 또한, 2022년도의 이월금액 20억 3,400만원에서 2021년 대상지 1개소의 공사비 준공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2022년도 편성예산은 설계비 7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도에 선정된 대상지의 공사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도 예산 집행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규 대상지	당해연도 예산 (실집행금액)	예산 실집행내역	
2022	7개소	4,000 (1,804)	1개소('21대상지) 착공금	1,160
			7개소('22신규) 설계비	607
			(이월예산) 1개소('21 대상지) 준공금 및 7개소 설계비 준공금	2,034
			집행예정	(예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3년 4월말 기준 2021년 사업대상지 중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잔여대상지는 18개소(1개소는 2023년도 예산으로 집행예정)에 달하고, 2022년 사업대상지 5개소(2개소는 2023년도 예산으로 집행 예정¹²²⁾) 또한 2023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비가 미반영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각 연도별 대상지 설계 및 공사 진행내역]

연도	대상지	2022.말	2023. 4월말 기준	2023 예정
2021	29개소	- 29개소 실시설계 완료 - 9개소 준공 - 1개소 공사 착공	- 1개소 공사 중 (19개소 잔여)	- 1개소 공사 (18개소 잔여)
2022	7개소	- 7개소 실시설계(22.8-23.5.)	- 실시설계 진행중	- 2개소 공사 (5개소 잔여)
2023	3개소		- 3개소 선정	- 실시설계 예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동 사업이 시범사업임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인데, 총사업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사업 첫 해에 29개소(당초 계획 2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예상 대비 설계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신규대상지를 각각 7개소 및 3개소 추가 선정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에도 공사비 내역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 추진 및 관리를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¹²³⁾,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점차 증대해나가는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2) [2023년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예산 집행계획]

구분	신규대상지	예산액	예산 집행계획
2023	3개소	2,500	1개소('21대상지) 공사비 552
			2개소('22대상지) 공사비 1,500
			3개소('23신규) 설계비 58
			기타(토지보상비 등) 390

자료: 환경부

123) 현재 지자체 대상 하천에 대해 국비 10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비 매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인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재조사 절차에 따른 예산 전액 미집행 및 사업 장기 지연 문제

가. 현 황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¹²⁵⁾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현안에 대응하는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증화 및 사업화까지 연계·융합할 수 있는 청정대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022년도 예산은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등으로 14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경북·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집중호우·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전액 이용되어 집행실적이 전무하였다.

[2022회계연도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200	14,200	△14,200	-	0	0.0	-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고, 환경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3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개별 기업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시설, 산업·수송 등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 저감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시설 및 진흥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25)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3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산업 관련 연구개발·실증화, 진흥 및 생산시설 등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	- 49,327 (국비 100%) ¹⁾
사업기간	- 2020 ~ 2023년(당초: 2020 ~ 2022년)
사업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
사업규모	- 건축물 3개동, 부지면적 29천㎡, 연면적 13천㎡
주요시설	- 실증화시설(산업·수송분야), 입주기업지원 등 진흥시설

주: 1) 환경부는 당초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45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감액분 등을 고려하여 4차에 걸쳐 총사업비를 493억원으로 조정하였음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2020년 동 사업 추진시 총사업비를 450억원으로 산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어 타당성재조사 절차를 거침에 따라 사업 지연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를 면밀히 산출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시에 거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를 450억원으로 산출하고,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편성하였다. 이후 2021년 예산에는 건설보상비(부지매입비) 및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정률 20% 반영) 등으로 146억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에는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공정률 40% 반영)로 142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설계가 진행되었는데, 2021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증액 소요(450억→498억)가 발생하였고, 총사업비 재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용역기간이 당초 2021년 8월에서 2022년 6월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2022년 실시설계 초안 결과 물가상승률 및 추가적인 비용 등 고려시 총

사업비 증액 소요(493억 → 635억)가 다시 제기되었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동 사업이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재원협의를 다시 추진하였는데, 2022년 10월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말 현재까지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11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절차별 추진현황]

기간	사업 추진경과
20. 7.	- 사업추진방식 심의
20. 10.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 11.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공모
20. 12.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 당초 21.8.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재원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22. 6.까지 연장
21. 12.	- 부지매입
21. 12.	- 중간설계 검토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 사유 발생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450억→498억)
22. 4.	- 실시설계 정지 * 초안 결과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 대두(493억→635억)
22. 10.	- 총사업비 조정 심의 * 심의결과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정
22. 12.	- KDI 타당성재조사 시행('22.12~'23.11)

이와 같이 동 사업이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2년 공사비·감리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142억원은 전액 미집행되었다. 또한, 타당성재조사가 2023년 11월 말까지 진행 예정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미정인 상태이다¹²⁶⁾

126) 타당성재조사 종료 후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의 환경현안에 대응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목적 달성 또한 지연되고 있다.

향후 환경부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검토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의 장기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0~2022년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집행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2,000	-	-	2,000	1,393	69.7	607	-
	소계	-	2,000	-	-	2,000	1,393	69.7	607	-
202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607	-	607	330	54.4	-	277
	공사비 (420-03)	6,842	6,842	-	△5,200	1,642	0	0.0	-	1,642
	감리비 (420-04)	244	244	-	-	244	0	0.0	-	244
	시설부대비 (420-05)	14	14	-	-	14	0	0.0	-	14
	건설보상비 (410-00)	7,500	7,500	-	-	7,500	7,152	95.4	-	348
	소계	14,600	14,600	607	△5,200	10,007	7,482	74.8	-	2,525
2022	공사비 (420-03)	13,684	13,684	-	△13,684	0	0	0.0	-	-
	감리비 (420-04)	487	487	-	△487	0	0	0.0	-	-
	시설부대비 (420-05)	29	29	-	△29	0	0	0.0	-	-
	소계	14,200	14,200	-	△14,200	0	0	0.0	-	-

자료: 환경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미흡한 사업준비에 따른 집행 부진 및 유사사업 고려 필요

가. 현 황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¹²⁸⁾의 내역사업으로, 정수장에서 처리된 수도물을 말단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20개소(광역 3개소 및 기초 17개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국고보조율 광역 30%, 기초 60%, 자부담률 5%)¹²⁹⁾되었다.

동 사업은 2022년도 단년도로 추진되었으며,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39억 1,0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250,348	250,348	24,986	275,334	274,411	99.7	60	863	31,145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3,910	3,910	-	3,910	3,910	100.0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2022년 단년도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향후 사업 설계 시 필요한 행정절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타사업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추진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28)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1-326

129) 공사비는 세대당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공사비 부담 비율은 광역지자체(국고 30%, 지방비 65%, 자부담 5%), 기초지자체(국고 60%, 지방비 35%, 자부담 5%)로 차이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부처에서 예산액을 모두 교부하여 부처 집행률은 100%로 집계되었으나, 사업수행주체인 20개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평균 38.2%에 불과하였고, 실집행률이 0%인 지자체는 9개에 달하였다.

[2022회계연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부산	1,575	1,025	550	-	65.1
인천	487	227	-	260	46.6
광주	70	0	-	70	0.0
원주	720	1	-	719	0.1
서천	152	13	139	-	8.6
고창	180	0	180	-	0.0
군산	60	33	27	-	55.0
남원	54	0	11	43	0.0
임실	60	0	60	-	0.0
광양	66	66	-	-	100.0
함평	18	0	18	-	0.0
경산	60	2	58	-	3.3
고령	54	0	54	-	0.0
예천	36	0	36	-	0.0
울진	60	0	60	-	0.0
청송	120	0	120	-	0.0
김해	5	5	-	-	100.0
의령	13	6	-	7	46.2
서귀포	60	59	-	1	98.3
제주	60	59	-	1	98.3
총계	3,910	1,495	1,313	1,102	38.2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당초 2개년에 걸쳐 총 8,747세대를 지원(3개 지자체 대상)할 계획이었으나(1차 수요조사 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214세대(20개 지자체 대상)를 단

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2차 수요조사 결과 20개소 지자체에서 12,219세대 신청수요를 제시하였으나, 환경부는 수요조사 대비 67.2%에 해당하는 8,214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집행 결과 목표 지원세대수의 57.6%에 해당하는 4,728세대를 지원하였고, 예산 실행률은 38.2%에 불과하는 등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세대 및 예산 집행내역]

(단위: 세대, 백만원, %)

세대 수			예산		
계획	지원	비율	예산	집행액	집행률
8,214	4,728	57.6	3,910	1,495	38.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지자체의 세대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0세대인 지자체가 5개, 1세대~10세대의 신청이 들어온 지자체가 6개 등 10세대 미만 신청 지자체 수가 총 11개(55% 비중)에 달했는데,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저조했음을 보여준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지자체별 신청세대수 현황]

(단위: 수, %)

구분	신청세대수				
	0세대	1 - 10세대	10 - 100세대	100세대 이상	소계
지자체	5	6	6	3	20
비율	25.0	30.0	30.0	15.0	1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동 사업이 ① 행정절차 지연 및 ② 수요확보 곤란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① 국비 지원 조건인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협의(‘22.4, 행안부), 취약계층 확인을 위한 모든 가족의 소득 수준 확인(건강보험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②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원의 사업추진 동의 확보 곤란¹³⁰⁾, 세입자의 공사 시 불편에 따른 사업 반대, 저소득 사업대상자의 관심 부족과 자가 부담(5%) 등의 사유로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단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므로, 사업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사업 수요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등의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필요한 협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미흡했다.

한편, 환경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 순위를 1순위-3순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는데, 취약계층 기준을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45~60%¹³¹⁾ 구간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3순위를 중위소득 60~100%¹³²⁾로 설정하여 비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대상순위]

사업대상	기준
1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주택
2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3순위 (비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주: 1. 취약계층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세대 우선 지원
 2. 1순위 지원을 원칙으로 함(전국 1순위 소요 미달 시 차순위 지원)
 자료: 환경부

실제 사업 추진결과 1순위 지원 비중(세대 기준)이 67.7%로 가장 높았으나, 2순위 지원비율은 3.0%, 3순위 지원 비율이 29.3%에 해당하였다.

130)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의 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지원 가능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모든 세대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131) 2021년 기준 중위소득(45~60%): 2,194,331원~2,925,774원

132) 2021년 기준 중위소득(60~100%): 2,925,774원~4,876,290원

[지원대상 순위별 지원내역]

(단위: 세대, 백만원, %)

지원대상	지원세대	비율	지원금액	비율
1순위	3,204	67.7	1,015	67.8
2순위	139	3.0	60	4.1
3순위	1,385	29.3	420	28.1
소계	4,728	100.0	1,495	1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동 사업은 사업 편성단계에서도 기존 지자체 수행 사업¹³³⁾과의 유사중복 우려¹³⁴⁾, 자체 사업 추진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¹³⁵⁾, 국토교통부의 수선유지급여 사업(1034-302)의 취약계층 대비 자부담률이 낮아 소득분배 역진성 발생 우려¹³⁶⁾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¹³⁷⁾, 향후 환경부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3)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다수의 지자체는 노후옥내급수관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조례 제정 지자체) 98개 시군, (사업 추진 지자체) 40개 시군

134)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국고사업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당초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고유사업 업무에 국고를 추가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135)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은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우려가 있으며, 그동안 중점사업으로 개선을 추진한 지자체와 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예결위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36) 국토교통부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5%이하에 자부담 0~20%를 부여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5%에 불과하여 소득분배 역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상임위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37) 다만, 환경부는 사업 추진 지자체(40개) 중 본 국고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4곳과 해당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며, 국토부 사업은 사업 범위(주택 개보수 전반 지원)와 지원금액이 다르고, 총 지원 가능한 금액(3~7년 누적 최대 457~1,241만원)이 본 사업보다 2~5배 많아 소득분배 역진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지침 부재 등 사업준비 미흡 및 운영방안 보완 필요

가. 현 황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139)의 내내역사업으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카페,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사용 지원(지자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50%)사업과 다회용기 공공 세척장 설치 지원(지자체자본보조, 국고보조율 70%)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34억 7,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원순환촉진지원	23,567	23,517	261	△6970	16,808	16,778	99.8	-	30	21,096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지원	15,440	15,440	240	△6970	8,710	8,710	100.0	-	-	6,935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5,440	5,440	-	△1,970	3,470	3,470	100.0	-	-	6,79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2022년도에도 사업지침 없이 수행되었고, 지자체 사업 집행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문제가 있다.

동 사업은 2021년도부터 추진되었는데, 2021년에는 다회용기 사용지원(경상)으로 1개 지자체에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사업(자본)으로 4개 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39)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1-303

자체에 42억 6,000만원을 교부하여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22년도에는 다회용기 사용지원 대상을 장례식장, 카페, 배달음식, 영화관, 지역 축제 등으로 확대하여 10개 지자체에 총 1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세척장 설치 지원은 2개 지자체에 2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지원 사업 비중이 전년 대비 상향되었다. 다회용기 사용지원 사업의 실행률은 대부분 100%에 해당되었으나, 공공세척장 건립사업의 경우 지자체 실행률이 제주도(30.3%), 청주시(4.5%)로 저조하였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부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비목	2021 결산	2022 결산
다회용기 사용 지원	경상보조	40	1,240
공공세척장 건립	자본보조	4,260	2,230
소계	-	4,300	3,470

자료: 환경부

[2022회계연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지자체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자체명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다회용기 사용지원 (경상)	서울 영등포구	50	50	50	100.0
	인천시	125	125	125	100.0
	경기도	500	500	500	100.0
	충남도	145	145	145	100.0
	세종시	50	50	50	100.0
	경북 구미시	109	109	109	100.0
	충북 청주시	100	100	100	100.0
	광주 서구	60	60	9	15.0
	광주 광산구	50	50	0	0.0
	전남 여수시	51	51	51	100.0
공공세척장 건립 (자본)	제주도	1,330	1,330	403	30.3
	청주시	900	4,152	185	4.5

자료: 환경부

그런데, 2022년도 다화용기 사용지원(경상보조) 대상이 장례식장, 카페, 배달음식, 영화관, 지역축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지원을 받는 지자체도 1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하였음에도, 환경부에서 별도 사업지침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지원한 문제가 있다.

다화용기 사용지원 사업은 1)다화용기 대여업체 연계형, 2)다화용기 및 세척설비 직접 구입으로 지원되며, 지자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에 따라 사업유형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2년도 다양한 사업유형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등을 규정한 사업지침을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지침이 없어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공공세척장 건립(자본보조) 사업에서는 세척장 설계용역이 착수되기 전에 세척장 건립 이후 사용 가능한 다화용기 회수·공급 차량만 미리 구입된 사례가 있었는데, 환경부는 동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세척장 건립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는데, 용역 착수 이전에 다화용기 회수·공급차량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22.4.) 및 차량 구입(‘22.8.)이 이루어졌다¹⁴⁰⁾. 그런데, 동 사업은 실시설계 중 건축공사비 증액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규모 재산정을 위해 설계가 중지(‘22.11.)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8월말까지 수행 예정). 이와 같이 세척장 건립 이후 사용 가능한 차량만 미리 구입되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환경부가 동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단계별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음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환경부의 사업 집행 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에는 자본보조사업 비중이 높아 별도의 지침 수립 필요성이 낮았고, 2022년에는 다양한 경상보조 사업이 추진되

140) 청주시 공공세척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42억 5,200만원, 지방비 18억 2,200만원 등 총사업비 60억 7,400만원 사업으로, 2022년도에 설계공모보상금 900만원 및 차량 구입비 2억 5,564만원이 지출되었다. 구입한 차량은 다화용기를 세척센터로 회수하는데 쓰이는 회수차량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청주시가 22년 4월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 계약 후 인도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22년 8월에 차량 인도 포기 건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조기구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차량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더라도 설계용역 체결 전에 차량 구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통상 공사기간이 1~2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설계용역 완료 이후 공사착공 이전에 구매계약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 구체적인 지침 제시가 어려웠는바, 2022년도의 수행 결과를 종합해 2023년도 1월 말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 지침」을 수립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개년 동안 약 80억 상당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침 없이 사업을 수행한 것은 환경부의 사업 준비 및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자본보조사업 지원 시에는 공공세척장 건립에 필요한 주요 단계를 나누어 단계별 지침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2022년 경상보조사업 지원 시에는 지원 대상 지자체 및 지원 범위가 다양해졌는바, 각 영역별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을 제시하여 사업 집행 시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인다.

환경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지침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집행결과 다회용기 보급실적 외에 회수율, 반납율 등의 지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회용기의 회수율, 반납율 등의 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회용기 지원 사업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것으로, 일회용기 사용매장에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인바,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회용품 보급 실적뿐만 아니라, 보급된 다회용기의 회수율, 반납율 등의 지표가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22년 사업 수행결과 카페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을 수행한 3개 지자체에서만 다회용기 이용률, 반납률, 회수율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납품량 대비 회수율이 58%~96.8%로 차이가 있었다.

[2022년도 카페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 납품량 대비 회수량 현황]

(단위: 수, %)

지역	사업장	납품량	회수량	회수율	분실률
서울 영등포	○○○구청	180,578	157,204	87.1	12.9
	○○○공단	1,200	724	60.3	39.7
	○○홈쇼핑	4,500	2,641	58.7	41.3
인천	카페 31곳	70,985	59,675	84.0	16.0
구미	카페 50곳	10,418	10,086	96.8	3.2

자료: 지자체 결과보고서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외 7개 지자체에서는 예산 집행결과만 보고하고 있어 다회용기 납품량 대비 회수율 등은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환경부는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납품량 대비 회수율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카페,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 축제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확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소별 다회용기 회수율 지표를 관리해 다회용기 이용의 지속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히, 축제 등 일회성 행사에서 다회용기 회수율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동 사업을 지원하면서 사업유형별로 이용율, 회수율 등을 파악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10억 6,100만원으로, 6,858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8.5%인 5,383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1,456억 6,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8억 3,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1,061	131,061	131,061	644,753	501,529	141,392	1,832	77.8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0	0	0	782	243	539	0	31.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0,000	10,000	10,000	40,324	36,588	3,736	0	90.7
합계	141,061	141,061	141,061	685,859	538,360	145,666	1,832	78.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조 5,945억 1,400만원이며, 이 중 84.8%인 8조 9,88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1조 6,031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070,898	10,207,958	10,247,824	8,645,624	2,602	1,599,092	84.4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90,955	90,955	90,955	90,916	0	39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55,772	255,735	255,735	251,700	0	4,035	98.4
합계	8,417,625	10,554,648	10,594,514	8,988,240	2,602	1,603,166	84.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4조 1,237억 8,400만원이며, 44조 9,633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4%인 37조 9,997억 1,900만원을 수납하고 6조 5,912억 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724억 7,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27,048	227,048	227,048	228,290	208,617	19,121	80,670	91.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81,407	181,500	181,500	15,587	13,981	1,479	12,538	89.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87,457	187,587	187,587	1,955	1,925	29,352	624	98.5
임금채권보장기금	964,628	964,628	964,628	4,010	775,395	3,077	157,141	19.3
근로복지진흥기금	433,426	433,426	433,426	580,664	481,440	92,693	6,532	82.9
합계	441,819	441,784	441,784	44,963	37,997	6,591	3,740	89.4

자료: 고용노동부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44조 1,237억 8,400만원이며, 이 중 86.1%인 37조 9,997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3,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조 564억 4,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2,704,851	22,704,851	22,705,000	20,836,178	214	1,449,157	91.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8,140,713	18,145,003	18,145,007	13,981,011	16	478,890	7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874,576	1,875,876	1,875,876	1,925,696	0	4,078	102.7
임금채권보장기금	964,628	964,628	964,628	775,395	8	103,929	80.4
근로복지진흥기금	433,426	433,426	433,426	481,440	2,296	20,391	111.1
합계	44,118,194	44,123,784	44,123,937	37,999,719	2,534	2,056,446	86.1

자료: 고용노동부

다. 총수입 · 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627억 9,100만원 (1.7%)이 증가한 27조 2,38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5,806억 1,600만원(6.2%)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56,246	141,061	141,061	538,360	397,299	182,114
기금	25,301,847	26,634,857	26,634,857	26,700,349	65,492	1,398,502
합계	25,658,093	26,775,918	26,775,918	27,238,709	462,791	1,580,61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 6,099억 7,500만원 (9.2%)이 감소한 35조 3,14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조 6,198억 3,500만원(9.3%)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365,507	7,099,325	9,236,348	7,669,940	△1,566,408	△695,567
기금	30,568,341	29,472,696	29,687,640	27,644,073	△2,043,567	△2,924,268
합계	38,933,848	36,572,021	38,923,988	35,314,013	△3,609,975	△3,619,83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자산은 41조 2,451억 4,600만원, 부채는 41조 7,127억 8,300만원으로 순자산은 △4,676억 3,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8조 8,901억 400만원, 투자자산 29조 121억 2,300만원, 일반 유형자산 3조 2,486억 3,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816억 7,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348억 7,100만원(2.4%) 감소하였다. 이는 단기투자증권 및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감소로 인한 유동자산 5,547억 7,600만원 감소, 단기대여금 감소에 따른 투자자산 3,019억 2,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922억 7,000만원, 장기차입부채 10조 3,133억 600만원, 장기충당부채 325조 8,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 2,746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2,352억 1,700만원(5.1%)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감소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3조 1,910억 7,1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1,245,146	42,280,018	△1,034,871	△2.4
Ⅰ. 유동자산	8,890,104	9,444,880	△554,776	△5.9
Ⅱ. 투자자산	29,012,123	29,314,046	△301,922	△1.0
Ⅲ. 일반유형자산	3,248,635	3,426,302	△177,667	△5.2
Ⅳ. 무형자산	12,613	11,812	801	6.8
Ⅴ. 기타비유동자산	81,672	82,978	△1,307	△1.6
부 채	41,712,783	43,948,001	△2,235,217	△5.1
Ⅰ. 유동부채	92,270	86,114	6,156	7.1
Ⅱ. 장기차입부채	10,313,306	9,369,029	944,277	10.1
Ⅲ. 장기충당부채	32,583	27,163	5,420	20.0
Ⅳ. 기타비유동부채	31,274,624	34,465,695	△3,191,071	△9.3
순 자 산	△467,637	△1,667,983	1,200,346	72.0
Ⅰ. 기본순자산	1,643,105	1,643,105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4,385,703	△8,385,884	4,000,181	47.7
Ⅲ. 순자산 조정	2,274,961	5,074,796	△2,799,835	△55.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조 6,098억 6,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4조 2,650억 4,0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3,054억 9,900만원, 비배분비용 5,310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조 5,303억 7,1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937억 8,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5조 8,675억 3,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조 4,887억 9,500만원(17.6%) 감소한 30조 4,774억원이며, 이는 고용창출, 고용안전망확충 등 주요 프로그램에서의 순원가 감소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7조 8,451억 6,4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고용안전망확충(13조 5,244억 4,400만원), 산재보험(7조 2,481억 7,600만원), 고용평등촉진(3조 818억

5,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866억 6,600만원, 경비 8,189억 4,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804억 800만원과 이자비용 1,728억 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9,734,668	37,579,832	△7,845,164	△20.9
가. 프로그램 총원가	34,265,040	38,041,117	△3,776,077	△9.9
나. 프로그램 수익	4,530,371	461,285	4,069,086	882.1
II. 관리운영비	1,305,499	1,250,514	54,985	4.4
III. 비배분비용	531,021	597,667	△66,646	△11.2
IV. 비배분수익	1,093,788	2,461,818	△1,368,030	△55.6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0,477,400	36,966,195	△6,488,795	△17.6
VI. 비교환수익 등	25,867,536	22,754,096	3,113,440	13.7
VII. 재정운영결과(V-VI)	4,609,865	14,212,099	△9,602,234	△67.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6,679억 8,3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4,676억 3,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2,003억 4,600만원(71.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4조 6,098억 6,500만원 증가하였지만,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8조 6,100억 4,6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8조 9,882억 4,000만원과 그 외 제재금수입, 기타비교환수익, 기타재원조달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조 6,776억 4,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667,983	2,957,006	△4,624,989	△156.4
II. 재정운영결과	4,609,865	14,212,099	△9,602,234	△67.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610,046	9,254,441	△644,395	△7.0
IV. 조정항목	△2,799,835	332,669	△3,132,504	△941.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67,637	△1,667,983	1,200,346	72.0

자료: 고용노동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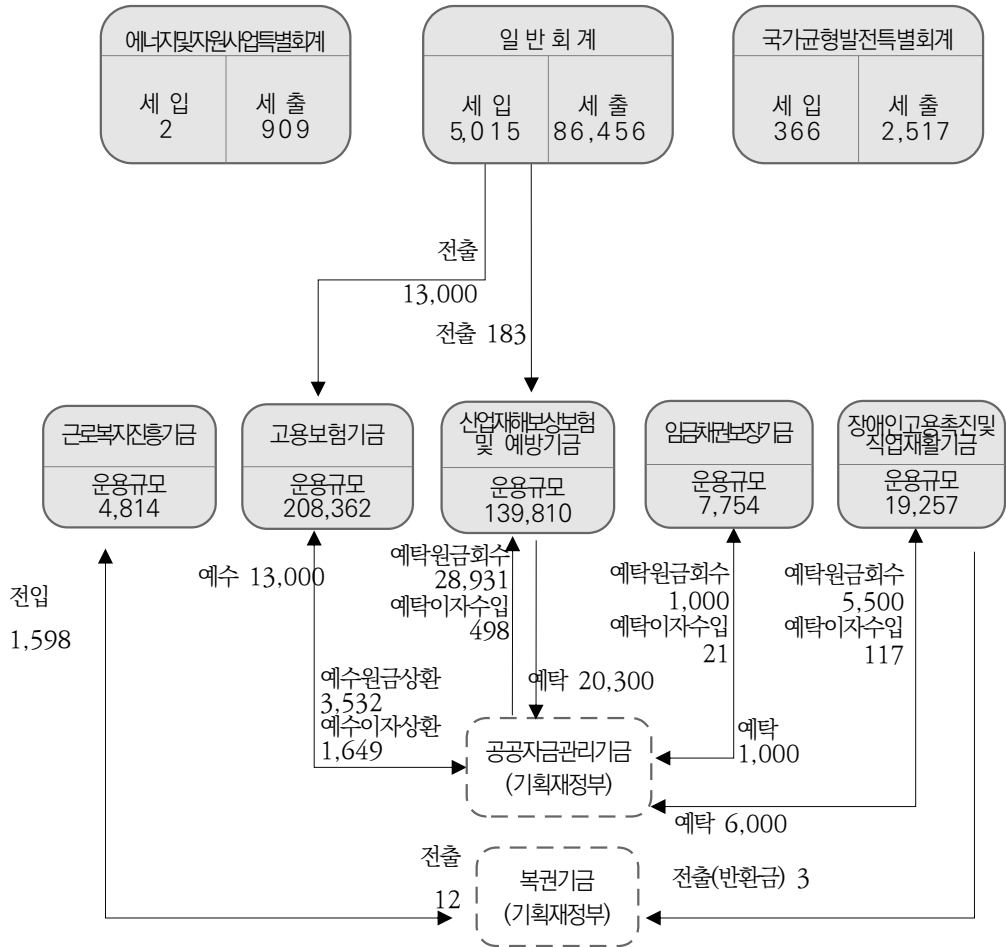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1조 3,000억원이 전출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183억원이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조 3,000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3,532억원과 예수이자 1,649억원을 상환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2조 8,931억원, 예탁이자수입으로 498억원을 받았으며, 공자기금에 2조 300억원을 예탁하였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1,000억원, 예탁이자수입 21억원을 받고, 공자기금에 1,000억원을 예탁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5,500억원, 예탁이자수입 117억원을 받고 6,000억원을 예탁하였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598억원을 전입받았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③ 고용창출장려금 등이 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내역사업인 평생크레딧 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물량이 7만명에서 5.5만명으로 조정되는 등 125억원이 감액(4,387억원→4,262억원)되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내역사업인 일경험프로그램에서 물량이 조정되면서 176억원이 감액(1조 5,141억원→1조 4,964억원)되었다. 그리고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물량이 1천명 줄어들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물량이 3천명 감소하면서 191억원이 감액(7,059억원→6,866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②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위하여 58억원이 증액되고, 패트롤가 임차료 2억 8,000만원이 감액되면서 총 55억원이 증액(858억원→913억원)되었고,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86억원이 증액(707억원→793억원)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②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이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업체 소속 기사 지원을 위하여 2,2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경우 특고 · 프리랜서에 대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조 5,1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는 ①고용회복·고용안전망 확충 집중 지원, ②디지털·저탄소 등 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중심 디지털 인력양성, 이·전직자 중심 노동전환 지원 등 투자 확대, ③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를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등 주요 내역사업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훈련과정 선정 및 개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계획인원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I유형 및 II유형의 사업들은 2021년 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미달하는 등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목표 인원 설정에서의 면밀한 추계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거가 불명확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타 사업에서의 수당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당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경우 예년에 비해 2022년 예산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실태분석(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2022년 목표 인원을 높게 설정하는 등 목표 인원의 추계가 부정확하였으므로 향후 목표치를 정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에서 새로이 도입한 조기지급제도의 경우,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에는 변동

없이 장려금의 지급 시점을 앞당기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상세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환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안 분석

가.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¹⁴³⁾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써 실시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가지 재원으로 수행되는데,¹⁴⁴⁾ 이를 합한 2022년 총 예산현액은 1조 5,094억 1,400만원이며, 고용노동부는 이 중 8,964억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원을 이월, 6,128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취업 지원제도	1,509,496	1,509,374	40	-	1,509,414	896,400	160	612,854	1,238,478
일반회계	1,496,473	1,496,351	40	-	1,496,391	883,377	160	612,854	1,225,45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3,023	13,023	-	-	13,023	13,023	-	-	13,02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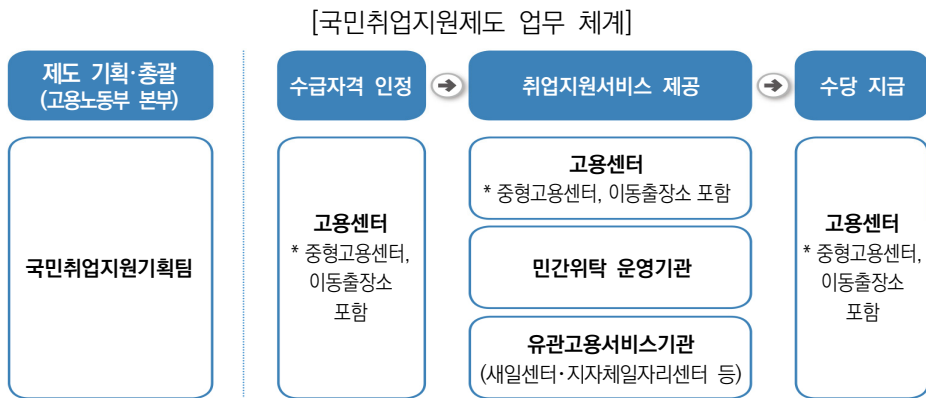
143) 코드: 일반회계 1234-3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41-316

144) 균특회계로 일부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이유는, '06년7월 제주특별법(제24조 우선이양대상사무)제정으로 고용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기관인 제주고용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이어서, 사업 예산집행을 위해 균특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수행 내용은 제주에서도 동일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I 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 유형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일경험프로그램’이라는 취업 도약 형태의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3개의 유형을 각각 서로 다른 내역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I 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하려는 사업이며, II 유형은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등을 받게 된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I 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및 II 유형(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전체 수급(자격)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에서는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향 및 I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전체 참여자의 자격요건 검토 및 수당 등 지급,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유관 고용서비스기관과의 연계협업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수행한다.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2)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역사업별 개요]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균특)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제공		
지원 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험)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5억원 이하	무관	
	Ⅱ 유형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8~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 일경험프로그램 지원대상은 Ⅰ·Ⅱ유형 참여자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 특정계층: 조건부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기간	수당등 소득지원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1년+사후관리기간은 3개월)				체험형 최대 30일 인턴형 최대 3개월		
지원 수준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6개월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참여수당 체험형 2.2만원, 인턴형 191만원 멘토링수당 10만원 민간위탁비 체험형 5만원 인턴형 10만원		
목표 인원*	500,000명		100,000명		25,000명		
달성률	219,527명(달성률 43.9%)		65,284명(달성률 65.3%)		22,598(달성률 90.4%)		
운영 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 수급	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kua.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함(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등은 일반회계와 균특회계가 동일

자료: 고용노동부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면밀한 추계 필요

가. 현황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역사업인 I 유형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조 2,054억 2,900만원 중 7,244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4,809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다. II 유형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현액 1,739억 4,000만원 중 966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772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162억 7,000만원 중 61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46억 7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반회계)	1,496,473	1,496,351	40	-	1,496,391	883,377	160	612,854	1,225,455
I 유형	1,205,551	1,205,429	-	-	1,205,429	724,416	50	480,963	1,048,796
II 유형	173,940	173,940	-	-	173,940	96,663	-	77,277	95,062
일경험프로 그램	116,230	116,230	40	-	116,270	61,553	110	54,607	80,38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의 사업들은 현재까지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하여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목표 인원 설정에서의 면밀한 추계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3개 내역사업(I 유형, II 유형, 일경험프로그램) 모두 2022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사업에서의 실적 저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2021년 사업 실시 이래 주요 3개 내역사업에서 모두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대비 저조한 지원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년 인원			2022년 인원		
	목표	지원	달성률	목표	지원	달성률
I 유형	450,000	340,649	75.7	500,000	219,527	43.9
II 유형	190,000	81,268	42.8	100,000	65,284	65.3
일경험프로그램	43,000	11,125	25.9	25,000	22,598	90.4

주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년은 해당없음

주2.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수를 말함(이월자는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는 불용 및 실적 저조 사유에 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인한 인지도 부족 및 타 지원사업(코로나19 한시지원사업, 지자체 청년 수당 등)과의 경합 등으로 인해 목표인원 대비 실제 참여 인원 저조로 인한 수당 및 위탁비 집행 잔액 다수 발생”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에는 사유로 “잠재적 수요가 대거 유입되었던 시행 첫해 대비 신청인원 감소, 특히 생계부양의무가 있는 중장년층의 참여자 수가 전년대비 저조하여 수당 및 위탁비 집행 잔액 불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업 1년차의 잠재적 수요의 대거 유입을 이유로 2년차의 실적 저조를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는 오히려 1년차 및 2년차의 계획 목표가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 사업이 2021년 신설된 사업이기는 하나, 과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2009~2020년) 사업과 유사성을 띤 사업이며 해당 사업에서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등을 실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이후의 실적 부진을 단순히 인지도 부족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 목표 설정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 유형의 경우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추계¹⁴⁵⁾한 자료를 근거로 요건심사형¹⁴⁶⁾은 잠재적 대상자가 약 53.6만명이라고 보고,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145) 이병희,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

146) I 유형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사람으로서 취업 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최소 24.3만명에서 최대 45.3만명으로 범위를 설정한 후 I 유형 요건심사형 목표 인원을 30만명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I 유형 요건심사형 ‘30만명’은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시 잠재적 대상자 53.6만명 중 1년간 취업 기간이 6개월 이하인 29.3만명을 취업취약계층으로 보고 산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I 유형 선발형¹⁴⁷⁾ 역시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기반하여 비경제활동인구를 169만명으로 추산하고, 청년특례 74만명¹⁴⁸⁾에서 근로능력 및 의사, 구직경험, 취업이력 등 지원요건을 감안하여 20만명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여기서 ‘20만명’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II 유형 중 청년층의 연간 지원 규모(20만명 수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II 유형을 살펴보면, 과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참조한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규모는 예산상 22.7만명(저소득층 10.7만명, 청년층 10만명, 중장년층 2만명)이었는데, 여기서 I 유형과의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10만명으로 목표치를 추계하였다.

이와 같은 추계 방식을 보면, 2021년 이미 실시된 사업의 2년차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2018년 연구 자료에 기반하고, 중복 인원을 제외하거나 중간값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명확한 논거가 부족한 등 면밀한 추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 2021년의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총량에서의 목표치는 수정하지 않고 I 유형 및 II 유형에서의 인원 배분만을 조정하였다. 여기서도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량적인 수준에서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147)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148) 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에서 중위소득 60%~120% 이하의 청년층을 의미한다.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 목표치 조정]

		19년 설정	21년 재설정
I 유형		50만명	50만명
	요건심사형	30만명	25만명
	선발형	20만명	25만명
II 유형		10만명	10만명
	특정계층	2만명	1만명
	청년층	5만명	8만명
	중장년층	3만명	1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반면, 목표치의 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에 비하여 고용노동부는 21년 사업 시행 이래 동 사업의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다. I유형 요건의 경우 최초 요건심사형과 비경활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것을 60%로 변경하였으며, 22년에는 I 유형에서의 청년 가구단위 재산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을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치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하여 사업 시행 이후 매년 대규모 불용 및 목표 실적 미달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동 사업에서의 수혜자에 대한 상세한 정책 자료 수집, 실태조사와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사업의 현실적인 목표치를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선 필요

가.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법적 근거는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제6조제1항은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취약계층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연령과 중위소득 요건에도 불구하고 [별표1]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다. [별표1]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 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1] 제2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13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을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별표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¹⁵⁰⁾

26.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13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나. 분석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별표1] 제26호에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법률에서 취업지원서비스의 요건을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고시로 위임한 것은 법률에서 상세히 정하기 힘든 구체적인 요건을 고시로 정하여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을 정해지는 고시는 모법에 비하여 그 개정과 변경이 용이하므로, 현실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개별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규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동 규정 제2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13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을 요건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는 위임을 받은 고시에서 다시 운영위원회의 판단 영역을 ‘수급 요건’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한 정책적 상황이 있다면, 그 대상에 해당하는 집단을 조사하여 그와 관련된 상세한 요건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요건을 창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고시) 제15조에 근거한 회의체에 불과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14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호, 2022.1.13.,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150) [별표1]의 동 조항 앞선 조문이 제26호임을 고려할 때, 이는 ‘제27호’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해당 규정을 제26호라고 칭한다.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로,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격 및 취업의사의 판단 등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소위원회」를 고용센터별로 둘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경력이 많은 내부 직원과 고용 및 노동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 | |
|---|
| <p>제15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
|---|

반면 모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새로운 수급요건을 정하려는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요건을 특별히 정할 수 있는 역할을 고용정책심의회¹⁵¹⁾에 부여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서는 그 역할을 운영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 된다.

만약 [별표1] 제26호의 규정이 단순히 운영위원회에서 [별표1] 각 호의 내용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고시 제15조)에 업무 범위로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규정은 ‘수급 요건’에 관한 설정 권한을 운영위원회가 갖도록 [별표1]에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같은 법 제7조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수급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행령 제4조는 이를 고시에 재위임하고 있으며, 고시 [별표3]에서 수급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위임하는 조항은 없다.¹⁵²⁾

151)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에 관한 국가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회의체로,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52) [별표3]에서도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 등 재량적 판단의 영역에 포함되는 요건은 있으나 이를 따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운영규정 [별표1] 제26호에 따라 실제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고3)’라고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을 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하나 생년월일의 차이로 18세가 안되어 참여가 어려웠던 17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¹⁵³⁾ 이러한 인정 인원은 2021년 198명, 2022년 473명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과 관련된 세부 요건을 운영규정에 별도로 명시하고, [별표1] 제26조를 삭제 또는 조정하여 법률로부터 받은 위임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53) 원칙적으로 법률과 고시에서 수급자격 연령 제한은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규정 [별표1] 제17호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고, 청년은 제16호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제9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검정고시 학력 인정자 또는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중 구직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 18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별표1]에 따른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1-3. 일경험 프로그램의 매칭 강화 필요

가. 현황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역사업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진로탐색과 체험, 직무능력 향상, 경력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162억 7,000만원 중 61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46억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반회계)	1,496,473	1,496,351	40	-	1,496,391	883,377	160	612,854	1,225,455
Ⅰ 유형	1,205,551	1,205,429	-	-	1,205,429	724,416	50	480,933	1,048,796
Ⅱ 유형	173,940	173,940	-	-	173,940	96,663	-	77,277	95,062
일경험프로 그램	116,230	116,230	40	-	116,270	61,553	110	54,607	80,38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직무체험 등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에겐 제공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동 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인턴형’의 2가지가 있으며, 사업주는 체험형의 경우 약 20~30일, 인턴형의 경우 1~3개월의 기간 동안 참여자를 견습생 내지 근로자로 활용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경험프로그램 유형]

구 분		체 험 형	인 턴 형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원 기간		30일(최소 20일 이상)	3개월(최소 1개월 이상)
일경험 시간		1일 3~4시간 내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원칙
지 원 금 액	참여자	참여수당 1일 2.2만원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협의된 임금
	참여기업	참여자 1인당 멘토링수당 10만원	참여자 1인당 임금 월 최대 19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비 고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참여한 경우, 체험형 수당(근무일 기준)과 훈련장려금 수령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II유형) 체험형 수당(근무일 기준)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중복수급 불가(1개 수당 선택 가능)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II유형 청장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참여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부지급 → (II유형 공통) 인턴형 임금과 훈련참여지원 수당 중복수급 불가(1개 수당 선택 가능)
직무 내용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신청인원(수요)에 비하여 연계 실적(공급)이 부족하므로 미연계 인원을 축소하고 연계기업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에서의 매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경험 진단결과 일경험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사람만 일경험 참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사가 일경험 참여가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기업은 참여자를 직접 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할 수도 있으며, 선발의 전체적인 과정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을 통하여 채용대행서비스로 선발할 수도 있다. 선발된 인력과 참여기업은 표준협약(체험형) 또는 근로계약(인턴형)을 체결하게 된다.

일경험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이 되면, 체험형의 경우 동일한 기업에서 인턴형으로 재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의 경우 체험형에서는 1인당 10만원의 멘토링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인턴형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멘토링수당 외에 1인당 191만원의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목표 인원은 25,000명, 실시 인원은 22,598명(2022년 기준 72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목표 대비 약 90.4%를 달성하였으나, 예산현액 1,162억 7,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이 이월, 546억 700만원이 불용되었다(집행률 52.9%).

[2022년 일경험프로그램 실시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목표	실적
인턴형	17,500	14,822
체험형	7,500	7,776
합계	25,000	22,598

주. 참여자 22,598명 중 중도포기자는 3,772명으로 집계됨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일경험프로그램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 예산 수립 시점에는 참여자 평균 참여기간 등의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여 최대기간(3개월, 30일)을 가정하고 편성하였으나, 실제 참여 기간이 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 기간보다 짧아 참여자 수에 비해 수당 등이 적게 지급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사업 수행 결과 체험형의 경우 평균 24일, 인턴형의 경우 평균 2.2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경험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은 단순히 불용의 발생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에 있다. 일경험프로그램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국민취업제도로부터 58,611명의 일경험프로그램 신청자가 있었지만 실제 연계된 건

수는 22,59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참여자 22,598명 중에서 중도포기자 3,772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업을 완료한 수료인원은 18,826명에 불과하다(중도포기율 16.7%).¹⁵⁴⁾

사업이 최초로 실시되었던 2021년의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유형을 막론하고 신청 건수에 비하여 실제 연계된 건수가 크게 적었음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의미는 일경험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 중 절반 이하의 사람들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공급에 비하여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특히 동 사업에서의 집행률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에서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연계 현황]

(단위: 명)

연도	유형	신청	연계	미연계
2021년	I유형	49,761	8,252	41,509
	II유형	13,669	2,873	10,796
	계	64,430	11,125	53,305
2022년	I유형	43,486	16,266	27,220
	II유형	15,125	6,332	8,793
	계	58,611	22,598	36,013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부가 일경험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자가 희망하는 직무를 모집하는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는 요청 시기·직무내용에 따라 즉시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운영기관과 연계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은 72개, 참여하는 연계 기업은 5,649개로 나타났다.

154)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일경험프로그램 중도포기자의 경우, 일경험 참여가 종료되더라도 계속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등이 지원되며 참여자는 일경험프로그램에 2회까지 참여 가능하므로, 본인 사정에 따라 중도탈락한 경우라도 다시 한 번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사정(회사 경영상황 악화, 폐업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는 참여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2년 일경험프로그램 연계기업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충부	경기	강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운영기관	72	16	9	6	4	12	7	7	7	4
연계기업	5,649	1,359	753	584	163	981	737	570	477	25
연계인원	22,598	4,437	2,918	2,003	635	3,881	2,988	3,726	1,950	60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의 공급-수요 간 비대칭을 해소하고, 특히 참여하는 연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개선,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매칭되어 미연계인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 제주 지역 일부 참여자 계좌압류 방지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의 수당 지급은 부적절

가.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개 재원으로 수행된다. 2006년 7월 제주특별법(제24조 우선이양대상사무)제정으로 고용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기관인 제주고용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이 되었고, 해당 사업 예산집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결산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은 13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취업 지원제도	1509,496	1509,374	40	-	1509,414	896,400	160	612,854	1,238,478
일반회계	1,496,473	1,496,351	40	-	1,496,391	883,377	160	612,854	1,225,45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3,023	13,023	-	-	13,023	13,023	-	-	13,02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주 지역 사업 일부 참여자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주도와 협의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때, 계좌에 있는 수당이 동결되어 취업 과정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동 사업에 펌뱅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상품명 “취업이름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름통장]

구 분	내 용
상품명	• 「취업이름 통장」
통장 확인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수급자)는 반드시 수급자를 증명하는 서류인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됩니다.(다른 증명서 인정 불가)
상품 특징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 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수급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은행은 ‘취업이름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은행은 압류 등록합니다.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상품 내용	• 입금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만 입금 가능 ※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수급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오입력한 경우, 은행에서 오입력사항에 대해 회신해 드리며 이러한 경우 수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 제한	•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하는 일체행위 제한 ※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유의 사항	• ‘취업이름 통장’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압류방지를 위해 ‘고용부’의 구직촉진수당 등만 허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후 취소시 카드사의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납부금’ 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별도로 환급받거나, 대출연체금 납부를 위해 영업점을 내점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결제계좌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만 입금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은 자제하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386면.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별도의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수급자의 압류방지통장으로 이체되고, 수급자는 수당 외의 금원을 해당 계좌에 입금할 수 없게 되어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금원을 수급자의 다른 금전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수급자격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발송 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고,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압류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격)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서귀포센터)는 펌뱅킹 운영 불가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제주도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하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통장 관련 매뉴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국민·기업·농협·부산·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총 11개) 금융기관에 수급자 증명서(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온라인 개설은 불가)할 수 있으며,

- 개설 후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때 활용하면 구직촉진수당등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서귀포센터)는 펌뱅킹 운영 불가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 불가**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매뉴얼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펌뱅킹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나, 압류방지를 위해 본인 신청시 타인 명의 계좌를 등록·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펌뱅킹이란 은행과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전용회선 등 전산망을 통해 직접 연결하여, 자금의 이체 및 입출금내역, 각종 조회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압류방지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동 사업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전산망과 금융기관 전산망을 펌뱅킹으로 연결하여 지급의뢰 자료를 송신하고, 수급자 계좌에 실시간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주 지역의 경우 제주고용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이어서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 사업비를 받는 등 특수성이 있고, 따라서 펌뱅킹 전산망 연결을 하기 위하여는 제주도와의 협의 및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

데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수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첫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 동 법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압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펌뱅크 시스템이 지원되지 아니한다는 현실상의 이유로 제주 지역 참여자에게 압류방지 통장의 개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둘째,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안의 해결에 유효하지 아니하다. 본질적으로 압류방지계좌를 개설하는 취지는 수급자의 계좌에 포함된 금전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이 되므로,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다른 예금과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압류방지계좌가 없는 경우, 수급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수당이 포함된 일반계좌 전체가 동결될 수 있어 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령하여야 할 수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수급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¹⁵⁵⁾ 압류방지계좌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수령하게 되면, 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될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고, 계좌 명의인이 수급자의 수당을 전용하는 경우 수급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될 소지가 있으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당을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목적의 달성에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 시 수급자에게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 명의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협약서」를 제출받아,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 등 추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좌 명의인의 동의를 받는 당연한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으며, 특히 계좌 명의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155) 대법원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명의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류가 발생할 수 있어 여전히 수급권 보호에 불안정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2022년 제주 지역에서 지급된 수당 총 1.4만건 중 수급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건수는 122건이다. 전체 지급 실적(2만 2,224건)의 0.55%에 불과하므로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 사안에서 지급 건수와 인원의 규모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고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타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업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적은 인원의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수급권에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받게 되는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제주도와 협의를 통하여 제주 지역 펌뱅크 개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제주 지역 참여자에 대하여도 수급권의 온전한 보호를 위하여 압류 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실효성 검토 필요

가. 현황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2개월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는 기존 취업성공수당이 취업 후 고용유지 기간(6개월, 12개월)에 따라 수당(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속한 취업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신설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신설 당시(2021년)에는 없었던 수당이었으나, 2022년부터 새로이 도입되었다. 2023년부터는 ‘2개월 내 취업 시’의 요건을 ‘3개월 내 취업 시’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정액(50만원)에서 정률(구축수당 잔액 50%)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수당 비교]

구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대상	Ⅰ 유형 참여자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Ⅱ 유형 참여자 * 소득, 재산 무관 (중장년층 소득100% 이하)	신청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중 특정계층	Ⅰ 유형 참여자 및 Ⅱ유형 중 조건부 수급자
지급 요건	IAP수립 및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자	IAP수립 및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출석률 80% 이상) 및 취업상담에 성실히 참여한 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 기간 포함) 중 취업*한 자 중 6개월 및 1년 이상 근속한 자 * 주30시간 일자리 임금근로자, 월 250만원 이상 특고·프리랜서, 창업한 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한 자 * 주30시간 일자리 임금근로자, 월 250만원 이상 특고·프리랜서, 창업한 자
지급 금액	(기본수당) 6개월×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고령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지급	(IAP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284천원×6월 (참여장려수당) 2만원×최대 3회	(6개월 근속) 50만원 (6개월 추가(1년)근속) 100만원	(Ⅰ 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수급자) 50만원

구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방법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계좌이체)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계좌이체)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계좌이체)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계좌이체) * 취·창업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 에 신청 가능

주. 2023년 4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기존의 취업성공수당과는 다른 형태의 수당으로서 법적 근거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신속한 취업 유인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의 한 유형이며, 기존 취업성공수당과 다른 수당이 아닌 관련 법에 근거한 수당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업성공수당의 법적 근거]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 제17조제1항에서의 취업성공수당은 그 취지에 있어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 유지’의 2개를 명시하고 있으며,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수당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관련 법안으로 정부 제출안, 임이자 의원안, 이용득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의 4개 법률안이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이중 취

업성공수당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임이자 의원안의 2개였다.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정부안에서는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의하고 있어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의안 간의 문언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정리되었으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문이 취업 이후의 유지 기간(6개월 또는 1년)에 따라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⁶⁾

이와 같은 입법 과정과 논의 경과, 그리고 조문의 명시적인 문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법 제17조의 규정은 신속한 취업과 근속 유지의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수당을 위한 조문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취업 이후의 유지 기능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취업성공수당과 다른 개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신속한 취업’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근속 유지는 지급 요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취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후 바로 근로를 그만두어도 수당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법 제17조를 조기취업성공수당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동 사업에 도입하였다. 현재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명칭만 취업성공수당과 유사할 뿐 그 성질은 다른 것이며 법적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각 취지가 다르므로 요건을 중복하여 갖춘 경우에는 2가지 수당을 모두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매뉴얼 상으로도 두 수당은 취지가 다른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취지가 다른 두 수당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

156) 제37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용노동소위, 2020-05-11, 22면.

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⁵⁷⁾

둘째, 고용노동부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타 사업에서의 수당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당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최초 도입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I 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3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지정일 이전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높이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 유형을 중심으로 설계했던 수당을 변경하여 II 유형 조건부수급자¹⁵⁸⁾까지 포함시켰으며, 본래 1회 50만원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I 유형의 경우 구축수당 잔액의 50%(정률, 최대 100만원), II 유형 50만원 정액으로 변경하였다.

[2023년 조기취업성공수당 변경내역]

	2022년	2023년
지급대상	I 유형	I 유형 + II 유형 조건부 수급자
지급금액	1회 50만원	I 유형 : 구축수당 잔액의 50%(최대 100만원) II 유형 : 50만원
취업요건	구축수당 3회차 수령 이전	구축수당 4회차 수령 이전

주. 구축수당 잔액이란,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한다는 의미임. I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6회차)에 걸쳐 수령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사업¹⁵⁹⁾과 비교하면, 해당 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

157)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15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되는 참여자를 뜻한다.

159) 코드: 고보기금 1280-351

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직급여 수급자¹⁶⁰⁾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고용보험법상의 '조기재취업수당'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은 참여자는 요건 충족(6개월 이상 근속 유지 등) 시 취업성공수당도 다시 수령할 수 있지만(최대 150만원)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점, ②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등에 성공하여야 하지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의 경우 2023년부터 구축수당 4회차 수령 전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수당 일수의 3분의 2까지 취업에 성공하면 되는 점, ③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이상의 근속 유지 요건이 있지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근속 유지 없이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년 및 '22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한 3회차('22년기준, 23년은 4회차)까지의 취업률을 비교한 바, '22년 36.5%로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전인 '21년 33.1%에 비해 3.4%p 높아 조기 취업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중 취업자 현황]

구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중 취업인원	구직촉진수당 1~3회차 이내 수급 후 취업한 자	구직촉진수당 4회차 이상 수급 후 취 업한 자
'21년 인정자	97,389	32,201	65,188
비율	100%	33.1%	66.9%
'22년 인정자	55,223	20,160	35,063
비율	100%	36.5%	63.5%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위 자료는 연도별 취업인정자 중 동일년도에 종료한 자를 기준으로 '23.3월 말 기준 취업성공수당을 1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추출한 것인데, 정확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하고 난 후의 근

160)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급여이다.

속 유지율, 그리고 취업성공수당만을 수령한 경우와의 비교 등이 필요하나, 2022년 취업 인정자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의 정확한 통계상의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설령 통계적인 효과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당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취업성공이라는 목적의 수당을 2개로 나누어 '신속한 취업+근속 유지'와 '매우 신속한 취업'으로 분리하여 집행할 필요성 등의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조기취업성공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기취업 성공수당의 지원 확대를 우선하기보다 다른 사업에서의 수당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며, 수당의 제도적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내일배움카드 사업¹⁶²⁾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의 2가지 재원으로 운영되는데,¹⁶³⁾ 이를 합산한 내일배움카드 2022년 예산 현액은 1조 2,634억 9,700만원이며, 이 중 1조 784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1,847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내일배움 카드	1,224,590	1,264,586	911	△2,000	1,263,497	1,078,478	304	184,714	1,406,127
일반회계	426,294	426,290	781	△2,000	425,071	322,799	228	102,044	518,815
고용보험 기금	798,296	838,296	130	-	838,426	755,679	76	82,670	887,31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소득 자영업자·대규모기업 근로자,¹⁶⁴⁾ 만 75세 이상, 대학 재학생¹⁶⁵⁾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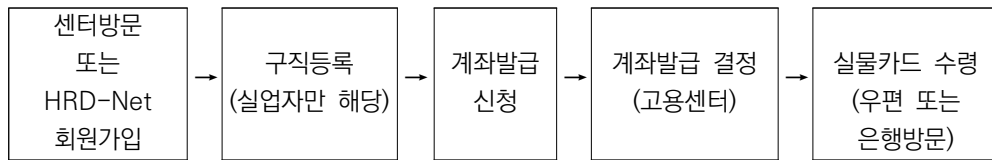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162) 코드: 일반회계 1131-300, 고용보험기금 1151-352

163) 내일배움카드는 2019년까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분리운영하였는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고용보험가입 이력’ 유무를 기준으로 고보가입 이력이 있으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력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그간 분리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였으며, 예산편성도 ‘고용보험가입 이력’ 유무가 아닌 ‘사업성격·목적의 특화 여부’에 따라 편성하고 있다.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에서 회원가입 후 절차를 완료하고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 부터 5년이며 참여자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¹⁶⁶⁾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고,¹⁶⁷⁾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한다.¹⁶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그리고 특별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엄밀히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담 훈련비)가 아닌 정부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¹⁶⁹⁾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등이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월 5만원부터 최대 월 11만 6천원까지 지원된다.¹⁷⁰⁾

164)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65)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 이상 남은 재학생

166) 원칙적으로는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나,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2023.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167)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하는 등이다.

168)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한다.

169) 2023.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4조

170)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

특별훈련수당이란,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¹⁷¹⁾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일반직종 훈련’, ‘평생크레딧’ 등이 있다.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의 경우 월 36만원까지도 가능하다.

171) 구체적으로는 단위기간 중 일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에 1만원을 곱하여 산정되며,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2-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신속한 훈련과정 공급 필요

가. 현황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일명 K-디지털 트레이닝: KDT)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 현액은 3,068억 2,2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는 이 중 2,33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728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내일배움카드 (일반)	426,294	426,290	781	△2,000	425,071	322,799	228	102,044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324,822	324,822	-	△18,000	306,822	233,952	-	72,87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등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훈련비 전액 지원(1회),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 80% 이상 충족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개요]

사업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 (일반회계)								
개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훈련과정별로 다르나, 평균 6개월의 훈련기간								
지원수준	훈련비 전액 지원(1회) 및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 80% 이상 충족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지급								
지원목표	28,521명 훈련 실시 목표								
목표달성	22,394명 실시 인원 기준(달성률 78.5%)								
운영체계	훈련과정 심사 계획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부정수급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훈련품질관리센터의 정기·수기 감독 실시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훈련과정 선정 및 개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제 확인원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2022년 28,521명에게 훈련 실시를 목표로 1인당 1,134만 5천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훈련비 3,23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 예산 편성 근거]

세사업 명	구분	편성 근거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본예산	○ 훈련비 등 323,562백만원 = 28,521명 × 11,345천원 ○ 운영비 1,260백만원 = 21개 기관 × 60,000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2022년 사업 수행 결과 실시 인원은 22,349명, 집행 단가는 1인당 평균

1,040만 3천원으로 동 내역사업에서 728억 7,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획 인원(28,521명) 대비 6,172명이 미달한 것이다(△21.6%). 728억 7,000만원의 불용액은 같은 세부사업(내일배움카드 일반회계)의 내역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불용에 해당한다.

[2022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일반회계) 주요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내일배움카드	426,294	426,290	781	△2,000	425,071	322,799	227	102,044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324,822	324,822	-	△18,000	306,822	233,952	-	72,870
일반고 특화훈련	54,067	54,067	-	15,500	69,597	60,900	-	8,667
일반직종 훈련	2,697	2,697	-	2,500	5,197	4,247	-	950
평생크레딧	32,500	32,500	-	-	32,500	13,036	-	19,46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계획 인원내 실적미달한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원인 중 긴 시간이 소요되는 선정 절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사업은 4단계(①기본심사 → ②서면심사/스마트적정성심사 → ③ 인터뷰심사 → ④심의위원회 최종심의)에 걸친 4단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있어, 계획 공고일부터 최종 결과발표까지 최소 4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¹⁷²⁾

172) 훈련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한 참여기업 수요조사, 과정설계, 프로젝트 학습편성 등 준비기간(1~2개월)을 거쳐 HRD-Net(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한다. 동 사업에 신청 시 훈련 유형을 정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훈련유형은 ①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②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③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④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4가지가 있다.

[훈련과정 선정평가 심사(예시)]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진행 사항	계 획 공 고		신청기간			❶기본심사(기선 정, 선도기업, 신규기관) ❷인터뷰심사(기 선정, 선도기업)			기 선 정 / 선 도 기 업 결 과 공 고	신규기관 서면심사			신규기관 인터뷰심사			신 규 기 관 결 과 공 고
		운영기관 사업 준비기간														

자료: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훈련과정 선정 이후 즉시 훈련생 모집 및 개설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정 운영 준비, 훈련생 모집 기간 소요 등으로 선정 후 실제 개설까지는 2~3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훈련과정의 공급 지연이 사업 예산상의 집행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동 사업의 훈련과정 공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에 공고된 훈련과정이 최대 이듬해 4월에서야 선정이 완료되었고, 2022년 9월에 공고된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¹⁷³⁾의 경우 같은 해 10월 30일에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대부분 연내에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여 2023년에 본격적으로 훈련과정이 개설되었다.

173) 기업과 연계한 현장맞춤 훈련, project based learning 등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여 민간기업(디지털 선도기업)과 훈련운영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이다. 총 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프로젝트 학습을 훈련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훈련과정 공모 현황]

공고명	공고일	발표일	신청 과정	선정 과정	공고 내용
'22년 상반기 통합공모	'21.11 월	'22.2 ~4월	215	85	소유형 통합 신규공모
상반기 훈련과정 변경심사	'22.1월	'22.2월	-	-	既 선정된 훈련과정의 과정명훈련내용 등 변경심사
'22년 하반기 통합공모	'22.4월	'22.7 ~8월	197	87	소유형 통합 신규공모
하반기 훈련과정 변경심사	'22.9월	'22.10월	-	-	既 선정된 훈련과정의 과정명훈련내용 등 변경심사
선도기업 아카데미 공모	'22.9월	'22.11월	12	11	선도기업 수요에 따른 추가공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훈련과정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 상반기 공모는 금년도 하반기에, 하반기 공모는 당해 연도 상반기에 공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집행 시차는 연차별 사업평가를 어렵게 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예·결산 심사에서 차년도 예산안의 정밀한 추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 훈련생이 훈련비 등을 1회에 전액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여러 회차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전년도에 훈련을 개시하였으나 집행 시차로 인해 차년도 예산 집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잔여 인원이 있게 되면,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잔여 인원의 훈련과정 개월 수, 수료 여부, 수당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부예산안 편성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는 정밀한 예산 추계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야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동 사업에서의 실시인원 11,727명 중 2021년에 비용이 집행되지 않은 인원 수는 2,367명(20.2%)이고, 2022년 실시인원 22,394명 중 같은 회계연도에 비용이 집행되지 않은 인원 수는 4,207명(18.8%)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1년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2022년은 사업 2차연도에 해당하여 위 집행 시차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훈련과정 공급 규모를 조절하는 등 사전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인원 미달 및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서의 훈련과정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계획인원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평생크레딧’ 사업¹⁷⁴⁾의 내내역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0인 미만 기업 재직 근로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5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중 2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47억 4,500만원을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내일배움카드 (일반)	426,294	426,290	781	△2,000	425,071	322,799	228	102,044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5,000	5,000	-	-	-	255	-	4,74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서는 만 45세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 외에 별도로 100만원(크레딧, 유효기간 1년)을 추가로 지원한다. 동 사업의 참여자는 경력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1:1 심층상담으로 제공받고,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운영비용을 신청하여 비용 승인을 받게 된다.¹⁷⁵⁾

상담 과정은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을 취하는데, 2022년 사업 실시 결과, 총 10시간의 상담을 참여자의 일정에 맞춰 실시(차시 당 1~3시간)하였으며 1인당 평균 상담 실시 횟수는 5회, 평균 상담 기간은 31일로 나타났다.

174) 평생크레딧 사업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과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2022년 예산 50억원)으로 구성된다.

175) 출석률 80% 이상으로 수료한 과정은 상담과정 운영비용의 90%를 지급(10%는 참여자 자부담), 출석률 80% 미만 시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강 신청 시 참여자가 운영비의 10%에 대해 자부담하되, 상담 과정 수료(출석률 80% 이상) 시 이를 전액 환급하고 있다.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개요]

사업명	평생크레딧 內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기간 (재원)	2022~계속 (일반회계)
개요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0인 미만 기업 재직 근로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크레딧 지급 후 1년
근로조건	해당 없음
지원수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사용 가능한 100만원(1년 한도) 추가 지원
지원목표	'22년 5,000명 지원 목표
목표달성	상담 실시 인원 612명(달성률 12.2%), 비용 집행인원 251명
운영체계	
부정수급	관할 고용센터 및 심평원 훈련품질관리센터의 정기·수시 감독 실시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경우 목표했던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251명(4%)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인지도 제고, 참여 유인 점검, 타 사업과의 차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경우 2022년 계획 인원은 5,000명이었으나 실제 비용 집행인원은 251명으로, 목표의 4% 수준에 불과하였다.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고용노동부는 5,000명의 인원에 1인당 단가 1백만원을 적용하여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251명에 대하여 101만 7천원의 단가가 적용되어 집행액은 2억 5,500만원에 불과하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내역]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본예산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5,000백만원 = 5,000명 × 1,000천원
	결산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255백만원 = 251명 × 1,017천원 * 상담 실시 인원 612명, 상담 비용 집행인원 251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서 민간 컨설팅 기관 등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경력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일대일 심층상담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동 사업에서의 2022년 세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1명도 카운슬링을 실시하지 못하여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관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다수 기관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¹⁷⁶⁾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업목표를 5,000명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은 재직자(유효기간 남은 계좌 기준)를 (45~49세) 11.2만명, (50~54세) 10.4만명, 총 21.6만명으로 추산하고, 22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5,0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입장이다.

176) 고용노동부는 일부 기관의 경우 2022년 하반기(9월)에 선정되어 상담 과정 준비 및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실시 지연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실시 현황]

(단위: 명, %)

운영기관명	상담 실시인원						실집행 인원
		수료	중도탈락	상담중	수료율	탈락률	
합 계	612	432	5	175	98.9	1.1	251
(주)○○에이치알	73	62	1	10	98.4	2.1	43
○○평생교육원	54	36	2	16	94.7	5.4	26
○○○평생교육원	50	33	1	16	97.1	2.6	24
○○스(주)	22	18	1	3	94.7	7.1	9
○○잡스주식회사	82	33	0	49	100	0	9
(주)○○커리어	118	99	0	19	100	0	67
(주)○○컨설팅	23	19	0	4	100	0	12
(주)○○에이치알디	34	28	0	6	100	0	15
○○협력센터	22	12	0	10	100	0	7
(주)○○잡컨설팅	4	2	0	2	100	0	-
(주)○○아	17	4	0	13	100	0	-
(주)○○비컴	74	55	0	19	100	0	34
(주)○○씨넷	15	13	0	2	100	0	-
(주)○○코칭	3	3	0	0	100	0	1
사단법인○○협회	8	7	0	1	100	0	4
○○개발센터	13	8	0	5	100	0	-
○○센터	0	0	0	0	0	0	-

주1. 수료율 = (수료인원) / (수료인원 + 중도탈락인원)

주2. 실집행인원이란 2022년 상담 실시 인원 중 연내 비용 집행이 이루어진 인원을 뜻함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2022년 운영기관 선정, 상담 과정 개설 준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등 순연이 발생하였다. 사업 경과를 살펴보면, 사업 공고는 22년 2월, 1차 운영기관 10개소가 선정된 것이 22년 3월 말이다. 상담 과정은 4월 말이 되어야 개설되었으며, 실제 카운슬링은 5월이 되어야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에서는 상담이 모두 종료된 후에 비용이 지급되고 있어, 상담기간(1~2개월) 및 종료일부터 비용지급에 소요되는 기간(16~31일)으로 인해 상담 실시 인원과 비용 집행인원 간 차이가 발생(1.5~3개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¹⁷⁷⁾

177) 이러한 집행시차로 인하여 22년 실적으로 제시한 상담 인원은 612명이나, 22년 실집행인원은 251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23년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2022년 사업 실시 인원 및 실집행 인원]

(단위: 명)

구분	상담 실시인원(누계)		실집행인원 (누계)
		전월 대비 증가	
1월	-	-	-
2월	-	-	-
3월	-	-	-
4월	-	-	-
5월	9	9	-
6월	22	13	0
7월	77	55	1
8월	128	51	30
9월	173	45	42
10월	276	103	97
11월	464	188	147
12월	612	148	251

주. 실집행인원이란 2022년 상담 실시 인원 중 연내 비용 집행이 이루어진 인원을 뜻함
자료: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의 재직자인데,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역시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의 경력·진로설계를 위해 경력점검·미래계획 수립 등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0세 이상 중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⁷⁸⁾ 따라서 재직자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차별화 요인이나 인센티브 없이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178)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50플러스포털(<https://50plus.or.kr/>)을 통하여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컨설팅 트 1:1 맞춤상담 포함),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의 비교]

구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목적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0인 미만 기업 재직 근로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 제공	40세 이상 재직시부터 체계적 생애경력설계를 통한 인생후반부 설계 지원
지원대상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재직자는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일 것)	40세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서비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100만원 추가 지원	생애경력설계지원, 전직지원, 재취업지원 등 종합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수행 기관	전국 17개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센터 12개소, 민간센터 19개소(전국 31개소)
본예산	50억원	213억 600만원

주. 2022년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에서의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당초 정성(60%) 및 정량(40%) 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를 실시할 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 상반기 선정 과정(10개)에 대한 성과평가는 운영기관의 준법성 등 기본 항목에 결격사유가 없고 과정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재직자로 하여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며, 다른 경력설계 상담 등 유관 사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등 사업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훈련 공급 개선 등 필요

가. 현황

‘평생 크레딧’ 사업¹⁷⁹⁾의 내내역사업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노동 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생크레딧’ 사업의 2022년 예산현액은 325억원이었으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대해서 275억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2022년 결산에 따르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서는 127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147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내일배움카드 (일반)	426,294	426,290	781	△2,000	425,071	322,799	228	102,044
K-디지털기초역 량훈련	27,500	27,500	-	-	27,500	12,781	-	14,71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코딩, 데이터 분석, 웹 개발 등 디지털 관련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데 사용된다.¹⁸⁰⁾

179) 평생크레딧 사업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과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2022년 예산 50억원)으로 구성된다.

180) 추가 지원된 50만원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만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금 10% 결제 후 수수료 시 환급(HRD-Net 홈페이지에서 수강평 작성 후 환급 신청)된다.

[2022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개요]

사업명	평생크레딧 內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 (일반회계)			
개요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 지원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크레딧 지급 후 1년			
근로조건	해당 없음			
지원수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 추가 지원			
지원목표	'22년 55,000명 지원 목표			
목표달성	훈련 실시 인원 56,512명(달성률 102.7%), 비용 집행인원 42,998명			
운영체계	훈련과정 선정 공고·심사 고용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 훈련생 ⇨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고용센터 ⇨ 훈련 실시 훈련기관 · 훈련생 ⇨ 자부담금 환급 등 비용 지급 고용센터			
부정수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를 통한 원격훈련 모니터링 실시			

자료: 고용노동부

같은 세부사업에서의 내역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경우 실제 민간 기업이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에 비하여,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훈련 실시 인원과 집행 인원 간 격차 및 편성 단가와 집행 단가 간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훈련인원 공급 계획 조정 및 훈련 단가의 면밀한 산정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에서는 2022년 55,0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고 단가 50만원을 적용하여 2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42,998명에 대하여 훈련비용이 집행되어 총 127억 8,100만원(1인당 단가 29만 7천원)만 집행되어 동

내내역사업에서 147억 1,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에 훈련에 진입한 인원은 56,512명이었으나, 하반기(10~12월)에 진입한 인원의 경우 훈련이 23년에 종료되게 되어 2023년 예산으로 집행된다. 이에 2022년 실제 훈련비가 집행된 집행 인원은 42,998명으로 22년 계획 인원이었던 55,000명에 미달한다.

둘째,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인당 훈련 단가가 50만원이었으나, 실제 훈련비 지급 과정에서는 1인당 단가가 29만 7천원으로 계산되어 예산현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만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50만원의 단가는 별도의 추계나 명확한 정책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크레딧의 상한선(5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¹⁸¹⁾ 따라서 체계적인 수요 조사와 면밀한 추계 없이 지원 가능한 금액의 최대값을 계획 인원에 곱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었다.¹⁸²⁾

181) 동 사업의 참여자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의 크레딧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추가 지급된 크레딧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에서의 수강에만 사용 가능하며, 훈련생은 훈련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자부담액은 수료 시 환급한다.

182)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훈련 개시 시기와 훈련비 지급 시기에 시차가 발생하는 훈련사업의 특성 및 대국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대대적 홍보를 통해 훈련 실시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훈련생 개인별로 수강한 과정의 훈련비 등이 상이하여 예산 산출단가(500천원)와 훈련생 1인당 실제 집행 단가(297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2022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월별 실적]

(단위: 명)

구분	훈련 실시인원(명, 누계)		실집행인원 (누계)
		전월 대비 증가	
1월	2,939	2,939	854
2월	5,434	2,495	3,124
3월	8,141	2,707	5,258
4월	10,606	2,465	9,127
5월	15,537	4,931	10,488
6월	18,814	3,277	14,121
7월	22,600	3,786	16,529
8월	28,558	5,958	21,220
9월	34,269	5,711	25,221
10월	41,410	7,141	30,148
11월	49,235	7,825	36,632
12월	56,512	7,277	42,998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동 사업에서의 훈련과정 공급 절차 및 계획 인원을 재조정하거나, 훈련 단가 산정 시 기존 사업 수행 실적 및 실제 지급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경우 추후 양적·질적 평가 및 취업에의 영향 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경우, 훈련 과정에 선정되면 1년 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훈련과정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 훈련인원 상향 또는 축소 여부 등을 판별하고 있다. 22년 상반기 선정과정 40개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3년 1월 실시하였고, 2022년 하반기 선정된 훈련 과정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3년 하반기 실시할 예정(7월경)이다. 2022년 성과평가 결과 40개 과정 중 A등급을 받은 과정은 28개이다.

[2022년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

(단위: 개)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과정 수	28 (70.0%)	5 (12.5%)	3 (7.5%)	4 (10.0%)

자료: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결과는 등급에 따라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D등급을 받은 훈련과정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2022년의 경우 4개 훈련과정이 D등급을 받았다.

[성과평가 결과 환류]

결과	기준	유효기간 연장	목표인원 조정
A등급	80점 이상	연장	상향 또는 유지
B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연장	유지
C등급	70점 미만	연장	축소
D등급	미신청, 행정처분	미연장	-

주1. 유효기간 연장: 해당 과정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1년 연장

주2. 목표인원 조정: 최초 인정 목표인원에 대해 고려 상향 또는 유지(훈련기관 의견 반영)

주3. 목표인원 조정(축소): 선정 당시 훈련 목표인원의 40% 일괄 축소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2년 동 사업에서의 성과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평가 항목은 훈련 실시 인원, 수료율, 목표인원 달성률, 행정처분 여부 등으로, 이와 같은 지표만으로 실제 훈련의 성과와 디지털 역량 향상에의 기여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훈련생의 만족도조사 역시 성과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만족도 조사결과가 낮더라도 성과평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성과평가 기준]

연번	평가지표	배점	주요내용
1	훈련 실시인원	50	과정별 훈련 참여자 수
2	수료율	30	훈련참여인원 대비 수료인원
3	목표인원 달성률	20	목표 훈련운영가능인원 달성정도
4	행정처분 여부	적/부	훈련기관에서 발생한 계약해지(인정취소) 또는 위탁인정제한 등 행정처분 이력 검토

자료: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현재 동 사업의 훈련과정의 공급 체계 역시 수요자의 역량 강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영역 전반에 대한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료 후 취업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과정 수료 시 테스트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훈련생들의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 방식이 아닌 과정별 맞춤 실습·프로젝트 과제를 필수 편성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일방적인 강의 재생식 훈련방식이 아닌 훈련생이 각 강의에 부여된 코딩 연습 과제, 퀴즈 등을 작성해야하는 쌍방향 훈련방식으로 운영되어 원격훈련이지만 충분히 집체 훈련에 준하는 수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 개설되는 과정은 초급 뿐 아니라 중급 과정도 있고, 레벨테스트를 거쳐 참여자를 맞는 등급에 배정한 후 수료 테스트를 다시 거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역량 강화를 점검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⁸³⁾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지침에 따르면, 강의시간 중 100분의 50을 수강한 경우 해당 차시의 학습을 인정해주고, 전체 강좌 중 학습진도율이 80%인 경우 수료기준을 충족해주고 있다. 따라서 30분 강의시간의 10차시 과정을 예로 들면, 계산상 300분 중에서 최소 120분(15분*8강의)만 수강하여도 수료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참여자가 본인의 수준에 적합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지, 훈련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로 디지털 기초역량이 강화되었는지 등을 외부에서 검증할 만한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 훈련 과정이

183) 현재는 훈련과정이 초급에 해당되는지, 중급에 해당되지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과정 심사를 거쳐 선정할 뿐, 참여자의 입장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는 별도로 없는 상태이다.

향후 참여자들의 취업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적·질적 정책 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교육과정 수준 구분]

구분	교육 목표
초급	디지털 경제 및 신기술, 메타버스 등에 대한 기본 이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기본개념, 기초실습 포함) 데이터 분석 이해 및 활용 초급(SQL, R 등 기초이론)
중급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 및 활용(기본문법, 응용문제, 디버깅 포함) 데이터 분석 이해 및 활용(실습포함) 세부 프로그램 및 기술에 대한 이해(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중) 메타버스 게임 등 제작 및 활용 디지털·신기술을 비디지털 분야 직무(경영기획·마케팅 등)에 융합·활용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수행 시 역량 강화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기준에서도 실질적인 수강생의 역량 강화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4.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환류체계 명확화 필요

가. 현황

내일배움카드 사업(고용보험기금)은 ‘일반직종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아·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의 2022년 수정 계획액은 8,382억 9,600만원이고 이 중 826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다. 한편 내역사업 중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951억 2,6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을 실시하여 수정 계획액은 600억원이 감액된 351억 2,600만원이다.¹⁸⁴⁾ 고용노동부는 이 중 226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2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내일배움카드 (고보)	798,296	838,296	130	838,426	755,679	76	82,670	887,312
산업구조변화대 응 등 특화훈련	95,126	35,126	-	35,126	22,661	-	12,465	76,61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훈련수당을 추가 지원¹⁸⁵⁾한다.

18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기준 내일배움카드(고보) 전체 세부사업 집행률은 58.6%*이나 내역사업인 일반직종훈련 집행률은 81.3%(2,850억원 집행)로 9월 중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 소진이 예상되었으며,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경우 당시의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일부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전용하였다는 입장이다.

185)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 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개요]

사업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기간 (재원)	2022~계속 (고보기금)				
개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아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동일				
근로조건	해당 없음				
지원수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훈련수당 추가 지원				
지원목표	‘22년 25,000명 지원 목표				
목표달성	훈련 실시 인원 12,435명(달성률 49.7%), 비용 집행인원 5,367명				
운영체계	운영기관 선정 공고·심사 고용부 ⇒ 훈련과정 선정 공고·심사 고용센터, 지역인적자원위원회 ⇒ 참여자 신청 HRD-Net 고용센터 ⇒ 비용·수료 처리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비용 등 지급 고용센터				
부정수급	관할 고용센터 및 심평원 훈련품질관리센터의 정기·수시 감독 실시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수행기관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에 따른 실적 편차가 크므로 RSC에 특화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은 기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 중앙(직업능력심사평가원) 중심의 심사체계¹⁸⁶⁾에 따라 공급되어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과 밀접한 사업수행기관’이 주도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을 발굴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적합한 훈련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2022년 신규 사업이다.

만원),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등을 의미한다.

186) 중앙에서 정기적(연 2회)으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훈련기관이 신청한 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공모 공고, 2021.12.28.)

고용부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 등을 수행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¹⁸⁷⁾를 공모 및 선정한다. RSC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직업훈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원대상산업직종¹⁸⁸⁾ 및 육성산업직종¹⁸⁹⁾을 선정한다. 이후 RSC는 해당 분야의 세부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그를 운영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발굴한다. 동 사업에서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비,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주체별 역할분담]

- ▶ <RSC> ①고용상황 및 인력수요 등 파악, ②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 ③ 훈련수요 조사발굴, ④훈련기관 발굴, ⑤훈련과정 개설 지원, ⑥훈련과정 심사 등
- ▶ <고용센터> ①지원대상 산업 등 분석·선정을 위한 RSC 협조(요청자료 제공 등), ②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 심사 참여, ③훈련과정 승인, ④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 ▶ <직능원> ①적정 RSC 선정지원, ②모니터링, ③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
- ▶ <심평원> ①RSC의 훈련기관·과정 심사 지원(컨설팅, 현황자료 제공 등)

자료: 2022년 운영기관 공모 공고, 2021.12.28.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2년 사업의 목표 인원은 약 25,000명이었으나 실제 RSC별 실시 인원의 총합은 12,435명으로, 달성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실제 사업비가 집행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집행 실적은 5,367명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4억 6,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지역 현장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을 신규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사항인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의 훈련 수요 선별·심사 등 훈련과정·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과정 공급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다.¹⁹⁰⁾

18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 Regional Skills Council)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별 거버넌스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역·산업 인력양성·훈련 수요조사, 훈련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수행·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188) 재직자 및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아전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분야

189)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직종으로, 지원대상산업 재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력수급이 필요한 직종

하지만 동 사업에서는 단순히 전체적인 목표 미달성, 실적 저조 뿐 아니라 훈련과정을 공급하는 RSC에 따라서도 편차가 큰 상황이어서 사업수행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동 사업에 참여한 RSC는 15개로, 이중 경기·광주 RSC의 경우 달성률이 70%를 웃돌지만 인천·경북·울산·대구 RSC의 경우 달성률이 50% 미만이며, 충북 RSC는 18.7%, 세종 RSC는 1.7%에 불과한 실적이다.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수행기관별 실적]

(단위: 명, %)

연번	사업수행기관명	목표인원	실시인원	달성률
	합 계	24,550	12,435	50.7
1	경기RSC	1,500	1,110	74.0
2	인천RSC	2,050	934	45.6
3	경북RSC	1,500	588	39.2
4	광주RSC	1,500	1,182	78.8
5	경남RSC	1,500	1,024	68.3
6	부산RSC	1,500	788	52.5
7	서울RSC	1,500	922	61.5
8	충북RSC	1,500	281	18.7
9	울산RSC	1,500	634	42.3
10	전북RSC	1,500	979	65.3
11	대구RSC	2,500	1,208	48.3
12	대전RSC	1,500	781	52.1
13	전남RSC	1,500	842	56.1
14	충남RSC	2,000	1,136	56.8
15	세종RSC	1,500	26	1.7

자료: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RSC에 따른 2022년 훈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수요율이나 훈련 실시 인원의 수가 목표에 미달한 것 외에도 훈련에의 신청 인원 자체가 매우 적은 RSC가 있으므로, 사업 홍보 및 참여 촉진을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이 RSC에 훈련과정 발굴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역 특화를 목

190) 훈련 수요 선별·심사는 지역별 일자리정책 분석, 고용보험 DB 검토, 자체 수요조사, 전문가 FGI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추진 단계는 사업운영기관 선정 → (RSC)훈련수요 조사 → (RSC)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발굴·공모 → (RSC)훈련과정 등 심사 → (RSC)훈련과정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표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RSC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환류도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수행기관별 훈련 실시 현황]

(단위: 명, %)

사업수행기관명	신청인원(명)	훈련 실시인원(명)					
			수료(명)	중도탈락	훈련중	수료율	중도탈락률
합 계	16,545	12,435	8,636	1,419	2,380	85.9	11.4
경기RSC	1,440	1,110	730	159	221	82.1	14.3
인천RSC	1,243	934	730	114	90	86.5	12.2
경북RSC	733	588	441	70	77	86.3	11.9
광주RSC	1,569	1,182	789	178	215	81.6	15.0
경남RSC	1,341	1,024	735	120	169	86.0	11.7
부산RSC	1,072	788	459	89	240	83.8	11.3
서울RSC	1,305	922	618	132	172	82.4	14.3
충북RSC	345	281	199	13	69	93.9	4.6
울산RSC	864	634	396	72	166	84.6	11.4
전북RSC	1,275	979	742	99	138	88.2	10.1
대구RSC	1,747	1,208	852	117	239	87.9	9.7
대전RSC	962	781	292	104	385	73.7	13.3
전남RSC	1,098	842	778	39	25	95.2	4.6
충남RSC	1,507	1,136	859	113	164	88.4	10.0
세종RSC	44	26	16	0	10	100.0	0.0

주. 수료율 = (수료인원) / (수료인원 + 중도탈락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022년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나,¹⁹¹⁾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운영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또한, 평가 결과가 낮은 RSC의 경우 개선방안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행 수준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성평가 기준에서는 협업의 정도, 훈련기관 및 과정 발굴, 관리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191) 정량지표는 공모 횟수, 훈련과정 개설률, 훈련 목표 인원 달성률, 훈련 목표 인원 달성률, 육성산업 직종훈련 인원 비율, 훈련과정 수료율, 훈련생 만족도로 구성된다.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정성평가 기준]

항목		평가방법	배점
(1)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활용 (20점)	① 고용센터와의 협업 노력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인자위 제출 자료 평가	10점
	② 자치단체 등과의 협업 노력		10점
(2) 지원대상산업·직종, 육성산업·직종 선정 (15점)	① 선정 근거의 타당성		10점
	② 선정 절차의 적절성		5점
(3) 훈련·인력수요 발굴 (20점)	①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10점
	② 방법 및 절차의 다양성 및 적절성		10점
(4) 훈련기관 및 과정 발굴 (35점)	① 훈련기관 및 과정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 체계성		10점
	② 훈련과정 발굴 과정에서 훈련·인력수요 조사와 연계 노력		10점
	③ 신규 훈련기관 섭외 및 우수 훈련과정 개설 노력		15점
(5) 훈련기관 및 과정 관리(10점)	훈련과정의 개설 및 훈련생 취업지원 등 노력 정도 및 결과		10점
합 계			100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년 성과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고려하여 RSC의 훈련목표인원과 운영비 등을 최종 결정하고 있어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¹⁹²⁾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인원과 운영비가 조정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의 심의 결과도 함께 반영되므로 설령 목표인원과 운영비가 변경되어도 성과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하기 곤란하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동 사업에서의 RSC별 실적 편차를 해소하고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RSC의 특성에 따른 성과평가를 활성화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등에 명시하며, 환류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92) 2023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1차 공모 공고(2022.12.1.)

2-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효율화 필요

가. 현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2022년 수정 계획액은 3,206억 1,500만원이며, 고용노동부는 이 중 2,88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20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내일배움카드 (고보)	798,296	838,296	130	838,426	755,679	76	82,670	832,296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350,615	320,615	-	320,615	288,540	-	32,075	464,833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서는 ①국가 경제의 기간(其間)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②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③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등을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직종에 대한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2022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개요]

사업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기간 (재원)	1997~계속 (고용보험기금)				
개요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내에서 5년간				
근로조건	해당 없음				
지원수준	훈련비 전액 지원(1회) 및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목표	64,227명 지원 목표, 현액기준				
목표달성	총 48,782 지원 달성(실시인원)				
운영체계	훈련과정 심사 계획 공고 고용부·심평원 ⇒ 훈련과정 선정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고용센터 ⇒ 훈련 실시 훈련생· 훈련기관 ⇒ 훈련비 등 지급 고용센터				
부정수급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훈련품질관리센터의 정기·수기 감독 실시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의 경우 정보통신 등 일부 훈련과정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개설 시 사업 특성에 맞게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은 특정한 산업 분야에 특화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참여자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81개의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을 선정하여 훈련과정을 선정하는데, 이 중 정보통신 분야의 13개 직종의 경우 그 훈련과정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¹⁹³⁾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보통신’ 대분류에는 총 13개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설비,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정보시스템구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 운영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3)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내역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81개)]

대분류	기간산업 직종(28개)	전략산업 직종(19개)	서비스산업 직종(34개)
경영·회계·사무(3)			물류관리, 핀테크, 기술문 서작성가 (3)
교육·자연· 사회과학(1)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5)			디지털디자인, 공공디자인, 게임콘텐츠 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 (5)
이용·숙박·여 행·오락·스포 츠(1)			국제관광마케팅 (1)
건설 (11)	건축목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가스설비시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철도 안전 (7)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 건설, 플랜트설비 (3)	BIM (1)
기계 (18)	기계설계제작, 생산기계,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터), 금형, 선반(CNC선반), 열냉동 기계, 기계조립 및 시스템 제어, 측정 (10)	자동차정비(새시·엔진·장 치), 자동차튜닝, 영상촬영 영드론조종 (3)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 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드론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5)
재료(2)	특수용접 (1)	품질관리기술자 (1)	
섬유·의복(2)	염색가공 (1)		스마트의류 (1)
전기·전자 (10)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 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 (개발·생산), 전자시스템제 어, 전기시스템제어 (6)	LED응용, 반도체장비설 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 이터, 3D프린터 운용 (4)	
정보통신 (13)	정보통신설비 (1)	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 어프로그래머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 영), 디지털컨버전스, 제 품SW구축, 스마트웹&콘 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 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 문가, AI 활용 소프트웨 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9)
인쇄·목재· 가구·공예(4)	특수인쇄 (1)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대분류	기간산업 직종(28개)	전략산업 직종(19개)	서비스산업 직종(34개)
환경·에너지·안전 (9)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 (1)	생태복원·관리, 기후변화 대응관리, 녹색순환자원 관리, 스마트물관리, 토양·지하수관리, 소음진동 관리, 환경보건관리(7)
농림·수산 (2)		종자생산·유통, 스마트팜 구축 (2)	

자료: 고용노동부

이를 실제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서 2022년 개설된 훈련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역시 VR·AR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 AI 활용, 클라우드 관리 등 거의 유사한 영역에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 간 훈련과정 개설 직종 비교]

구분	훈련과정 개설 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정보통신설비, 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3D프린터운용,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디지털 컨버전스, 로봇시스템인테그레이터, 반도체장비 설비, 빅데이터 UI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산업 IoT 관리, 산업용로봇제어, 스마트웹&콘텐츠개발, 스마트팩토리 설계, 증강현실, 클라우드운영관리, 핀테크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실제로 동 사업과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간의 2022년 실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유사한 분야에서 훈련 과정 운영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사업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총 694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였고,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서는 335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였다. 정보통신 분야 등 중첩되는 직종에서 개설된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14,334명이 훈련을 실시하였고,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22,394명이 훈련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직종에 따른 훈련 실적 현황]

(단위: 개, 건, 명)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운영 과정수	운영 회차수	실시 인원	운영 과정수	운영 회차수	실시 인원
산업응용로봇제어	3	3	43	5	5	81
반도체장비설비	0	0	0	2	32	612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43	49	707	16	33	1,432
스마트웹&콘텐츠개발	132	138	2,829	24	59	2,431
디지털컨버전스	355	364	7,879	44	97	2,284
핀테크	3	4	67	11	26	603
빅데이터 전문가	33	36	663	42	170	3,705
사물인터넷	6	7	102	16	29	583
증강현실	0	0	0	3	11	205
홈IoT 관리	0	0	0	1	2	40
산업IoT 관리	0	0	0	1	2	35
클라우드 운영 관리	21	21	372	29	86	2,560
빅데이터 분석	8	8	183	33	84	2,237
빅데이터 UI 전문가	22	22	416	6	15	359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23	24	501	74	186	4,446
VR/AR 콘텐츠 개발	2	3	58	14	28	533
스마트팩토리 설계	4	4	36	5	5	60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1	1	6	5	8	136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0	0	0	2	2	33
3D프린터 운용	38	46	472	2	2	19
합계	694	730	14,334	335	882	22,394

주. 2022년 훈련 실적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서 훈련과정이 1개 이상 개설되고 실시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발췌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동 사업의 경우 22년 결산 결과 300억원의 감액(자체변경, '22.10.)에도 불구하고 수정 계획액 3,206억 1,500만원 중 320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러한 실적 미달에는 이와 같은 직종에서의 일부 중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⁴⁾

194)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국기 예산의 불용에 KDT 훈련과의 일부 직종 중첩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10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KDT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물량을 산출하였다는 입장이나, 동 보고서에서도 RSC 및 ISC¹⁹⁵⁾의 “훈련수요 및 공급 조정”에 대한 임무와 책임이 모호하고, 의견 수렴의 한계로 인해 지역과 산업계의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⁹⁶⁾

특히 동 사업은 2023년 전년 대비 45% 가량 증액된 4,648억 3,300만원의 계획액을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업 참여 활성화와 집행의 원활을 위하여 타 사업과 일부 중첩된 영역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나, 이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전반적인 국기훈련 규모의 축소 및 부정확한 수요·공급 예측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19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 Regional Skills Council) 및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ISC: Industrial Skills Council)

19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선정방안」, 2022, 109-110면.

III

개별 사업 분석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적절한 예산 규모 추계할 필요

가. 현 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¹⁹⁸⁾은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1조 197억원 중 6,881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3,315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0,659,4	10,659,4	-	△2,689,4	10,197,0	688,184	-	331,516	10,764,0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경우 예년 대비 2022년 예산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실태분석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들 취약계층의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198) 코드: 일반회계 1231-300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이 2012년 7월 실시되었으며, 현재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에서는 수혜자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및 사업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¹⁹⁹⁾

동 사업에서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가입 촉진 등 사업을 총괄하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은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역 및 보험료 고지내역 확정·보고, 사업집행을 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감액고지, 수납 및 기금보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동 사업의 경우 실업크레딧 사업으로 268억 9,4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이 감액되었음에도 3,315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22년 계획 인원은 근로자 106만 7,600명, 예술인 1만 5,200명, 노무제공자 23만 7,300명이었으나, 같은 해 실적에 따르면 지원 인원은 근로자 76만 8,300명, 예술인 2,200명, 노무제공자 8,700명에 불과하였다.

199)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2022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명, 백만원)

연도	지원대상	인원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8	근로자	22,538	22,106	872,935	872,935
'19	근로자	23,698	26,541	1,317,020	1,317,020
'20	근로자	27,421	27,400	1,124,247	1,293,847
'21	근로자	8,107	8,020	717,472	749,432
	예술인	350	15	9,677	189
	노무제공자	4,300	52	59,443	260
'22	근로자	10,676	7,683	944,220	660,291
	예술인	152	22	3,683	319
	노무제공자	2,373	87	47,375	2,185

주.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증가를 예상하여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21년 대비 29.2%(2,356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1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²⁰⁰⁾(지원가능대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2년 계획 인원을 설정한 세부 근거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한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체 예술인 규모, 소득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2018년 실태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인원 역시 사업에서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연도별로 배분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다계상될 우려가 있다.²⁰¹⁾

200)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30만원 미만 근로자

201)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의 경우 2020. 12월부터, 노무제공자의 경우 2021. 7월부터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되었으므로 2022년 예산편성 당시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2018년, 2020년 실태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인원도 시행 초기라 축적된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계획 인원 산출 근거]

구분	근거
근로자	106.7만명(일반근로자: 91.2만명, 일용근로자: 15.5만명)
일반근로자 (91.2만명)	- (고용보험) 지원가능 피보험자수 222만명 중 두루누리 지원자비율 19.8%인 43.9만명 - (국민연금) 지원가능 피보험자수 227만명 중 두루누리 지원자비율 20.8%인 47.3만명
일용근로자 (15.5만명)	- '22년 일용근로자 지원인원 순인원 42.9만명은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315만명 중 ①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 비율(64.5%), ② 소득분포 220만원 미만자(63.7%), ③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없는 비율(36.9%), ④ 직권가입률(90%) 등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고, 연간 지원인원 순인원 42.9만명을 월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15.5만명에 해당됨 * 두루누리 지원인원은 월평균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음
예술인 (1.5만명)	- 전체 예술인 규모는 약 17.8만 명 * '18년 예술인 실태조사('17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1개월 이상 계약 체결하고 17.8만명 중 월보수액이 50만 원~230만 원 미만 : 3.5만 명 * '19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관련 기초조사 등(문체부) - 10인미만 종사비율(41.3%*)을 반영 * '21.6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중 10인미만 종사비율
노무제공자 (23.7만명)	-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고용보험적용대상 : 153.3만명 * 고용보험 적용 직종 실태조사('18년 한국노동연구원, '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월보수 80~230만원 미만 비율(50%), 10인 미만 사업 종사비율 및 22년 전용에 따른 변경 반영

주1. 두루누리 지원자 비율은 예산편성 직전 사업 실시 연도까지의 통계를 근거로 지원가능 피보험자 중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비중을 의미함

주2. 노무제공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뜻함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임금 수준을 완화하고(월 230만원→260만원), 신규 가입자 요건도 완화하며²⁰²⁾,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하였다. 특히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지원 대상 변천을 살펴보면, 동 사업이 꾸준히

202) 종전에는 사회보험 취득이력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6개월로 완화되었다.

요건을 완화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및 지원수준 변천]

구분	지원기준	지원수준	
12년	월보수 35~125만원 미만	35만원~105만원 미만: 1/2 지원 105만원~125만원 미만: 1/3 지원	
13년	월보수 130만원 미만	1~3월	110만원 미만: 1/2 지원 11만원~130만원 미만: 1/3 지원
		4~12월	130만원 미만: 1/2 일괄지원
14년	월보수 135만원 미만	1/2 일괄지원	
15년	월보수 140만원 미만		
16~17년	월보수 14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 차등지원	
18년	월보수 19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19년	월보수 210만원 미만	기가입자 40% 최대지원기한 36개월	
20년	월보수 215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기가입자 30%	
21년	월보수 220만원 미만	(10인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22년	월보수 230만원 미만	80% 기가입자 '21년부터 지원중단	
23년	월보수 260만원 미만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자 고용보험 료 부담분 80%	

자료: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2023, 2면에서 재작성

그런데 이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 대상 요건의 완화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규모(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효과가 있었는지 등 동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잠재적·장래적 가입자(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 효과 및 향후 계획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변화가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에 미친 영향 및 동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향후 적절한 지원대상 및 예산규모를 추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지원대상 기준이 실질적 사각지대(다음 표 중 ①미가입자에 해당되는 영역) 중 어느 정도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사업 효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구조]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③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②적용제외	적용대상	실제 가입자	①미가입자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현재 고용노동부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²⁰³⁾ 및 사업을 통해 보험가입·지원을 받게 되는 수혜자에 대한 자료, 피보험자 수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정확한 지원대상 및 적절한 예산규모 추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에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서 사업의 지원현황, 성과 등 실태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정 예산 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203) 통계청에서는 매년 사회보험가입률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사회보험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수에 포함되어 있어, 고용노동부는 가입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재산출하여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면밀히 목표를 추계할 필요

가. 현 황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²⁰⁵⁾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실시·정착시키려는 사업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예산 20억 9,700만원 중 5억 4,500만원만 집행하고 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7,2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2,097	2,097	-	-	2,097	545	80	1,472	7,58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80%)를 지원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사업,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제공기관 인증, 제공기관 관리·감독 업무 수행, 컨설팅 지원 및 제도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사업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205) 코드: 일반회계 1062-300

[2022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기간(재원)	2022~2024(일반회계)
개요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22. 6. 16.) → 정부인증제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규정
지원대상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기관(사업주) 및 소속 직접 고용 가사근로자
지원기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최대 3년
지원요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①월평균보수 230만원('23년 260만원) 미만, ②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③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23년 4,300만원) 미만
지원수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80% 지원
지원목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총 2,589명 지원 목표
목표달성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325명, 국민연금 308명 지원 달성(달성률 12.5%)

주. 세부사업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이나, 내역사업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은 한시사업(22~24)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사업주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목표치를 면밀히 추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²⁰⁶⁾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운영',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예산은 각각 16억 7,500만원, 1억 2,900만원, 2억 9,300만원이다. 예산의 불용은 대부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사업에서 발생하였다.

20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6.16. 시행) 제18조제2항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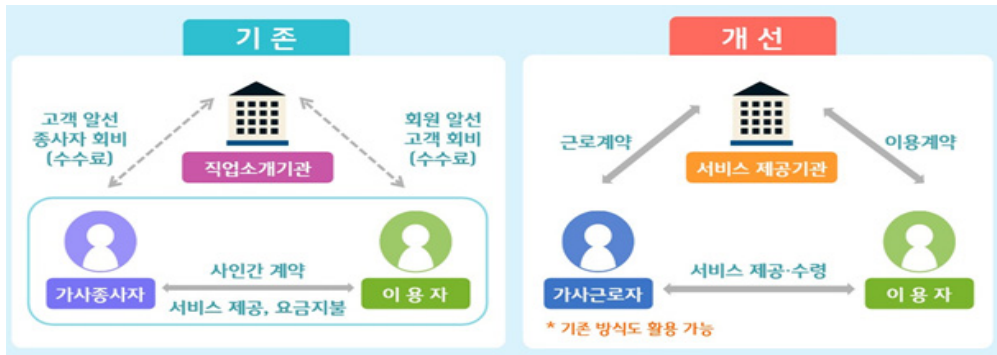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²⁰⁷⁾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은 2021.6.15.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6.16.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신설된 사업이다. 기존 가사근로자 시장은 주로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가사근로자가 직접 사인과 계약하는 구조였으나, 동 법률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⁰⁸⁾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계]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서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급된다. 먼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이다.

207) 다만, 모든 가사근로자가 여기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의 미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8) 그 외에도 동 법률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가사근로자 시장 활성화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 운영체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정부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여부 확인	보험료*(보험료 지원금 공제 금액) 부과 * 보험료의 20%	부과된 보험료 납부	보험료 지원금* 공단 지급 * 보험료의 80%	사업주 부과 보험료와 정부 보험료 지원금의 납부 확인 (보험료 10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경우, 2022년 2,589명의 가사근로자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당해 실적은 고용보험 325명, 국민연금 308명 지원(총 633명)으로 달성률은 목표 대비 12.5%에 불과하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사서비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은 39개소에 불과하고, 동 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 역시 390여 명에 불과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사업 목표]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2	'23	'24	'25	'26	'27
지원인원	2,589	6,357	1,209	1,089	738	351
사회보험료	1,658	5,314	1,429	1,447	883	283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사업 실적과 사업주들의 참여 저조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가사근로자의 직접고용 등 고용전환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노동비용은 대략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32.9%+ α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²⁰⁹⁾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비, 배상책임보험료, 행정인력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부담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²¹⁰⁾

반면, 동 사업에 따라 사업주가 얻게 되는 혜택은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209) 해당 수치는 근로관계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퇴직금, 유급 주휴수당, 대기수당 등을 고려한 것으로,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종사자가 많은 기관일수록 대기 근로에 따른 비용이 커져 α 값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음. 연차 수당은 유급 휴가를 100% 소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가사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연구」, 2021, pp.43-45)

210) 부가가치세도 고려할 수 있으나, 동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는 면세하여 주고 있다.

80%를 지원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10.4%) 중 약 4.56%를 지급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2023년 3월 기준 이미 인증을 받은 기관 39개를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기관(근로자 수 87명) 외 32개 기관은 모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가사서비스 시장에서의 다른 업체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세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동 사업의 참여로 인해 받게 되는 비용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규모]

(단위: 개)

구분	10인 미만	20인 미만	30인 미만	40인 미만	40인 이상	합계
업체 수	32	3	2	-	2	39

주. 2023년 3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동 사업에서의 목표치는 부정확하게 산출된 측면이 있다. 우선 2022년 목표치인 2,589명의 도출 근거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 통계청에 따른 가사 근로자 전체 수(13만 7,000명) 중 중 20%인 2만 7,400명을 가사근로자 전환 대상으로 삼고, 이를 5년에 나누어 연간 약 5,480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²¹¹⁾²¹²⁾

그러나 5년의 기간을 두고 20%의 수치를 설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며, 사업 시행 전 실시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특정 연도(기간)에 따른 달성 인원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실제 잠재적 사업수혜자 중 어느 정도가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추계는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211) 2022년 동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법률 시행일이 6월 16일이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경우 약 6개월분만 반영되었다.

212) 동 사업의 2023년 사업 목표는 6,357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2022년과 달리 12개월분로 편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목표치이다.

[20~23년 연도별 전체 가사종사자 현황]

(단위: 천명)

시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전체	137	127	107
남성	4	3	1
여성	133	124	106

주.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951. 가사 및 육아도우미)' 기준으로 추출한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동 사업에서는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참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에서의 대상자가 되는 가사근로자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현황(업체 수, 규모별 현황 및 고용 상황 등) 파악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직업소개소 현황을 대략 추정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²¹³⁾ 실제로 2022년 8월 실시된 정책용역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추정한 결과값의 모호함을 제시하면서, 향후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문 초안을 제안하고 있다.²¹⁴⁾ 하지만 해당 연구용역보고서에 제시한 실태조사는 올해 하반기에나 마무리될 것이어서 이는 2024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동 사업에서의 사업주의 참여를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 목표를 설정할 때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13)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소의 수를 파악한 후,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중 가사서비스를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20% 추정된다는 선행연구(한국노동연구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연구”, 2022)에 따라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 업체 수를 약 3,000여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14) 한국노동연구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연구”, 2022

가. 현 황

중장년층취업지원²¹⁶⁾ 사업은 중장년에 대한 직업지도, 생애설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아전직 지원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안착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예산 213억 600만원 중 210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장년층 취업지원	21,306	21,306	-	-	21,306	21,084	-	222	22,28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장년고용연구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역사업별 성과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경우 취업진수 18만 5,273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의 경우 생애경력설계 41,451명 및 취업 53,284명,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교육 399명,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의 경우 컨설팅 420개소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216) 코드: 일반회계 1340-300

[2020~2022년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실적 현황]

연도	내역사업명	성과목표	추진실적
2020	고령자인재은행	취업 222,036건 (상용 7,185명, 일용 213,687건)	취업 190,555건 (상용 7,017명, 일용 183,538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 35,000명	생애경력설계 23,334명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담당자 교육 250명	담당자 교육 316명
	장년고용연구지원	용역 4회	용역 4회
2021	고령자인재은행	취업 202,950건 (상용 6,663명, 일용 196,287건)	취업 189,740건 (상용 7,403명, 일용 182,337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 40,000명 취업 40,000명	생애경력설계 37,984명 취업 37,984명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담당자 교육 250명	담당자 교육 169명
	장년고용연구지원	용역 4회	용역 6회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제도설계 컨설팅 450개소	제도설계 컨설팅 302개소
2022	고령자인재은행	취업건수 202,951건 (상용 6,683명, 일용 196,268건)	취업건수 185,273건 (상용 7,268명, 일용 178,005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 40,000명, 취업 40,000명	생애경력설계 41,451명, 취업 53,284명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담당자 교육 250명	담당자 교육 399명
	장년고용연구지원	용역 4회	용역 6회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제도설계 컨설팅 450개소	제도설계 컨설팅 420개소

자료: 고용노동부

3-1.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개선 필요

가. 현황

‘고령자인재은행’ 내역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현액은 36억 6,700만원이며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320-01) 35억 7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억 6,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에서의 실집행액은 36억 8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장년층취업지원	21,306	21,306	-	-	21,306	21,084	-	222
고령자인재은행	3,667	3,667	-	-	3,667	3,608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은 기존 취업지원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고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준 전국 42개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 중에 있다.²¹⁷⁾ 동 사업에서의 인재은행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참여자(구직자)를 모집하며,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구인처를 발굴한다.

217) 같은 세부사업 내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3~) 내역사업의 경우, 40대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임. 다만,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모두 운영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전국 42개 고령자인재은행 및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개요]

사업명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기간 (재원)	1993~ (일반회계)
개요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전국 42개 고령자인재은행
지원기간	1.1.~12.31.
지원수준	운영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목표	취업건수 202,951건 (상용 6,683명, 일용 196,268건)
목표달성	취업건수 185,273건 (상용 7,268명, 일용 178,005건)
운영체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intra.gosims.go.kr)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연 2회)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경우 추후 참여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취업지원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경우 중장년층 이상 구직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 구직자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으며, 간병이나 가사, 육아 등 서비스의 일용직으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기준 60~64세가 가장 많으며, 여성이 18만 1,165명으로 남성(4,108명)에 비하여 40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수혜자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령별 수혜자					성별 수혜자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남성	여성
'20년	190,555	21,627	54,116	68,369	46,443	190,555	5,580	184,975
'21년	189,740	17,148	46,185	69,732	56,675	189,740	5,550	184,190
'22년	185,273	13,732	38,463	71,058	62,020	185,273	4,108	181,165

자료: 고용노동부

구체적으로 실제 업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상용취업에서는 돌봄 서비스직이 2,803건으로 가장 많고, 일용취업에서는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이 14만 9,754건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 실적의 대부분은 일용 취업건수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참여자 취업 업종별 현황]

(단위: 건)

취업알선 직종분류	상용취업건수 기준			일용취업건수 기준		
	22년	21년	20년	22년	21년	20년
음식 서비스직	454	540	466	3,641	2,965	2,823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803	2,667	2,293	20,624	24,792	21,293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58	1,432	1,575	149,754	148,949	154,391
전 체	7,268	7,403	7,017	178,005	182,337	183,538

주: 직종분류는 중분류 기준이며 일부 분류만 발췌하여 기재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별 현황을 살펴 보면, 동 사업에서의 취업자 임금수준 역시 월 200만원~239만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도 임금수준별 구인 및 취업건수]

(단위: 만원, 건)

임금 수준	149 이하	150~199	200~219	220~239	240~249	250~259	260~279	280~299	300~319	320~339	340 이상
구인 건수	3,370	25,736	112,981	20,141	1,940	2,573	10,548	6,984	1,705	1,075	1,440
취업 건수	1,381	25,572	114,201	29,080	2,295	2,702	10,419	6,915	1,669	978	1,443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층 노동 시장의 특성상 상용의 고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상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구직건

수, 취업건수 및 고객만족도나 업무협조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고, 취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기준은 상용직을 일용직에 비하여 다소 가중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따로 없는 실정이다.²¹⁸⁾ 뿐만 아니라 상용직이 곧 일반적인 의미의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만으로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동 사업의 경우 운영기관이 C등급을 받게 되면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선방안의 이행(준수)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이 없어 해당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성과평가 기준]

지표	2022년 세부지표
정량 평가 (80)	○ 구직건수(10점) * 워크넷 구직등록 건수로 일용은 3개월내 중복자 제거 ○ 취업건수(30점) - 취업 마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 부여 ■ 상담알선, 행사참여, 알선충족(system), 외부구인정보소개, 컨설팅 제공(이상 3점) ■ 본인취업 등(1점) - 고용형태별 가중치 적용(상용(3.0), 일용(0.3))하여 환산 ○ 목표 초과 달성률(12점) ■ 상용(8점): 110%이상 8점, 100%이상 7점, 90%이상 6점, 75%이상 5점, 60%이상 4점, 45%이상 3점, 30%이상 2점 ■ 일용(4점): 110%이상 4점, 100%이상 3점, 80%이상 2점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적(28점)(평가기간내 참여·취업자에 한해 인정) - 프로그램 수료자 중 취업률(15점) ■ 90%이상 15점, 85%이상 13점, 80%이상 11점, 75%이상 10점, 70%이상 9점, 65%이상 8점, 60%이상 7점, 55%이상 5점, 50%이상 3점, 40%이상 1점 -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수료율(8점) ■ 95%이상 8점, 85%이상 6점, 75%이상 4점, 65%이상 2점 - 과정당 20명 이상 참여율(5점) ■ 100% 5점, 95%이상 3점, 90%이상 1점 - 수료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점 3점(신규)
	○ 고객만족도(10점) ○ 업무연계 및 협조(10점) - 고용센터와 업무협조 정도(6점), 체크리스트(지도점검, 민원발생 빈도 등)(4점)
정성 평가 (20)	

자료: 고용노동부

218) 일용직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뜻하고, 상용직은 1개월 이상이거나 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취업 이후의 고용유지율이나 임금 수준, 이직에 따른 직전 일자리와의 비교 등 다양한 질적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에서 취업취약계층이 민간 고용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속한 취업이 가능한 일용직 등의 취업지원도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처음부터 사업의 목적과 구조를 일용직 또는 가사 서비스에서의 취업 등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 취업 알선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으로는 취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동 사업에서는 이미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참여자 중 일부 지원자를 선별하여 집중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으나,²¹⁹⁾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2015년 이후 참여인원 및 취업자수 등이 하락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적 현황('15~'22)]

(단위: 명, %)

연도	과정 수	계획 인원	참여 인원	모집률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자수
2015	103	2,060	1,997	96.9	1,801	90.2	845
2016	83	1,660	1,615	97.3	1,560	96.6	753
2017	92	1,840	1,794	97.5	1,710	95.6	877
2018	80	1,600	1,525	95.3	1,458	95.6	761
2019	75	1,500	1,503	100.2	1,440	95.8	825
2020	67	1,340	1,266	94.5	1,209	95.5	488
2021	72	1,440	1,304	90.6	1,263	96.9	694
2022	71	1,420	1,372	96.6	1,293	94.5	649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에서 추후 참여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취업지원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19) 참여 신청자 중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 취업의욕고취프로그램,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집중 취업알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자인재은행 기관별로 1~3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2년 지침)

둘째,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경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취업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가사, 간병 육아)이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직접일자리(노노케어),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등과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동 사업 내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에서는 전국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60세 이상 인력을 대상으로 노인 상담, 알선 취업, 사후관리 등 민간취업 알선, 구직희망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소양 교육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동 사업에서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영역이 중첩될 소지가 있다.

[중장년층 관련 지원 사업과의 비교]

구분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서울	부산	광주
지원 대상	50세 이상 구직자	65세 이상 (60세 이상)	50~65세	50~69세	45~64세
서비스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취업능 력향상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 스	노인의 경력을 활 용,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 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 제공 (노인 상담, 알선 취업, 사후관리 등 민간취업 알선)	<50+캠퍼스> 일자리, 교 육, 생애설 계, 커뮤니 티, 연구사업 등 <50+센터> 교육사업 등	일자리, 사회 공헌활동, 교 육 등	일·여가·건강· 재무·관계 등 생애 재설계, 취업코칭 서비 스, 사회공헌 활동
특징	취업지원서비스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교육사업 중심	교육사업 중심	교육사업 중심
사업 수행기 관	고령자인재은행 으로 지정된 비 영리법인 : '22 년 42개	노인복지관 (194개 대한노인 회 지원센터)	서울시 50플 러스 재단	민간 위탁	빛고을50+센 터

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사회서비스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대상으로 () 안에 표기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실제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인재은행 42개소 중 7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이 타 직업알선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타 센터 등에서 알선을 받아 취업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참여 현황]

연번	기관명	중장년(또는 고령자) 관련 사업 참여 여부	
		고용노동부 사업	타부처 사업
1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	노인일자리사업
2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일자리사업
3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일자리사업
4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노인일자리사업
5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사업
6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노인일자리사업
7	순천YWCA	.	노인일자리사업
8	(사)경남고용복지센터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
9	대구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
10	여수YWCA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
11	서귀포YWCA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

주.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경영전략이나 인사·노무·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취업하는 50~69세의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경우 타 부처 사업 및 지자체 사업 등과 비교하여 내용상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전달의 중복 및 예산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창업지원서비스 개선 필요

가. 현황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역사업은 40세 이상 중장년(재직자 및 구직자)이 체계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단계부터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창업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현액은 129억 4,400만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이며, 129억 4,400만원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장년층취업지원	21,306	21,306	-	-	21,306	21,084	-	222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12,944	12,944	-	-	12,944	12,944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서는 중장년(40세 이상 재직자 및 퇴직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한다.

[2022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개요]

사업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기간 (재원)	2013~ (일반회계)
개요	40세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노사발전재단 12개소, 지역 경총·상의 등 민간 19개소)
지원기간	1.1.~12.31.
지원수준	운영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목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만명, 취업 4만명
목표달성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1,451명, 취업 53,284명
운영체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지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노사발전재단센터에 12개 등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 279명의 인력이 취업, 생애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중장년희망센터별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연 번	운영기관명	인원	보조금	실적			
				취업	생애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1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8	490	1,843	986	85	86
2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8	440	1,639	993	88	81
3	경기동부상공회의소	7	454	2,122	958	81	84
4	고양상공회의소	7	457	1,666	1,335	87	81
5	파주상공회의소	9	460	1,359	951	89	88
6	안산상공회의소	8	483	1,496	978	85	80
7	평택상공회의소	7	454	963	969	84	81
8	부산경영자총협회	11	480	2,175	1,034	89	89
9	경남경영자총협회	11	578	2,566	1,022	88	79
10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7	447	1,637	955	100	97
11	(사)한국커리어	7	450	1,836	1,053	89	88
12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	8	450	1,995	953	87	86
13	경북경영자총협회	9	516	1,720	928	86	82
14	광주경영자총협회	8	479	1,770	1,014	91	84
15	목포상공회의소	8	448	1,032	950	81	85
16	전남경영자총협회	7	440	1,538	1,023	100	87
17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	7	447	1,436	942	94	85
18	충북경영자총협회	17	1,074	1,720	1,477	157	86
19	충남북부상공회의소	7	467	1,826	984	100	84
20	노사발전재단센터 (12개소)	118	3,430	20,945	21,946	6,089	769
합계		279	12,944	53,284	41,451	7,850	2,382

자료: 고용노동부

같은 세부사업 내의 ‘고령자인재은행’ 내역사업과 비교하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은 40대 이상의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생애경력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비교]

구분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목적	고용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고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40세 이상 재직시부터 체계적 생애경력설계를 통한 인생후반부 설계 지원
지원대상	50세 이상 구직자	40세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주 이용자	60세 이상(71.8%), 여성(76.4%)	4~50대(55.6%), 60대 이상 (44.3%) 남성(60.1%)
서비스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생애경력설계지원, 전직지원, 재취업지원 등 종합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등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 전국 40개소	노사발전재단 센터 12개소, 경총, 상의 등 민간센터 19개소 전국 31개소
소재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 위주	대도시 등 광역 자치단체 위주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의 경우 취·창업지원 중 창업지원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창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전문 지원기관의 내실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프로세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희망일자리센터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희망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각 운영기관은 희망센터를 통하여 기초상담,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전직 역량강화, 취·창업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업무 프로세스]

	①기초상담 경력진단 (자가진단)	②생애 경력설계	③재취업·전 직 역량 강화	④취·창업 지원	⑤사후관리
	·희망 진로· 서비스 등 확인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1:1상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직업체험 과정 ·동아리 운영	·취업알선 ·창업 등 지원 및 연계	·근로여부 ·서비스 효과 등 파악
재직자	●	●			●
구직·이 직예정자	●	●	●	●	●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지침」

동 사업에서는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취업알선 뿐 아니라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특히 창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는 ①창업에 관심있는 대상자에게 창업 관련 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전직스쿨 창업 프로그램), ②타 창업 전문기관에 참여자를 연계하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직스쿨 창업 프로그램은 창업과 관련한 1일 정도의 단기교육에 불과하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동 사업에서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아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창업 유지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후 관리 평가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2022년 창업 관련 단기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단위: 명)

연 번	기관명	과 정 명	교육기간	참여 인원	수료 인원
1	노사발전 재단	기술창업의 시작과 정부지원제도 활용법	2022.1.13	20	20
2	노사발전 재단	기술창업의 실제(실제 사례 공유)	2022.1.19	19	19
3	평택상공 회의소	2022년 창업 특강	2022.10.20	25	25
4	노사발전 재단	기술창업 아이템 선정 노하우	2022.2.16	26	26
5	노사발전 재단	기술창업 준비_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2.23	29	29
6	노사발전 재단	기술창업 성공스토리	2022.3.16	23	23
7	노사발전 재단	중장년 창업 아이템 및 창업지원사업 활용	2022.4.27	31	31
8	노사발전 재단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절차와 지원제도 이해	2022.4.27	20	20
9	전경련중 소기업 협력센터	신직업탐구	2022.4.28.	30	30
10	노사발전 재단	창직 입문과정_KB CCC 연계과정	2022.5.13	14	14
11	노사발전 재단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절차와 지원제도의 이해	2022.5.19	19	19
12	고양상공 회의소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2022.5.2.~ 5.11	17	14
13	노사발전 재단	중장년 성공창업을 위한 첫 걸음(1차)	2022.5.30	34	34
14	노사발전 재단	창업 가치 인식 제고 및 사례 공유	2022.6.10	23	23
15	노사발전 재단	중장년 성공창업을 위한 첫 걸음(2차)	2022.6.10	25	25
16	노사발전 재단	창업 입문과정_KB CCC 연계과정	2022.6.10	11	11
17	노사발전 재단	기술창업이뭔가요?	2022.6.22	32	32
18	노사발전 재단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사업화 추진 전략	2022.6.3	42	42
19	목포상공 회의소	취창업체험프로그램(피자,치킨)	2022.7.11.	10	10
20	부산경총	2022 성공창업특강	2022.7.13.	18	18
21	노사발전 재단	창업지원사업 활용&기술창업 성공 스토리	2022.7.27	38	38
22	고양상공 회의소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2022.7.5.~ 7.14.	20	14
23	전경련중 소기업 협력센터	창업의 이해와 준비	2022.8.18.	37	37
계	-	-		563	554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다른 창업 지원 서비스인 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하여도 특정 기관에 알선하여 참여한 인원 수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연계 이후의 창업 여부나 단기교육 이수 등의 실적과 연계된 지표는 집계·평가되고 있지 아니하다.

[창업 전문기관 연계 실적]

(단위: 명)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참여인원
1	성북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022년 스타트업 부트캠프	17
2	수성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022년 스타트업 부트캠프	5
3	마포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2022년 마포스타트 UP! 스케일 UP!	2
4	한국폴리텍대학	가족공예&인터넷 창업	17
5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2022년 여성재취업 라탄공예&인터넷 창업	8
6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2022년 여성재취업 라탄공예&인터넷 창업	18
7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플라워샵 창업	16
8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K-STARTUP PC활용 교육	11
9	○○학원 창원중등센터	카페창업훈련과정(일경험창업멘토링)	1
계			95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서는 참여자 중 창업 여부를 조사하여 ‘창업자 수’를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2022년 269명), 여기서의 창업이 동 사업에서의 지원 서비스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개인적인 요인이나 타 기관의 지원으로 창업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영기관별 창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전혀 개설하지 아니한 기관에서도 창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 내용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2년 운영기관별 창업자 현황]

(단위: 명)

운영기관 명	창업자 수
경기동부상공회의소	28
경남경영자총협회	42
경북경영자총협회	9
경북경영자총협회_경북동부	14
고양상공회의소	9
광주경영자총협회	29
노사발전재단	10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1
목포상공회의소	2
부산경영자총협회	47
안산상공회의소	9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30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5
전남경영자총협회	2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
충북경영자총협회	5
파주상공회의소 파주	2
평택상공회의소	6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4
○○커리어	3
계	269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동 사업에서의 전직스쿨 창업프로그램 수료자 554명 중 실제 창업까지 성공한 인원은 7명, 창업 전문기관 연계자 95명 중 창업을 한 인원은 6명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실제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업종에서 창업하였다거나, 창업 이후의 유지율 등의 자료가 창업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창업자 수 현황]

(단위: 명)

	전직스쿨 창업프로그램	창업 전문기관 연계
2022년	7 (554)	6 (95)
2021년	2 (287)	24 (100)

주. ()는 전체 참여 인원(실적)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따라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사업의 경우, 현재의 창업지원서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기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창업에서의 최종적인 효과성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창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전문 지원기관의 내실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3.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에서의 고령자인재은행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

가. 현황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1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장년층취업지원	21,306	21,306	-	-	21,306	21,084	-	222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100	100	-	-	100	100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교육은 1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인력에 비하여 적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같은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동 사업의 2022년 교육 실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육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경우 11월 25일에 1회(6시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실시 당시의 교재를 살펴보면, ‘고령자인재은행 정책방향’, ‘해결중심 상담 기법’, ‘취업지원 기관사례 발표’, ‘구인처 발굴 및 관리 노하

우' 등의 강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²²⁰⁾

[2022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개요]

(단위: 명)

일시	장소	방식	대상	내용	시간	신청	참석	수료
11.16.	zoom	비대면	중장년센터	• 중장년센터 프로그램 재구조화 내용 • 모듈별 교수법	3H	139	134	120
11.18.					3H	77	76	75
11.25	대전 동국 제강 그룹 연수원	대면	고령자 인재은행	• 해결중심 상담기법 • 취업지원 우수사례 공유 • 고령자노동시장 구인개척 방안 등	6H	47	42	42
11.29. - 30.			중장년센터 (재단) 1차	• '23 재단센터 개편방향 • 신규 특화사업 운영 사례(방안) - 중장년 내일 패키지 - 산업별 특화 서비스 - 기초역량 증진 프로그램	12H	53	47	43
12.1. - 2.			중장년센터 (재단) 2차	• 고령자 적합일자리 발굴 - 계속고용 지원금 컨설팅 등 • 구인개척 및 관리 방법	12H	39	35	33
11.29. - 30.			중장년센터 (민간) 1차	• '23 민간센터 개편방향 • 고용센터 방문 유형별 서비스 사례 (방안) • 유형별 프로그램 설계, 운영방안	12H	55	49	48
12.1. - 2.			중장년센터 (민간) 2차	• 자체 중장년센터 운영사례 • 구인개척 및 관리 방법 • 재취업지원 컨설팅 전략 • 중장년 정책방향 안내 등	12H	43	40	38
비대면 2회, 대면 5회						455	423	399

자료: 고용노동부

220) 다만, 이 중 '취업지원 기관사례 발표'의 경우 교육 교재상 메모 외에 별다른 강의자료가 없어 실제 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는 각 기관에서의 구두 발표로 진행된 것이어서 별도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규모가 크고, 사업내용의 변경도 잦으며, 특히 '23년 사업 개편에 따라 전체 사업 담당자 교육이 불가피하여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는 입장이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사업과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담당자는 기관에서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사업과 달리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은 목표 실적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22년 11월 25일의 교육에서의 수료 인원은 총 42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2022년 기준 전국 42개 고령자인재은행 인력은 97명이다. 운영기관 1개당 2~3명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인력 중 50% 미만의 담당자가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교육 대상자 규모에 비하여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적은 측면이 있다. 반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전국 31개소 297명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2년 동 사업에서의 수료 인원은 357명이다.

동 사업에 대하여 현재 교육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되고 있으나, 만족도 조사 외에 실제 교육 참여에 따라 역량이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체계나 고령자인재은행 성과평가 시 이를 반영하는 등의 환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참석하기만 하면 100% 수료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서비스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에서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 인력을 확대하며,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인력 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 번	기관명	참여 인력	보조금 교부액	연 번	기관명	참여 인력	보조금 교부액
1	서울중부 여성발전센터	2	75	22	진주YWCA	2	75
2	서울서부 여성발전센터	2	75	23	대구달구벌여성 인력개발센터	3	113
3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	75	24	포항YWCA	2	75
4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2	75	25	한국산업단지공 단 대경권본부	2	75
5	서울북부 여성발전센터	2	75	26	영주시종합사회 복지관	2	75
6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	75	27	안동YMCA	2	75
7	의정부YWCA	3	113	28	광주YWCA	2	80
8	남양주YWCA	3	113	29	노동실업 광주센터	3	113
9	수원YWCA	2	75	30	전주YWCA	2	75
10	평택YWCA	2	75	31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2	75
11	춘천YWCA	2	75	32	익산YWCA	2	75
12	강릉YWCA	2	75	33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3	113
13	속초YWCA	2	75	34	목포YWCA	3	113
14	원주YWCA	2	75	35	순천YWCA	3	113
15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	3	113	36	여수YWCA	3	113
16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	2	75	37	세종YWCA	3	122
17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2	75	38	천안YWCA	3	113
18	실버벨 노인종합복지관	2	75	39	충주YWCA	3	113
19	(사)경남고용복지센터	2	75	40	제천YWCA	3	113
20	울산 YWCA	2	75	41	서귀포YWCA	2	80
21	양산YWCA	2	75	42	제주YWCA	2	80
계						97	3,668

자료: 고용노동부

가. 현 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²²²⁾은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291억 3,100만원이고, 고용노동부는 이 중 28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29,131	29,131	-	-	29,131	28,940	-	191	25,69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세부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동 세부사업은 본래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수행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8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역사업은 2019년 신설되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동 세부사업에 2개의 내역사업(신중년 사회공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이 존재하고 있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은 퇴직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222) 코드: 일반회계 1336-301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였으며, 그 결과 동 세부사업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역사업 1개만 남게 되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의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을 뜻하고, ‘경력형 일자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로 일정 수준의 경력,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즉,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다.²²³⁾ 지자체에서는 직접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간접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22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기간 (재원)	2011~계속 (일반회계)				
개요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 사회가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지원기간	평균 39주(자치단체별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 연차 포함)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자치단체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				
지원목표	('22) 참여인원 5,000명				
목표달성	('22) 3,560명 참여(달성률 71.2%)				
운영체계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자자치단체 선정 (고용노동부) →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수행기관) → 사업수행 및 사업참여 (수행기관, 참여자) → 사업종료 및 참여자 사후관리 (수행기관)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부정수급	지자체별로 매 반기 1회이상 수행기관 지도·점검, 고용부 지방관서는 매년 1회 지도·점검 실시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서의 참여 요건은 통상 연령 및 사업장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타 중장년 대상 지원사업에 비하여 까다롭다. 해당 업무에서의 3년 이상의 경력이나 국가기술자격 보유 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 해당 없이도 선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223) 국고보조율은 50%로,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30%이다.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요건]

-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참여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자격을 취득할 것
 - 다.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의 자격을 보유할 것(워드프로세스 자격 제외)
 - 라. 그 외 가~다의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수요가 많아 참여자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청 선정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주. 각 목에서의 세부적인 요건 또는 예외규정은 일부 생략

자료: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2022)

나. 분석의견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상세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환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으로, 2022년 목표 인원은 5,000명이고 참여 인원은 3,560명으로 인원 기준 달성률은 71.2%로 목표치를 하회하였다. 동 사업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는 경영전략,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등 13개 분야이며, 지자체는 참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분야·수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실적을 살펴보면, 3,560명의 참여자 중 사회서비스 분야(28.3%)가 1,00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13.9%), 교육연구(13%)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별 실적]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051	(100)	2394	(100)	3089	(100)	3560	(100)
사회서비스		160	(7.8)	672	(28.1)	708	(22.9)	1,008	(28.3)
기업지원	경영전략	510	(24.9)	357	(14.9)	457	(14.8)	305	(8.6)
	마케팅홍보	7	(0.3)	55	(2.3)	55	(1.8)	28	(0.8)
	인사노무	0	(0.0)	29	(1.2)	62	(2.0)	36	(1.0)
	재무회계금융	0	(0.0)	55	(2.3)	37	(1.2)	118	(3.3)
문화예술		81	(3.9)	337	(14.1)	455	(14.7)	494	(13.9)
교육연구		157	(7.7)	132	(5.5)	387	(12.5)	462	(13.0)
상담멘토링		177	(8.6)	254	(10.6)	179	(5.8)	342	(9.6)
행정지원		245	(11.9)	89	(3.7)	339	(11.0)	327	(9.2)
IT정보화		0	(0.0)	48	(2.0)	74	(2.4)	48	(1.3)
법률법무		0	(0.0)	0	(0.0)	0	(0.0)	3	(0.1)
외국어		0	(0.0)	17	(0.7)	0	(0.0)	0	(0.0)
기타		714	(34.8)	349	(14.6)	336	(10.9)	389	(10.9)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추진의 실태분석 등을 위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성과평가도 실시한 바가 없다. 해당 내용은 2022년 사업 운영지침 뿐 아니라 2023년 운영지침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평가]

1.1 사업의 평가

- 고용노동부는 사업추진 실태분석,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위해 사업평가를 할 수 있음
- 사업평가는 정량평가(집행 실적 등) 및 정성평가(참여자 만족도 등)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함

자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2022

그 결과 2022년 동 사업에서의 목표 실적 미달성에 대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목표가 미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수행상의 부적절한 측면은 없었는지, 정량 기준 외에 정성적인 기준에서의 개선사항은 없었는지 평가된 내역이 없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별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없으나, 매년 사업선정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므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심사 시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집행실적 등 사업성과, 지도점검 결과 적발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정’ 평가와 ‘성과’ 평가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으로, 계속 사업의 선정 평가에서 전년도 실적과 사업수행 내용이 고려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거친 후 해당 내용이 선정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가 사업의 장기적인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선정 평가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이라는 목표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성과 평가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참여자 만족도, 전문가 의견에 따른 평가 등급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구분하여 봄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²²⁴⁾의 경우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자치단체 경상보조 비목 330-01)으로 운영되는데, 동 사업에서는 매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사업기간 중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 ‘미흡’ 또는 ‘최우수’ 평가 시 불이익(1년간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인센티브(가점 또는 예산지원 확대)를 부여하는 등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사업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성과평가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추후 사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사업 전반의 환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24) 청년센터 운영(일반회계 1032-303) 사업의 내역사업

가. 현 황

퇴직연금사업운영²²⁶⁾은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계약형 퇴직연금 사업), 중소기업세사업장 대상으로 공적 퇴직연금 운영 서비스를 제공(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계획액은 91억 8,800만원이고 이 중 30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3년 계획액은 156억 2,4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퇴직연금 사업운영	9,188	9,188	-	-	9,188	6,100	-	3,088	15,624
계약형퇴직 연금 사업운영	2,768	2,768	-	-	2,768	2,767	-	1	2,312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	6,420	6,420	-	-	6,420	3,333	-	3,087	13,31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의 경우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뜻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226)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사업주가 매년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했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전문기관이 적립된 부담금을 맡아 운용을 전문적으로 대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퇴직연금사업운영 내역사업 간 비교]

구분	계약형 퇴직연금(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개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업기간	2010.12.~ (계속)	2022.4.~ (계속)
근로복지공단 역할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운용관리업무 수행 ※ 규약작성 · 신고, 가입자교육,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 · 보관 · 통지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 계약체결, 위원회 운영, 자산운용, 운영현황관리, 지원금 · 급여 지급, 전산 구축 · 운영 등
적용 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30인 이하 사업장
규약 작성 · 신고	필요	불필요 ※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주체	사용자 ↔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계약) 사용자 ↔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계약)	사용자 ↔ 근로복지공단
수수료 수준	0.24~0.38% ※ 운용관리수수료: 0.1% ※ 자산관리수수료: 0.14%~0.28%	0.2% ※ '23년 내 가입시 5년간 면제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금 운용주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 전담자산운용기관 위탁
퇴직급여 수준	부담금 + 운용수익	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급여 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재정 지원	없음	사용자부담금의 10%
수익률	1.18%('22.12월 기준)	2.45%('22.12월말 기준)
수혜 대상	30인 이하 기업 및 소속 근로자	30인 이하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의 경우 2022년 실적이 저조하고, 법률안 의결 이후 시행까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순연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4장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2021.4.13. 신설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절차]

가입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1단계: 제도도입 동의	2단계: 가입신청	2단계: 가입심사 및 통지
사용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 동의 득	사업주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단은 가입대상 여부 확인 후 사업주에게 가입여부를 통지

자료: 고용노동부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도 도입에 동의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받아 가입하게 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는 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 내용 및 가입 절차]

구분	내용
사용자 재정지원	월 242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1인당 최대 24만2천원, 사업장 1개소 당 최대 30명, 3년간 지원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 검토 → 지원금액 산출 → 지원금 지급(분기별)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내역사업의 2022년 계획액은 64억 2,000만원이었으나, 실행액은 33억 3,300만원으로 30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와 같은 불용의 발생은 2022년 처음 시행된 동 사업에서 사업장 85,236개소(28만 2,208명) 가입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2,549개소(9,272명)만 가입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2022년 사업 계획 대비 달성 실적]

구분	가입사업장 수	가입자 수
'22년 계획(목표)	85,236개소	282,208명
'22년 실적	2,549개소	9,272명
달성률	3.0%	3.3%

자료: 고용노동부

구체적으로 사업 지연 및 실적 저조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 것은 2021년 4월 13일이나, 시행일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14일이었으므로 집행 부처의 입장에서는 최소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주거래은행 및 자산운용기관 등 선정 등 제도운영기반 구축 절차는 제도 시행('22.4.14.) 후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이를 알면서도 2022년 예산안을 8개월분을 편성하였던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제도 기반 구축을 고려하였다면 4~6개월분을 편성하였어야 과다계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2.4.14.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2.8월까지 기금운동을 위한 각종 규정 마련, 주거래은행 및 자산운용기관 등 기금운용기관 선정 등 제도운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약 4개월을 소요하였고, 그 결과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가입사업장 수는 목표 대비 3.0%에 불과하여 4개월의 짧은 운영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12월 경 집중 홍보 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을 이유로 계획액의 자체변경을 2차례 실시하였

다(12일, 19일).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22년 9월 이후에 홍보사업이 집중적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 운영(가입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운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할 필요가 있었고, 제도가 본격 운영된 2022년 9월부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에 역량을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실적을 비교해 보면 동 제도의 각종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호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 비하여 더 낮은 수수료(0.2%) 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22년 월별 가입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수와 계약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퇴직연금사업운영 월별 실적]

(단위: 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형퇴직연금	856	606	670	1381	576	532	501	870	370	424	539	79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	-	-	-	-	-	366	551	726	906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의 경우 22년도 신규사업으로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불용이 발생하였고, 법률안 의결 이후 시행까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업 실시 후 일정이 지연되었고, 집중 홍보가 늦게 실시되어 사업 참여도가 낮은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순연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년일자리창출지원²²⁸⁾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등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현액은 5,427억 6,900만원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이 중 2,33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3,094억 4,8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3% 수준이다.

[2022회계연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542,820	542,769	-	-	542,769	233,321	-	309,448	889,07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주요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2~2024년 한시 사업으로 신설되었다. 동 사업에서 고용노동부는 운영기관의 모집,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기관은 참여 기업의 발굴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하며, 참여 기업은 청년을 직접 고용하고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228) 코드: 일반회계 1043-301

6-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체계적인 계획 인원 추계 필요

가. 현황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 내역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이며,²²⁹⁾ 다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관련 업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과거 6개월의 고용에 대하여 6개월분의 장려금을 수령하고(1회차 수령), 그 이후에는 2개월마다 장려금을 수령하여(2~4회차 수령) 최대 1년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 80만원을 기준으로 6개월 고용 유지 시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고용 유지 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29)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건설업,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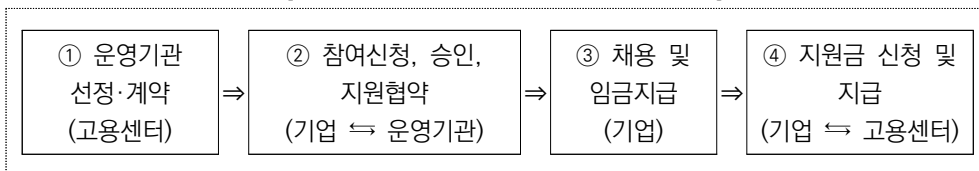
사업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기간 (재원)	2022~2024 (일반회계)
개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기간	1년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수준	월 최대 80만원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 초과 불가)
지원목표	취업애로청년 140,000명 채용 지원*
목표달성	총 60,400명 지원 달성 (2022년 집행 기준)
운영체계	(운영기관) 참여기업 발굴, 채용계획 접수·승인, 요건 심사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주. 목표달성 실적은 2022년 1월~12월까지 동 사업의 예산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중복을 제외한 승인원은 40,849명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동 사업은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으로부터 채용계획을 접수·승인한 후 요건심사 등을 수행하며, 이후 고용센터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수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수행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 의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년 목표 인원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 목표 인원의 추계가 부정확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목표치를 정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실시되는 한시사업이다. 동 사업에서는 2022년 취업애로청년²³⁰⁾ 14만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5,427억 6,900만원의 예산(추경 기준)을 편성하였다. 실집행률은 43%에 불과하고, 3,094억 4,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2022년 동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1월 채용 후 첫 장려금 집행까지 6개월이 소요되므로 7월부터 실적이 발생하였으며, 12월까지 총 60,400명을 대상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어 목표 인원 14만명 대비 43.1%에 불과하였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60,400	-	-	-	-	-	-	150	2,136	6,452	14,189	19,677	17,796
금액	233,321	45	15,436	460	88	16	61	619	13,656	37,045	52,729	63,525	49,640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후 익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각 기업에서 6개월 고

230)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의미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취업애로청년 유형]

- ①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②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④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⑥「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 ⑦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⑧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자료: 고용노동부

용유지, 임금지급, 지원금 신청까지 각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청시기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의 목표를 설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이전 청년 채용 관련 장려금 사업을 다수 실시하였는데, 동 사업들의 연도별 지원 실적이 15~20만명에 달하고, 추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도입된 점, 그리고 기존 장려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14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청년 채용 관련 장려금 사업과의 비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추가채용 장려금	청년채용특별 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기간	'22~'24	'17~'21년 (한시)	'21년 (한시)	'20~'21년 (한시)
지원 요건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 하 학력 등)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청년(15~34세) 정규직 신규 채용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 신규 채용
지원	월 80만원, 최장 1년	월 최대 75만원, 최장 3년	월 최대 75만원, 최장 1년	월 최대 190만원, 최장 6개월
재원 (회계)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청년 연령 기준은 15~34세로 동일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그러나 기존 청년 채용 장려금 사업과 동 사업에서의 지원 대상 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추계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2021년까지 실시된 '청년추가채용장려금',²³¹⁾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실적의 합은 약 21만 5천명이지만, 먼저 '청년추가채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2021년에도 예산이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2020년 11월까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2021년의 지원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남은 2개 사업(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의 실적 합계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3만 2천명인데, 이미 동 사업의 목표치(14만명)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의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것

231) '20.11월까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을 고려하면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목표인원으로 14만명을 책정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청년 채용 관련 장려금 사업의 목표 인원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에 추가된 요건인 취업애로청년의 유형별로 추계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정밀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년 채용 관련 장려금 사업 연도별 실적]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청년 추가 채용 장려금	110,000	141,566	128.7	90,000	105,584	117.3	90,000	84,833	94.3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50,000	31,389	62.8
청년 디지털 일자리				60,000	49,808	83.0	120,000	101,699	84.7

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의 경우 목표 인원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산출 근거(5만명)를 기준으로 하였고, 달성인원은 21년 결산 기준 집행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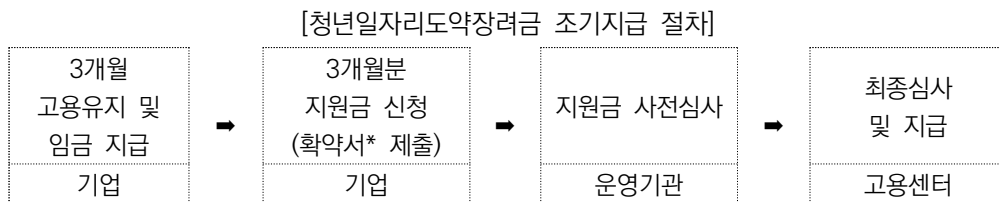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2. 3개월 고용 유지에 대한 조기지급 제도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22년 9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이른바 '조기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6개월의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6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3개월을 먼저 고용유지하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2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사업지침을 같은 해 11월 2일 개정하여 조기지급제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노동부는 8,753개 기업 11,444명에 대하여 272억 6,90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조기지급하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22.11)]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 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단, 3개월 고용유지가 확인된 경우 3개월씩 2회차로 분할지급도 가능, 9.7~12.31. 신청분에 한함**)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채용일은 '22.1.1.~'22.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새로이 도입한 조기지급제도의 경우,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에는 변동 없이 장려금의 지급 시점을 앞당기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2년 조기지급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9.7. ~ 2022.12.31. 신청분에 한하여 기업의 3개월 고용유지가 확인된 경우, 3개월씩 2회차로 장려금을 분할지급하도록 하였다. 물론 조기지급을 받은 기업이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받은 3개월분의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제도의 경우, 장려금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수행주체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22년 조기지급 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1,444명에 대하여 272억 6,90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3개월의 고용 유지 조건을 달성한 후 2개월을 초과하여 수령한 인원이 4,940명으로 전체의 43.2%, 지급 금액 기준으로는 116억 9,700만원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지급의 취지상 신속한 장려금 지급이 우선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3개월의 고용 유지 달성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기업은 2,201개로 전체의 25.1%, 지급 인원 기준으로는 2,761명으로 전체의 24.1%에 불과하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기업 수	8,753	2,201	2,944	3,608
지급 인원	11,444	2,761	3,743	4,940
지급 금액	27,269	6,608	8,964	11,697

주. 표에서의 지급 실적은 조건 달성 후 최초 신청(1회차)을 기준으로 추출한 것이므로, 최초 신청 이후 수령하는 2회차 이상의 경우 제외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3개월의 고용 유지 후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기존의 장려금 신청 가능 시점(고용 유지 6개월 후)과 거의 시기상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측면이 있다. 조기 지급이 아닌 통상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6개월 이후 곧바로 신청 자격이 발생하며,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기지급을 제외한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고용 유지 6개월의 조건 달성 후 대부분의 기업이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지급을 제외한 2022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 인원 기준으로는 84.%, 지급 금액 기준으로는 84.5%가 고용 유지 조건 달성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기지급을 제외한 장려금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기업 수	18,108	14,904	2,663	541
지급 인원	29,405	24,820	3,831	754
지급 금액	139,797	118,143	18,147	3,506

주. 표에서의 지급 실적은 조건 달성 후 최초 신청(1회차)을 기준으로 추출한 것이므로, 최초 신청 이후 수령하는 2회차 이상의 경우 제외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참여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기지급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6개월의 고용유지를 달성하여야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지원요건에서는 크게 유리해진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게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3개월분의 장려금이 선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기업이 기존보다 청년을 더 많이 채용할 유인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3개월분의 선지급을 받은 후 6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 미충족 기업에 해당 사실과 함께 조기지급액 반납기한을 정해 통보하고, 지원금 회수하여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어²³²⁾ 행정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232) 지방관서는 6개월 고용유지 등 요건 미충족 기업에 해당 사실과 함께 조기지급액 반납기한을 정해 통보하고, 조기지급액 반납을 결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2022.11.)』)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청년 채용에 대하여도 장려금 지급 횟수 및 요건 확인 등의 절차가 추가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를 들어 1년간 1명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통상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총 4회차에 걸쳐 960만원을 지급받게 되나(6개월/8개월/10개월/12개월 시점), 조기지급으로 장려금을 최초 수령하기 시작한 기업은 총 5회차(3개월/6개월/8개월/10개월/12개월 시점)에 걸쳐 동일한 96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²³³⁾

한편, 동 사업의 운영지침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3개월의 고용 유지 조건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을 뿐, 유지 후 장려금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에 비하여 조기지급이 아닌 통상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사업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다.²³⁴⁾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6개월의 고용 유지가 거의 완료되었을 때) 조기 지급을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조기 지급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상 지급하는 것보다 다소 이르게 우선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체적인 청년 채용의 규모 확대에 실익이 있는 것인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기지급을 통하여 기업들의 청년 고용이 증대되었다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제도의 유지에 대한 타당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33)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최대 5회차 지급을 위하여 2022년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다.

23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2.11.



기상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4억 1,900만원이며, 57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3%인 56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9,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처리는 없다.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1,419	21,419	21,419	5,788	5,693	95	-	98.3

자료: 기상청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52억 4,200만원이며, 이 중 92.9%인 4,41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54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2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52,737	451,142	474,297	441,571	15,447	17,280	93.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45	945	945	-	-	945	-
합계	453,682	452,087	475,242	441,571	15,447	18,225	92.9

자료: 기상청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기상청의 자산은 9,877억 3,500만원, 부채는 448억 1,600만원으로 순자산은 9,429억 1,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02억 2,000만원, 일반유형자산 9,233억 3,300만원, 무형자산 488억 6,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84억 7,900만원(5.2%) 증가하였다. 이는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등 건설중인 자산 증가 등 일반유형자산 409억 8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91억 1,900만원, 장기차입부채 256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1억 4,300만원(19.9%) 감소하였다. 이는 리스부채의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08억 3,8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987,735	939,256	48,479	5.2
Ⅰ. 유동자산	10,220	12,492	△2,272	△18.2
Ⅱ. 투자자산	614	420	194	46.2
Ⅲ. 일반유형자산	923,333	882,425	40,908	4.6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8,869	40,442	8,427	20.8
Ⅵ. 기타비유동자산	4,700	3,477	1,223	35.2
부 채	44,816	55,959	△11,143	△19.9
Ⅰ. 유동부채	19,119	19,425	△306	△1.6
Ⅱ. 장기차입부채	25,697	36,535	△10,838	△29.7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942,919	883,297	59,622	6.7
Ⅰ. 기초순자산	883,297	813,707	69,590	8.6
Ⅱ. 재정운영결과	405,203	483,740	△78,537	△16.2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453,356	452,180	1,176	0.3
Ⅳ. 조정항목	11,469	101,150	△89,681	△88.7
Ⅴ. 기말순자산	942,919	883,297	59,622	6.7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052억 3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2,729억 9,700만원, 관리운영비 1,410억 8,000만원, 비배분비용 4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배분수익 93억 6,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85억 3,700만원(16.2%) 감소한 4,052억 300만원이며, 이는 경비(599억 7,700만원) 등 관리운영비 감소 및 전기정수결의착오정정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152억 2,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기상관측프로그램(1,010억 300만원)과 기상연구프로그램(704억 4,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08억 6,600만원과 경비 502억 1,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 B
I. 프로그램순원가	272,997	284,824	△11,827	△4.2
II. 관리운영비	141,080	198,871	△57,791	△29.1
III. 비배분비용	489	15,712	△15,223	△96.9
IV. 비배분수익	9,362	15,667	△6,305	△40.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05,203	483,740	△78,537	△16.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05,203	483,740	△78,537	△16.2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832억 9,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429억 1,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96억 2,200만원(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 반유형자산이익이 재평가로 인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702억

4,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80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114억 6,9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기상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883,297	813,707	69,590	8.6
Ⅱ. 재정운영결과	405,203	483,740	△78,537	△16.2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53,356	452,180	1,176	0.3
Ⅳ. 조정항목	11,469	101,150	△89,681	△88.7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942,919	883,297	59,622	6.7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R&D)** 사업이 있다.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R&D)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건비 미집행 및 이월 예산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161억 → 157억)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기상산업 활성화**, ② **기상청 청사 시설 관리**, ③ **기상청 청사이전** 사업 등이 있다.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비 7억 8,500만원 및 기상클러스터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이 증액(116억 7,100만원→126억 5,600만원)되었고,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시시설 구축비 4억 4,000만원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 6,400만원이 증액(298억 6,500만원→303억 6,900만원)되었고, 기상청 청사이전 사업은 기상청 청사 대전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비 등이 순증(14억 1,600만원)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상반기 국외훈련 취소 등에 의한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절감 등 세출에서 15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다.

기상청은 ① **기상기후·지진정보의 개선 및 전달 강화**로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후정보 생산과 활용 확대**에 역점을 두며, ③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 **기상기술 연구개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시대, 가치를 더하는 기상기후서비스**」를 **2022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기상청의 성과지표 중 단기예보의 강수유무정확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기상서비스만족도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중기예보의 예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상예보의 변동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 등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재 목적의 지진신속정보 신속도, 정보 알림 목적의 지진상세정보 신속도를 단일지표로 관리하는 방식이 지진신속정보의 목표시간 내 통보 여부를 단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재 목적의 지진신속정보의 신속도를 단독 성과지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를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를 관련 사업인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한 방식과 같이 기상측기 검정대행 사업비를 관련 사업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함으로써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업무의 통일성, 체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²³⁷⁾은 예보 품질 향상 및 수요자 중심 기상정보 생산을 위해 예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재유관기관과의 위험기상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콘텐츠 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상청은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61억 7,800만원 중 60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091	6,078	-	222 △122	6,178	6,070	98.3	-	108	9,87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 및 특보를 실시하고 있다.²³⁸⁾

강만원 예산분석관(kmw@assembly.go.kr, 6788-4636)

237) 코드: 일반회계 1140-501

238)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

이 중 기상예보는 예보대상기간에 따라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로 구분되고 기상청은 단기예보 중 강수유무정확도를 기상예보 프로그램(1100)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상예보의 종류]

구분	예보 기간	예보요소	제공단위	갱신주기
초단기 예보	6시간 이내	강수량,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낙뢰	1시간 (강수량은 10분)	10분
단기 예보	4일 이내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 수형태, 강수량, 눈의양, 유의파고	1시간	일 8회
중기 예보	10일 이내	하늘상태, 강수형태, 최고기온, 최저 기온, 강수확률, 유의파고	12시간 (9일 이상 1일)	일 2회
장기 예보	1개월 전망	평균기온, 강수량	주	매주 목요일
	3개월 전망	평균기온, 강수량	월	매월 23일경
	기후 전망	(계절) 평균기온, 강수량, 엘니뇨·라 니냐	3개월	2, 5, 8, 11월의 23일경
		(연) 평균기온 및 강수량	연	12월 23일경

자료: 기상청

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나. 분석의견

단기예보정확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중기예보의 예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상예보의 변동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 등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²³⁹⁾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기상 관련 업무 종사자 모두 기상정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로 ‘기상예보’라는 응답이 각각 62.1%, 5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상특보, 실시간 관측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기상예보 중 단기예보의 강수유무정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강수유무정확도는 2019년 92.7%에서 2021년 90.9%로 낮아졌다가 2022년에는 92.4%로 상승하였다.

[2019~20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단기예보 강수유무정확도	목표	92.2	92.4	92.4	92.4	91.7
	실적	92.7	91.4	90.9	92.4	-
	달성도	100.5	98.9	98.4	100.0	-

자료: 기상청

전체 예보를 실제 관측과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은 네 가지 경우(H, F, M, C)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강수맞힘(H)과 무강수맞힘(C)이 강수유무예보가 맞은 경우이고 전체 예보 중 강수유무예보가 맞은 경우의 비율²⁴⁰⁾이 강수유무정확도이다.

239) 현대리서치컨설팅, 2022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22. 12.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세부사업(6134-301)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64백만원 집행

240) 강수유무정확도: $\{(H+C)/(H+F+M+C)\} \times 100\%$

[강수유무정확도 산출 변수]

관측(실황)	예보	
	강수있음	강수없음
강수있음	강수맞힘(H)	강수놓침(M)
강수없음	강수뺏나감(F)	무강수맞힘(C)

- 주: 1. 강수맞힘(H): 비를 예보하고 실제 비가 내린 경우
 2. 강수뺏나감(F): 비를 예보하였으나 실제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
 3. 강수놓침(M): 비를 예보하지 않았으나 실제 비가 내린 경우
 4. 무강수맞힘(C): 비를 예보하지 않고 실제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
 자료: 기상청

그런데 2022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단기예보 만족도는 71.9점에서 2022년 66.8점으로 5.1점 하락하였고 중기예보 만족도는 2.6점, 기상특보 만족도는 1.0점, 기상특보 시의성은 2.9점 하락하여 모든 기상서비스 요소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하락하였다.

중기예보 만족도는 기상서비스 요소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기상서비스 요소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기상 관련 업무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모든 기상서비스 요소에 대해 기상 관련 업무종사자의 만족도가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상서비스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상 관련 업무종사자의 기상서비스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점은 기상청의 기상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시간에 따른 특성상 예측정확도는 초기시간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 단기예보에 비해 중기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상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매해 다르게 나타나는 기상 상황,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상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도 있어 만족도가 예보정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상서비스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 기상청의 기상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등의 결론에 이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상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변동성이 강한 기상예보의 과학적 한계에 대한 소통 노력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중기예보의 예보 품질 향상과 함께 중기예보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기상예보의 변동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상서비스 요소별 국민만족도]

(단위: 점)

구분		단기예보 만족도	중기예보 만족도	기상특보 만족도	기상특보 시의성
2022	종합(A)	66.8	60.5	69.8	74.9
	일반국민	67.1	61.1	70.5	75.5
	기상 관련 업무종사자	66.5	59.8	69.1	74.4
2021	종합(B)	71.9	63.1	70.8	77.8
	일반국민	70.4	62.1	69.8	75.5
	기상 관련 업무종사자	73.3	64.1	71.8	80.1
2021년 대비 2022년 만족도 점수 차(A-B)		△5.1	△2.6	△1.0	△2.9

자료: 기상청

가. 현 황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²⁴²⁾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국가 지진재해 경감과 지진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경보발령과 정보전달체계 다양화를 통해 지진재난으로부터 국민불안 해소 및 안전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상청은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9억 3,900만원 중 4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939	4,939	-	-	4,939	4,890	99.0	-	49	4,52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²⁴³⁾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²⁴⁴⁾에 따라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로 구분하여 지진

강만원 예산분석관(kmw@assembly.go.kr, 6788-4636)

242) 코드: 일반회계 1238--501

24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44) 「지진화산 업무규정」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②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조기경보 영역²⁴⁵⁾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발표하는데 지진조기경보 시에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분석된 지진정보를 즉시 SMS, MMS, e-mail, 시스템 직접 연계 등의 방법으로 방송국, 유관기관 등 대상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있다.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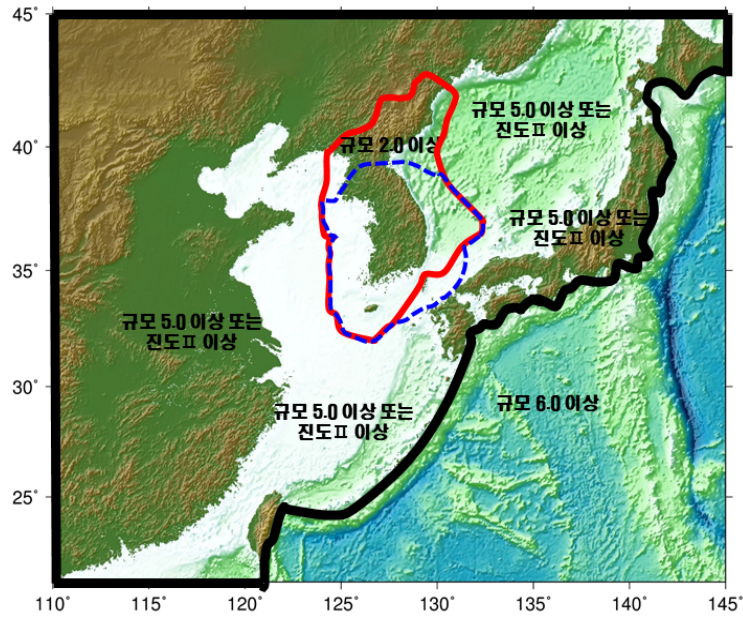
구 분	신속정보(자동분석)		상세정보(수동분석)			
	지진조기 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	
발표 기준	규모 5.0 이상	(우리나라의 지 역) 규모 3.5 이 상 5.0 미만	국내 지진	규모 2.0 이상	국외지진 (지진감시 구역 내)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 의 지역에서 진도 II 이상
		국외지진 (지진감시 구역 외)			규모 6.0 이상	
내 용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추정위 치, 추정규모, 예 상진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	
생산 방법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지진분석 시스템		-	

주: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된 정보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로 발표하고, 추가로 상세정보(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
자료: 기상청

1. 지진조기경보 : 별표 1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속보 : 별표 1의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 나. 해역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정보 : 규모 2.0 이상으로 분석된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지진통보 이후 분석정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국외 지진정보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진감시구역 내 :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 지역에 진도 II 이상의 영향을 주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 나. 지진감시구역 외 :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③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과 발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245) 국내지진(남한, 북한) 및 국외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

[지진감시구역]



- 주: 1. 붉은 검은색선은 지진감시구역을, 적색선은 국내를, 파란색 점선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을 각각 나타낸다.
 2. 문숫자는 국내·국외 지진에 대한 지진정보와 국외 지진정보의 발표 기준이다.
 자료: 기상청

또한, 행안부 훈령「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과 기상청 훈령「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즉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으로도 자동 송출하고 있다.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지역, 재난방송 구성]

규모		통보문	CBS	
지역	해역, 북한, 국외		종류	대상지역
6.0 이상		조기경보	위급재난	전국
5.0 이상			긴급재난	
4.0~5.0 미만	4.5~5.0 미만	지진속보		반경 80km 해당 광역 시·도
3.5~4.0 미만	4.0~4.5 미만			

규모		통보문	CBS	
지역	해역, 북한, 국외		종류	대상지역
3.0~3.5 미만	3.5~4.0 미만	지진정보	안전안내	반경 50km 해당 광역 시·도

주: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된 정보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로 발표하고, 추가로 상세정보(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방재 목적의 지진신속정보 신속도, 정보 알림 목적의 지진상세정보 신속도를 단일 지표로 관리하는 방식이 지진신속정보의 목표시간 내 통보 여부를 단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재 목적인 지진신속정보 신속도를 단독 성과지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위와 같이 지진통보를 신속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있고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지진정보신속도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지진정보신속도를 보면, 2019년 64.5%, 2020년 80.2%, 2021년 113.0%, 2022년 65.4%였고 2021년에는 80.2%의 목표치에 113.0%의 실적으로 140.9%의 성과달성도를 2022년에는 81.0%의 목표치에 65.4%의 실적으로 80.8%의 성과달성도를 기록하였다.

[최근 4년간 지진정보신속도]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지진정보 신속도 (%)	목표	-	-	80.2	81.0
	실적	64.5	80.2	113.0	65.4
	달성도	-	-	140.9	80.8

자료: 기상청

지진정보신속도를 측정하는 산식을 보면 각 통보대상 지진정보별 연간평균통보시간 대비 목표통보시간(목표통보시간/연간평균통보시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후 백분

율로 표현하고 있다.

[지진정보신속도 측정산식]

$\left\{ \left(\frac{7}{N_a} \sum_{i=1}^{N_a} T_{a_i} \right) \cdot w_a + \left(\frac{25}{N_b} \sum_{j=1}^{N_b} T_{b_j} \right) \cdot w_b + \left(\frac{180}{N_c} \sum_{k=1}^{N_c} T_{c_k} \right) \cdot w_c \right\} \times 100$	N_a : 지진속보(지역) 연간발생횟수
	N_b : 지진속보(해역) 연간발생횟수
	N_c : 지진정보 연간발생횟수
	T_a : 지진속보(지역) 통보시간(초)
	T_b : 지진속보(해역) 통보시간(초)
	T_c : 지진정보 통보시간(초)
	w_a : 지진속보(지역) 가중치
	w_b : 지진속보(해역) 가중치
	w_c : 지진정보 가중치
	※ 목표시간: 현재 시스템에서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간
	※ 대상: 우리나라(북한 제외)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22년에 자동분석을 통해 발표되는 신속정보 중 지진조기경보는 7초, 지진속보는 지진 발생위치에 따라 지역은 7초, 해역은 25초를 목표통보시간으로 하고 수동분석을 통한 상세정보는 지진 발생위치와 관계없이 180초 이내 통보를 목표로 하였다. 2023년의 경우에는 신속정보의 목표통보시간을 5초로 단일화하였다.

[지진정보 발표 목표시간 및 성과지표 목표시간 비교]

구분		지진 규모	발표 목표시간			'22년 성과지표 목표시간	'23년 성과지표 목표시간
			'21.7. 이전	'22.4. 이전	'22.4. 이후		
신속 정보	지진 조기경보	(지역, 해역) 규모 5.0 이상	7~25 초	5~10 초	5~10 초	7초	5초
	지진속보	(지역) 규모 4.0 이상	20~40 초	20~40 초		7초	
		(해역) 규모 4.0 이상				25초	

구분		지진 규모	발표 목표시간			'22년 성과지표 목표시간	'23년 성과지표 목표시간
			'21.7. 이전	'22.4. 이전	'22.4. 이후		
		(지역) 규모 3.5~4.0 미만	20~40초			7초	제외
상세 정보	지진정보	(지역, 해역) 규모 2.0 이상	300초			180초	180초

자료: 기상청

빠른 시간 내에 알리는 신속정보의 경우 방재 목적이 강하고 수동분석을 통한 상세 정보는 정보 알림의 목적이 강하다. 즉, 신속정보는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신속정보와 상세정보의 신속도를 하나의 지표로 관리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신속정보의 통보가 목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신속정보의 신속도를 분리하여 신속정보의 목표시간 내 통보 여부를 단독 성과지표로 관리함으로써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상산업활성화 사업²⁴⁷⁾은 기상산업 활성화로 민간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상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편익증진 및 신뢰도 제고,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를 기초로 하고 창업 활성화 및 기업성장지원 등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 기상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시장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상청은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26억 3,400만원 중 126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산업 활성화	12,656	12,634	-	35 △35	12,634	12,633	100.0	-	1	15,350
기상산업육성	2,126	2,104	-	35 △27	2,112	2,111	100.0	-	1	2,733
기상기업지원	2,366	2,366	-	△8	2,358	2,358	100.0	-	0	2,056
기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200	200	-	-	200	200	100.0	-	0	-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운영	7,964	7,964	-	-	7,964	7,964	100.0	-	0	10,56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강만원 예산분석관(kmw@assembly.go.kr, 6788-4636)

247) 코드: 일반회계 1431-301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은 기상산업육성, 기상기업지원, 기상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등 네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별, 비목별 예산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출연금이 79억 6,400만원으로 63.0%,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사업출연금이 45억 8,400만원으로 36.3%, 그 외 기상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상용임금 등의 예산이 8,6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다.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별, 비목별 예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기상산업육성	2,126	2,104
- 상용임금(110-03)	34	34
- 일반수용비(210-01)	12	7
- 임차료(210-07)	4	4
- 국내여비(220-01)	4	4
- 국외업무여비(220-02)	25	8
- 사업추진비(240-01)	3	3
- 고용부담금(320-09)	7	7
- 사업출연금(350-02)	2,037	2,037
· 기상기업지원	2,366	2,366
-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 사업출연금(350-02)	2,347	2,347
· 기상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200	200
- 사업출연금 (350-02)	200	200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7,964	7,964
- 기관운영출연금(350-01)	7,964	7,964
합 계	12,656	12,63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 사업 예산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의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예와 같이 별도의 단독 세부사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예산 구성 내용만 보면 사실상 이 사업의 명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출연’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²⁴⁸⁾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기상청 소관의 공공기관으로서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상청은 이 사업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다.

기관운영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이고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또한 기상청은 이 사업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금 외에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여비 등 기상청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48)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정부는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연금]

예산과목(코드)	설명
기관운영출연금 (350-01)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사업출연금 (350-02)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자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2. 1.

그런데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같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의 예를 환경부에서 찾아보면,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을 별도의 단독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환경부의 예와 같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금(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을 단독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소관 출연기관 세부사업 분류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출연기관	세부사업(코드)	2022년 예산		
		합계	금액	예산과목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출연(1534-303)	177,964	84,681	기관운영출연금 (350-01)
			93,283	사업출연금 (350-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1534-302)	58,550	28,206	기관운영출연금 (350-01)
			30,344	사업출연금 (350-02)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출연(1831-306)	218,642	119,388	기관운영출연금 (350-01)
			99,254	사업출연금 (350-02)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출연 (1833-332)	76,909	36,100	기관운영출연금 (350-01)
			40,809	사업출연금 (350-02)

(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출연기관	세부사업(코드)	2022년 예산		
		합계	금액	예산과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 원관 출연 (1833-340)	23,611	12,302	기관운영출연금 (350-01)
			11,309	사업출연금 (350-0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 원관 출연 (1833-347)	21,582	9,085	기관운영출연금 (350-01)
			12,497	사업출연금 (350-02)

자료: 환경부 자료 재구성

가. 현 황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²⁴⁹⁾에 따라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상측기의 종류에 따라 3년~5년으로 정하고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²⁵⁰⁾에서는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측기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49)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기상측기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50)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측기의 종류	검정유효기간(년)
온도계	3
기압계	3
습도계	3
풍향계	3
풍속계	3
일조계	5
일사계	5
강수량계	3
증발계	5
적설계	5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각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주: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상측기를 6개월 이내에 교체하거나 폐쇄할 예정인 경우, 관련 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상청은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상기업지원 사업에 기상측기에 대한 점검 사업비 5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사업출연금으로 출연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상기업지원 사업 사업출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 기상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1,000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1,000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570
- 기상산업 해외진출 기반 조성	256
-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314
· 국가기상관측품질 고도화	777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 기상측기 검정대행	577
- 기상분야 표준 활성화	200
계	2,347

자료: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분석의견

검정 불합격 기상측기에 대한 교체·수리 등의 조치기간이 불명확하여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이력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조치기간 단축 및 명확화, 이력 관리 등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기상 예·특보의 필수 기초자료인 기상관측 자료의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나타난 최근 5년간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및 조치현황을 보면 연도별로는 2018년 33건, 2020년 64건, 2022년 22건의 관측장비가 검정에 불합격하였고, 관측장비별로는 온도계 61건, 습도계 58건 등 총 198건의 관측장비가 검정에 불합격하였다.

[지상기상관측장비(ASOS·AWS)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6.	합계
온도계	10	8	9	22	12	61
습도계	13	14	23	4	4	58
풍향계	3	6	16	7	5	37
풍속계	1	4	9	2	1	17
강수량계	4	1	5	-	-	10
기압계	1	2	2	-	-	5
일사계	-	-	-	4	-	4
적설계	-	-	-	4	-	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6.	합계
일조계	-	1	-	-	-	1
풍향·풍속계	1	-	-	-	-	1
합계	33	36	64	43	22	198

주: 1. ASOS(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종관기상관측장비

2. AWS(Automatic Weather System): 방재기상관측장비

자료: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에 대한 조치 기간 현황을 보면 총 198건 중 10%인 19건만이 당일에 처리되었고 3일 이내 53건, 7일 이내 44건, 14일 이내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별 조치 기간 현황]

구분	당일	3일 이내	7일 이내	14일 이내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초과	합계
온도계	10	23	10	8	5	5	-	61
습도계	4	17	17	9	8	3	-	58
풍향계	3	11	8	8	3	4	-	37
풍속계	1	2	3	7	3	1	-	17
강수량계	-	-	4	1	-	3	2	10
기압계	-	-	1	1	2	-	1	5
일사계	-	-	-	-	-	-	4	4
적설계	-	-	1	2	-	1	-	4
일조계	1	-	-	-	-	-	-	1
풍향·풍속계	-	-	-	-	-	-	1	1
합계	19	53	44	36	21	17	8	198

자료: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은 2022. 12.에 「지상기상관측지침」을 개정하여 검정에 합

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관측관서의 장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 불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기상측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합격 기상측기의 재검정을 위한 조치를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래 검정 불합격을 구두로만 통보하고 그 이력 또한 관리하지 않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SMS 및 공문으로 이중으로 불합격을 통보하고 ‘기상측기 검정 불합격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력 관리 또한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새로 정립한 불합격 기상측기에 대한 관리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기상 예·특보의 기초 자료인 기상관측 자료 생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 편성방식 통일 필요

가. 현 황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²⁵²⁾은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 및 안정적 운영으로 지진관측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고품질 지진관측자료 생산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감시로 지진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상청은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29억 9,400만원 중 126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13,034	12,994	-	668 △668	12,994	12,652	97.4	-	342	7,252
검정체계 운용	600	600	-	-	600	600	100.0	-	-	68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²⁵³⁾에 따라 지진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검정을 받아야 하는 지진관측 장비는 가속도지진 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등 3종이고 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강만원 예산분석관(kmw@assembly.go.kr, 6788-4636)

252) 코드: 일반회계 1238-301

25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②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²⁵⁴⁾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기상청 고시)에 따라 지진관측 장비의 검정 업무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2년에 기상청으로부터 교부받은 6억원의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중 5억 7,700만원을 지진관측 장비 검정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2021년과 2022년의 국가지진관측망 지진 관측 장비 검정 현황을 보면²⁵⁵⁾, 2021년에는 현장에서 관측 중인 2대의 지진 관측 장비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022년에는 현장 관측 장비 1대, 신규 설치 장비 4대 등 총 5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가지진관측망 지진관측장비 검정 현황]

(단위: 대)

구분	2021년			2022년			계		
	검정 건수	불합격 건수	조치후 합격 건수	검정 건수	불합격 건수	조치후 합격 건수	검정 건수	불합격 건수	조치후 합격 건수
기상청	170	1	0	82	4	4	252	5	4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27	1	0	54	1	0	81	2	0

25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55) 지진관측기관 8개 중 3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자료는 품질분석결과 활용이 부적합하여 국가지진관측망으로 미활용

(단위: 대)

구분	2021년			2022년			계		
	검정 건수	불합격 건수	조치후 합격 건수	검정 건수	불합격 건수	조치후 합격 건수	검정 건수	불합격 건수	조치후 합격 건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3	0	0	9	0	0	12	0	0
한국전력공사	5	0	0	3	0	0	8	0	0
한국수력 원자력	0	0	0	12	0	0	12	0	0
합계	205	2	0	148	5	4	353	7	4

자료: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불합격 장비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현장 관측 장비 2대는 모두 예비품으로 교체되었고 2022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현장 관측 장비 1대는 예비품으로 교체, 신규 설치를 위한 장비 4대는 재검정을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았다.

[기관별 불합격 장비 조치 현황]

기관	관측소	대상장비	검정일자	조치현황
기상청	임원	광대역속도지진센서	2021.8.11.	예비품으로 교체
	신규	가속도지진센서	2022.10.5.	재검정 합격 (2022.11.11.)
	신규		2022.10.6.	재검정 합격 (2022.11.11.)
	신규	광대역속도지진센서	2022.10.25.	재검정 합격 (2022.11.11.)
	신규		2022.10.26.	재검정 합격 (2022.11.11.)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안좌도	단주기속도지진센서	2021.9.30.	예비품으로 교체
	철원	광대역속도지진센서	2022.5.30.	예비품으로 교체

자료: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분석의견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를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함과 동시에 기상측기 검정대행 사업비를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의 편성 방식과 같이 기상측기를 확충하고 운영하는 사업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 편성함으로써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업무의 통일성, 체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대로 기상측기, 지진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각 사업이 5억 7,7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대행 사업비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출연금 중 기상기업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교부되고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는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교부되고 있다.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대행은 「기상관측표준화법」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근거법인 「기상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지진관측 장비의 검정대행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검정대행자로 지정하고 있다.

[기상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 업무 대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상측기 검정대행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대행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근거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
세부사업 (내역사업)	기상산업활성화 (기상기업지원)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예산과목	사업출연금(350-02)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실집행액	577	577

자료: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와 같은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업무의 집행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검토 사항이 있다.

첫째, 세출예산의 과목구조 상 법정민간대행사업비에 해당하는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업무에 대한 예산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통일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 업무를 기상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상 및 지진관측 장비 검정 업무 대행 관련 법률 규정]

구분	기상측기	지진관측 장비
근거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②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에 대한 검정대행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세출예산 과목구조상 법정민간대행사업비에 해당한다.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구분	내용
법정민간대행 사업비 (320-08)	-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 제반 비용 - 민간위탁의 경우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나,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귀속

자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2. 1.

둘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대행 사업비를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 편성의 예와 같이 사업간 연관성이 있는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측기 검정대행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상기업지원 사업은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상측기의 검정 사업과는 사업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지진관측 장비 검정대행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예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대행 사업비를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사업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²⁵⁶⁾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측기 및 지진관측 장비의 검정대행 사업비 편성 시 사업간 연관성을 고려한 편성 및 적정 예산과목인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관측장비 검정대행 업무의 통일성, 체계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상예·특보, 지진정보 등의 필수 기초정보인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56) 코드: 일반회계 1231-301

가. 현 황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²⁵⁸⁾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상청은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57억원 중 147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15,700	15,700	-	-	15,700	14,785	94.2	-	915	14,13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관 공공기관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연구개발출연금으로 147억 8,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121억 7,400만원을 실집행하고 25억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9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157억원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77.5%이다.

강만원 예산분석관(kmw@assembly.go.kr, 6788-4636)

258) 코드: 일반회계 3133-312

[2022회계연도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예산현액	집행액(C)			
15,700	15,700	14,785	14,785	12,174	2,502	109	77.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반복되고 있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력 채용 부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기능·비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총 3개의 내역사업 중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개발 사업’과 ‘가변격자체계 기반통합형수치예보모델개발 사업’의 인건비 집행률이 각각 65.5%와 70.7%에 머무르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실집행률은 77.5%이다.

[2022회계연도 기능별·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 개발	3,980	3,041	76.4
- 연구개발인건비	1,895	1,242	65.5
- 연구개발경상경비	510	506	99.2
- 연구개발활동비등	1,575	1,293	82.1
가변격자체계 기반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7,160	5,517	77.1
- 연구개발인건비	3,260	2,306	70.7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 연구개발경상경비	982	934	95.1
- 연구개발활동비등	2,918	2,277	78.0
거대 수치예측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수요맞춤 활용기술 개발	4,560	3,616	79.3
- 연구개발인건비	945	929	98.3
- 연구개발경상경비	484	476	98.3
- 연구개발활동비등	3,131	2,211	70.6
합 계	15,700	12,174	77.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최근 3년간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책임급의 충원율이 72.2%, 선임급의 충원율이 38.9%, 원급의 충원율이 25.6%였다가 2022년에는 각각 83.3%, 75.5%, 86.8%로 상승하였으나 선임급의 충원율은 책임급과 원급에 비해 낮은 충원율인 75.5%로 나타나고 있다.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직급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정원 (A)	현원 (B)	충원율 (B/A)	정원	현원	충원율 (B/A)	정원	현원	충원율 (B/A)
2020	18	13	72.2	54	21	38.9	39	10	25.6
2021	18	19	105.6	54	32	59.3	39	28	71.8
2022	24	20	83.3	49	37	75.5	38	33	86.8

자료: 기상청(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이러한 인력 채용 부진에 따라 최근 3년간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0년 78.2%, 2021년 80.6%, 2022년 77.5%에 머무르고 있다.

인력 채용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실집행률 저조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성과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기상청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현재 정원의 적정수준 및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인력 채용 부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0	3,447	2,696	78.2
2021	12,700	10,232	80.6
2022	15,700	12,174	77.5

자료: 기상청(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에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2983-2802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2983-2802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